

연구보고 2011-10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의 다양화와 조기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의 증가, 보육료 지원 강화 등에 따라 가정 밖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들은 점점 더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육아지원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영유아들의 중요한 성장 환경의 일부가 된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실현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안전보호와 학대 예방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영유아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명·보호권 보장을 내실화하고, 참여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계기로서 2011년은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에 근거하여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규명하였으며,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 및 실행 수준, 권리교육 경험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에 관한 포괄적 연구로서,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면담에 응해주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과 교사들, 그리고 보고서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여러 검토자들께도 감사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그 동안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노력은 취약 아동 대상 안전관리 및 학대 예방과 요보호 아동 대상 생존·발달권 보장 위주여서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는 간과된 경향이 있음.
-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등으로 아동은 보다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양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함.
-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과 기관 교직원의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과 요구도 등을 규명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영유아 권리 개념의 이해
  - 국내외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
  -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실태 평가를 위한 주요 차원과 세부 항목 도출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권리 영역별 실태 파악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교육 경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 시 애로사항 등 규명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실시함.
-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각각 약 1,000여명씩 총 4,1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요 질문내용은 아동권리 인식 수준,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행 시 애로사항, 권리 영역별 실태 등임.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가. 영유아 권리의 개념과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과 우리나라의 비준 및 이행 상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
  -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생존, 발달, 보호 그리고 참여권,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포괄적 육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유아기 역량 개발 등임.

### 나.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서의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규정을 살펴봄.
  -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등 보호권 위주이며, 이외에 아동권리교육 관련 규정 등이 있음.
- 외국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영국, 호주, 일본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규정과 제도들을 살펴봄.

#### 다. 선행연구

- 아동권리 실태 및 지표 개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아동권리교육 관련 연구 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봄.

### 3.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 중 일부를 이 연구의 권리 영역별 실태 평가에 활용함. 각 권리 영역별 개념 정의와 하위 차원,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 생존·보호권

- 건강과 영양관리
  - 청결과 위생 수준의 평가: 실내 및 서비스 공간과 놀잇감의 청결, 개별 침구 등의 사용과 관리, 식자재 등의 위생 관리 등
  - 건강관리 수준의 평가: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등
  - 영양관리 수준의 평가: 급간식 제공 및 관리 등
- 안전보호
  - 시설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창문보호대나 난간 설치 등
  - 안전보호 수준의 평가: 안전교육 실시 등
  - 아동학대 및 예방 수준의 평가: 아동학대 민감성, 학대 발견 시 조치 등

#### 나. 발달권

- 보육/교육활동 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보육/교육활동 내용
-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의 관심도, 이해와 적용 수준
- 특별활동과 종일반 운영 실태

## 다. 참여권

- 보육/교육 일과 중 참여권 보장 수준

## 4.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실태

### 가. 생존·보호권 실태

#### 1) 건강 및 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청결관리 수준은 급식관리와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관리 수준의 평가는 평균 4.68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놀잇감의 정기적인 소독, 화장실 및 세면장 바닥 건조, 청소관련 기록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 영양관리는 평균 4.62점(만점 5점), 건강관리는 평균 4.46점(만점 5점)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영양관리 부문 중 '균형 잡힌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인스턴트 위주의 간식 제공을 피한다'는 항목과 건강관리 부문 중 '바깥놀이 시 청결관리와 모래소독 연 2회 실시'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건강 및 영양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남.

#### 2) 안전보호 및 관리

- 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집 시설 안전의 경우 특히 창문보호대와 난간 설치, 옥외놀이터의 바닥 안전 관련 미 설치율이 각각 12.8%, 19.5%로 나타나, 이외의 항목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안전보호 및 관리

-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는 평균 4.61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안전교육 실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인계 시 인계과정의 문서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 4.62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남.
  - 교사 대상 안전교육과 실내외 시설 점검 시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수준은 평균 4.58점(만점 5점),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평균 4.39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와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체계에 대한 이해'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평균 4.39점, 만점 5점), 아동학대 발견 시 즉각적으로 신고한다는 응답은 4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안전보호 수준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 수준과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각각 평균 4.43점, 평균 4.15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수준임.

**나. 발달권 실태**

보육/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 4.4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해당 항목 중 실외활동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유치원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평균 4.37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해당 항목 중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주 3회 이상), 유아의 참여 유발 부문과 교사와 유아간의 질적 상호작용, 개별 유아의 발달 상황 기록 및 점검, 활용 등에 대한 실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등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의 관심도, 이해도와 적용
- 표준보육과정의 관심도에 비해 이해도와 적용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표준보육과정의 평가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도와 적용 수준은 평균 4.25점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별활동과 종일반 운영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과목 수는 3개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평가는 평균 4.55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나 사후관리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다. 참여권 실태**

- 어린이집(평균 4.41점, 만점 5점)에 비해 유치원(평균 4.51점, 만점 5점)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참여권 보장 수준은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5.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교육 경험

### 가.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별 인지 수준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권, 유치원의 경우 참여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권리로서 인식됨.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 비해 실행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인지 및 실행 수준은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 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나.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 육아지원기관 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교육 관심도와 필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특히 영유아 권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90%이며, 교사에 비해 원장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실제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기관의 영유아 권리교육 실시율은 매우 낮아 어린이집의 경우 41.3%, 유치원의 경우 27.9%에 불과함.
- 현행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위주이며, 교육 강화 요구내용은 원장의 경우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교사의 경우 아동 발달 이해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영유아 권리교육관련 교재 구비율은 전체 평균 약 38% 수준이며, 교재 중

류는 주로 도서와 그림 영상자료임.

#### 다.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 영유아 권리 존중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부족이 지적됨.
-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요구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축소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6. 제언

#### 가. 기본 방향

- 영유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육아지원기관의 보호권 내실화와 참여권의 확장
- 영유아 권리교육의 체계화
- 영유아 권리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나. 정책 과제

- 보육·교육과정과 평가지표의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유아 권리 실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괄함.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에 영유아 권리 실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괄함.
-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
  - 교직원 대상: 교육내용의 내실화와 교육시간 강화
  - 영유아 대상: 권리교육의 제도화

- 부모 대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참여 활성화
- 전문 강사진의 확충과 컨설팅 지원
- 자율장학의 활성화
- 관련 기구의 내실화와 법제화
  - 아동정책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권리 보장 강화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아동권리옴부즈맨 제도의 법적 지위 마련
- 평가체계의 마련
  -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수준 평가지표의 마련
-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 보조인력 지원 강화
- 홍보 강화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3
<b>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b> .....	<b>13</b>
1. 영유아 권리의 개념과 원칙 .....	13
2.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26
3. 선행연구 .....	53
<b>III.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b> .....	<b>63</b>
1. 생존·보호권 .....	65
2. 발달권 .....	73
3. 참여권 .....	77
4. 종합: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의 평가 영역 및 세부 항목 .....	80
<b>IV.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실태</b> .....	<b>86</b>
1. 생존·보호권 .....	86
2. 발달권 .....	105
3. 참여권 .....	117
4. 소결 .....	123
<b>V.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교육 경험</b> .....	<b>127</b>
1.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	127
2.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	148
3.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	162

4. 소결 .....	170
<b>VI. 제언 .....</b>	<b>174</b>
1. 기본 방향 .....	174
2. 정책 과제 .....	176
<b>참고문헌 .....</b>	<b>183</b>
<b>부 록 .....</b>	<b>187</b>
부록 1.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어린이집 원장용) .....	188
부록 2.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보육교사용) .....	201
부록 3.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유치원 원장용) .....	215
부록 4.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유치원 교사용) .....	228
부록 5.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면담 질문지(원장용) .....	242
부록 6.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면담 질문지(교사용) .....	245
부록 7. 어린이집 급식관리 체크리스트 .....	248
부록 8. 참여권 보장의 사례(어린이집) .....	250



## 표 차례

<표 I-3-1> 설문조사 영역별 질문내용-어린이집 대상 .....	4
<표 I-3-2> 설문조사 영역별 질문내용-유치원 대상 .....	5
<표 I-3-3> 어린이집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원장/교사 .....	6
<표 I-3-4> 유치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원장/교사 .....	7
<표 I-3-5> 집단 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	8
<표 I-3-6> 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	9
<표 I-3-7> 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유치원 원장/교사 .....	10
<표 I-3-8>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 .....	10
<표 I-3-9> 운영 형태에 따른 영역별 점수 현황(2010) .....	11
<표 I-3-10> 시설 규모별 인증결과(40인 이상 시설) .....	12
<표 I-3-11> 시설 규모별 인증결과(39인 이하 시설) .....	12
<표 II-1-1> 「아동복지법」 아동권리 보장 관련 조항 .....	17
<표 II-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관련 조항 .....	18
<표 II-2-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련 조항 .....	28
<표 II-2-2>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영양관련 조항 .....	29
<표 II-2-3> 유아교육법 건강검진과 급식 관련 조항 .....	31
<표 II-2-4> 유치원의 급식 시설·설비 기준 .....	31
<표 II-2-5> 「학교보건법」 유치원 해당 조항 .....	33
<표 II-2-6> 안전교육 기준 .....	34
<표 II-2-7>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조항 .....	35
<표 II-2-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준수 사항 .....	36
<표 II-2-9> 「아동복지법」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조항 .....	37
<표 II-2-10>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 관련 조항 .....	38
<표 II-2-11>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2011년 신규) .....	39
<표 II-2-12> 「아동복지법」 아동의 안전교육 관련 조항 .....	40
<표 II-2-13> 영국 Early Foundation Stage의 주제와 내용 .....	47
<표 II-2-14> 영국 중서부 건강국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 .....	48
<표 II-2-15> 종일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중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 지표51	

<표 II-2-16> 호주 AECA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	52
<표 III-0-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중 영유아 권리 실태 평가에의 활용	63
<표 III-0-2> 유치원 평가지표 중 영유아 권리 실태 평가에의 활용	65
<표 III-1-1> 어린이집 실내 및 서비스공간과 놀잇감의 청결관리 수준 평가 항목	66
<표 III-1-2> 어린이집 개별 침구 사용과 관리 수준 평가 항목	67
<표 III-1-3> 어린이집 식자재 위생 관리 수준 평가 항목	67
<표 III-1-4>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	68
<표 III-1-5> 유치원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	68
<표 III-1-6> 어린이집 영양관리 수준 평가 항목	69
<표 III-1-7>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평가 항목	69
<표 III-1-8>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	71
<표 III-1-9>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	72
<표 III-1-10> 아동학대 예방 수준 평가 항목-어린이집/유치원	73
<표 III-2-1> 어린이집 보육활동 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	74
<표 III-2-2> 보육활동 내용 평가 항목	74
<표 III-2-3> 표준보육과정 이해 및 적용 평가 항목	75
<표 III-2-4> 유치원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	75
<표 III-2-5>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 평가 항목	76
<표 III-2-6> 유치원 종일반 운영 평가 항목	77
<표 III-3-1> 참여권 보장 수준 평가 항목-어린이집/유치원	79
<표 III-4-1> 영유아 권리 영역별 실태 평가체계	80
<표 IV-1-1> 어린이집 위생·청결관리 수준-원장	86
<표 IV-1-2> 어린이집 급식관리 수준-원장	87
<표 IV-1-3>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원장	88
<표 IV-1-4>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교사	89
<표 IV-1-5>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91
<표 IV-1-6> 유치원 건강관리 수준	92
<표 IV-1-7>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수준	93
<표 IV-1-8> 어린이집 안전보호 수준	95
<표 IV-1-9>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96
<표 IV-1-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수준	98

<표 IV-1-11>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수준 .....	100
<표 IV-1-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	101
<표 IV-1-13> 유치원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	103
<표 IV-1-14>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수준-어린이집 .....	104
<표 IV-1-15>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수준-유치원 .....	104
<표 IV-2-1>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	106
<표 IV-2-2>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	107
<표 IV-2-3>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	110
<표 IV-2-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 .....	111
<표 IV-2-5>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	113
<표 IV-2-6>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	114
<표 IV-2-7>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수 .....	115
<표 IV-2-8> 유치원 종일반 운영 .....	116
<표 IV-2-9> 어린이집 참여권 보장 수준 .....	118
<표 IV-2-10> 유치원 참여권 보장 수준 .....	122
<표 V-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어린이집/유치원 .....	127
<표 V-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교사/원장 .....	128
<표 V-1-3>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어린이집 .....	129
<표 V-1-4>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유치원 .....	131
<표 V-1-5>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원장/교사 .....	132
<표 V-1-6>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어린이집/유치원 .....	133
<표 V-1-7>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원장/교사 .....	135
<표 V-1-8>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어린이집/유치원 .....	135
<표 V-1-9>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원장/교사 .....	136
<표 V-1-10>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어린이집 .....	138
<표 V-1-11> 유아 권리 인식 수준-유치원 .....	140
<표 V-1-12>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원장/교사 .....	141
<표 V-1-13>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어린이집 .....	142
<표 V-1-14> 유아 권리 실행 수준-유치원 .....	144
<표 V-1-15>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원장/교사 .....	145
<표 V-1-16> 영유아 권리의 인식/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육교사 .....	146

<표 V-1-17> 유아 권리 인식/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치원 교사	147
<표 V-2-1>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어린이집/유치원	149
<표 V-2-2>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원장/교사	149
<표 V-2-3>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어린이집/유치원	150
<표 V-2-4>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원장/교사	151
<표 V-2-5>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육교사	152
<표 V-2-6> 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치원 교사	152
<표 V-2-7>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어린이집/유치원	154
<표 V-2-8>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원장/교사	154
<표 V-2-9>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155
<표 V-2-10>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어린이집/유치원	157
<표 V-2-11> 영유아 권리 교육 실시 여부-어린이집/유치원	158
<표 V-2-12> 영유아 권리교육 미실시 이유-어린이집/유치원	159
<표 V-2-13>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구비 여부-어린이집/유치원	160
<표 V-2-14>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종류-어린이집/유치원	162
<표 V-3-1>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중복 응답)-어린이집	162
<표 V-3-2>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중복 응답)-유치원	163
<표 V-3-3>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내용-어린이집 원장(1순위)	165
<표 V-3-4>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내용-보육교사(1순위)	165
<표 V-3-5>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한 개선점-어린이집(1순위)	166
<표 V-3-6> 유아 권리 존중 교육을 위한 개선점-유치원(1순위)	166

## 그림 차례

[그림 IV-1-1]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교사 .....	88
[그림 IV-1-2]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	91
[그림 IV-1-3] 어린이집 안전보호 수준 .....	95
[그림 IV-1-4]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	96
[그림 IV-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수준 .....	98
[그림 IV-1-6]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수준 .....	100
[그림 IV-1-7] 어린이집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	101
[그림 IV-1-8] 유치원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	102
[그림 IV-2-1]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	105
[그림 IV-2-2]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	107
[그림 IV-2-3]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	109
[그림 IV-2-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 .....	111
[그림 IV-2-5]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	114
[그림 IV-2-6] 유치원 종일반 운영 .....	116
[그림 IV-2-7] 어린이집 참여권 보장 수준 .....	117
[그림 IV-2-8] 유치원 참여권 보장 수준 .....	121
[그림 V-1-1]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어린이집 .....	129
[그림 V-1-2]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유치원 .....	130
[그림 V-1-3]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어린이집 .....	133
[그림 V-1-4]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유치원 .....	134
[그림 V-1-5]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원장/교사 .....	134
[그림 V-1-6]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어린이집 .....	137
[그림 V-1-7] 유아 권리 인식 수준-유치원 .....	139
[그림 V-1-8]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어린이집 .....	141
[그림 V-1-9] 유아 권리 실행 수준-유치원 .....	143
[그림 V-2-1]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어린이집/유치원 .....	153
[그림 V-2-2]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	155
[그림 V-2-3]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	157

[그림 V-2-4]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구비 여부-어린이집/유치원 ..... 160  
[그림 V-2-5]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종류-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 16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은 아동권리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0년 9월 2일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약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sup>1)</sup>.

그 동안 정부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권리 지표 개발을 통해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2003년 이후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학대, 폭력,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통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육성종합대책”,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등 주요 아동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취학 전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그들의 생활 여건, 가족 구조, 보육, 교육시스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유아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기회의 제한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보육·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는 성장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양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면 그 영향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0). 뿐만 아니라 현재 아동은 점점 더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가정 밖에서 부모나 가족이 아닌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 성장 환경의 중요한 일부가 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때 영유아 권리 보장은 단지 생존·발달·보호권에 한정되지 않고 참여의 권리로 확장

---

1)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고,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하였다.

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고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경우 안전보호 수준조차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며, 보육·교육 활동 시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유아들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폭언, 폭행, 부실 급식 등 일체의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한해 영유아 학대 피해 발생 수는 1,781건에 달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대가 발생한 건수는 전체 학대 피해아동(5,657건)의 2.1%인 119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a: 80, 94). 게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종사자의 학대 건수는 229건(4.0%)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1a: 87-88).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직원 등의 아동권리 관련 지식 및 인식 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이 아동권리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나 교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아동권리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에 해당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생존·발달·보호권은 물론 참여권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육아지원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그리고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및 요구를 파악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에 근거하여 영유아 권리를 이해하고,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이행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둘째,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법규와 제도들을 파악하고,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법규와 제도, 각종 규약, 아동권리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실태 평가를 위한 주요 영역과 세부 항목을 도출한다.

넷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와 요구도를 분석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및 요구를 규명한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영유아 권리 실태와 요구에 근거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증진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학계 전문가와 관련자, 해당 시설 및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가.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

우선 영유아 권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위원회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 이행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동권리 지표 개발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영역과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평가, 육아지원기관 권리교육의 영향 및 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권리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 나. 설문조사

##### 1) 조사 대상 및 내용

조사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유치

원 원장과 유치원 교사 각각 1,033명, 1,048명, 1,033명, 1,040명, 총 4,154명이며,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설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6인에게 설문항 전반에 관한 1차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설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견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총 5인)에게 2차에 걸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어린이 집과 유치원 원장, 교사(총 10명)각 10인씩 총 20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3-1> 설문조사 영역별 질문내용 - 어린이집 대상

영역		질문내용	조사 대상
응답자 일반적 특징		- 지역, 설립유형, 규모, 평가인증 여부, 연령, 학력, 전공 분야, 총 경력 - 담당학급 아동 연령, 최종 소지자격	원장/교사
권리 인식/ 실행 수준 및 요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주요원칙에 대한 인지 -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 - 권리 영역별 자체 평가(교재교구,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권리 실행시 애로사항 및 요구	원장/교사
생존· 보호권 실행 실태	건강/ 영양관리	- 영아(기저귀갈이 공간, 개별 침구 사용 여부) - 식자재 및 식품 기한 관리, 간식 제공 -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원장
		- 청소 및 소독, 세척·세탁 및 기록 여부	교사
	안전관리 및 보호	- 안전관리(가구 안전, 놀잇감 안전점검 등) - 안전보호 현황(인계 절차, 귀가동의서, 안전교육 실시)	원장
	학대예방	- 아동학대(민감성, 발견 시 조치)	원장/교사
발달권 실행 실태	보육계획· 일과 운영	- 보육활동 시 고려(발달 수준, 균형성, 실외활동, 자유 선택활동, 특별활동, 일상생활 관련활동, 활동평가 및 관찰)	교사
	표준 보육과정	- 관심도(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육프로그램) - 이해도(인간상, 목적, 구성, 수준 구분, 교사지침, 평가) - 적용 정도(보육계획, 영역별 내용 반영)	원장/교사
참여권 실행 실태		- 영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 제공 - 급간식 시 자율성 - 영유아의 자발적 참여 보장	교사
교육 경험/ 요구		- 영유아 권리교육의 관심도/필요성 인식 - 교육 현황: 교육 경험 여부/교재교구 구비 현황 - 권리교육 강화 내용	원장/교사

조사 내용은 1) 아동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2) 건강·영양관리 3) 안전 보호 (시설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4) 보육·교육과정(활동계획의 수립과 활동내용 등) 5) 보육·교육 일과 중 참여권 보장 6)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과 요구(원장 및 교사 대상)로 구성된다. 한편 각 영역별 조사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및 기관의 특성, 그리고 해당 원장과 교사의 직무 특성에 따라 일부 달리 구성하였다. 이를테면 시설 및 기관의 (운영)관리 사항은 원장에게만 질문하였고, 반면 보육·교육 일과 시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에게만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영역별 질문내용과 조사 대상은 <표 I-3-1>, <표 I-3-2>와 같다.

<표 I-3-2> 설문조사 영역별 질문내용 - 유치원 대상

영역	질문내용	조사 대상	
응답자 일반적 특징	- 지역, 설립유형, 규모, 연령, 학력, 전공분야, 총 경력 - 담당 학급 아동 연령, 최종 소지자격	원장/교사	
권리 인식/ 실행 수준 및 요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주요원칙에 대한 인지 -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 - 권리 영역별 자체 평가(교재교구,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권리 실행 시 애로사항 및 요구	원장/교사	
생존· 보호권 실행 실태	건강/ 영양관리	- 기본생활습관(청결·규칙적인 생활·식습관) 지도 -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 쾌적환경, 실외놀이기구 관리 등	원장/교사
		- 영양균형 급·간식, 신선한 식재료 구입·검수 - 식단표 및 보존식 공개	원장
	안전관리 및 보호	- 안전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 사고발생 대비책 - 시설 안전관리	원장
	학대예방	- 아동학대(민감성, 발견 시 조치)	원장/교사
발달권 실행 실태	교육계획· 일과운영	- 교육계획안(작성방법, 평가, 영역별 내용반영) - 일과 운영(자유선택활동, 통합성, 균형성, 발달 기록) - 종일반 운영(설비, 프로그램, 원아 수, 보호, 교사)	교사
	교육 과정	- 관심도(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지도 자료집) - 이해도(인간상, 목적, 구성, 수준 구분, 교사지침, 평가)	원장/교사
참여권 실행 실태	- 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 제공 - 급·간식 시 자율성 - 영유아의 자발적 참여 보장	교사	
교육 경험/ 요구	- 영유아 권리교육의 관심도/필요성 인식 - 교육 현황: 교육 경험 여부/교재교구 구비 현황 - 권리교육 강화 내용	원장/교사	

## 2) 응답자 일반적 특징

### 가) 어린이집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실태와 요구 조사는 어린이집 원장 1,033명과 교사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 약 45%, 중소도시 약 34%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이 약 40%를 차지한다. 응답자 연령은 원장의 경우 40대가 47.2%, 교사의 경우 30대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총 경력은 원장은 10년 이상이 42.5%, 교사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속 기관의 설립유형은 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36.1%, 민간 34.1%, 가정 18.1%, 직장/법인의 11.6%이며, 교사의 경우 국공립/법인 38.6%, 민간 33.8%, 가정 16.4%, 직장/법인 외 11.2%로 나타났다. 교사의 담당학급 비율은 만 2세반이 35.0%로 가장 높다.

<표 1-3-3> 어린이집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 원장/교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원장	교사		원장	교사
전체	100.0(1,033)	100.0(1,048)			
지역 1					
서울	20.0(207)	21.1(221)	강원	3.7(38)	3.5(37)
부산	5.8( 60)	5.6( 59)	충북	2.2(23)	2.7(28)
대구	4.4( 45)	4.7( 49)	충남	5.1(53)	5.0(52)
인천	6.0( 62)	5.6( 59)	전북	5.3(55)	5.2(55)
광주	2.7( 28)	2.9( 30)	전남	4.5(46)	4.3(45)
대전	3.0( 31)	3.1( 33)	경북	5.9(61)	6.3(66)
울산	2.1( 22)	1.6( 17)	경남	6.9(71)	6.1(64)
경기	20.0(207)	19.8(208)	제주	2.3(24)	2.4(25)
지역 2			시설규모		
대도시	44.0(455)	44.8(469)	20인미만	18.1(187)	16.7(175)
중소도시	34.2(353)	33.8(354)	20-49명	34.1(352)	33.9(355)
읍면동	21.8(225)	21.5(225)	50명이상	47.8(494)	2.9( 30)
연령					
20-29세	1.2( 12)	27.4(287)	40-49세	47.2(488)	21.9(229)
30-39세	23.8(246)	47.9(502)	50세 이상	27.8(287)	2.9( 30)
총경력					
2년11개월이하	19.1(197)	13.4(287)	5년~9년11개월	26.0(269)	42.9(450)
3년~4년11개월	12.4(128)	15.2(159)	10년 이상	42.5(439)	28.5(299)

(표 I-3-3 계속)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원장	교사		원장	교사
설립유형					
국공립/법인	36.2(374)	38.6(405)	가정	18.1(187)	16.4(172)
민간	34.1(352)	33.8(354)	직장/법인 외	11.6(120)	11.2(117)
담당학급이동연령					
만0세	-	9.3( 97)	만4세	-	6.2( 65)
만1세	-	21.5(225)	만5세	-	10.8(113)
만2세	-	35.0(367)	영아혼합(0~2세)	-	1.0( 11)
만3세	-	12.0(126)	유아혼합(3~5세)	-	4.2( 44)

나) 유치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유치원의 유아 권리 실태 및 요구 조사는 유치원 원장 1,033명과 교사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며, 경기(20.4%), 서울(13.9%)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 연령은 원장의 경우 50대가 62.8%, 교사의 경우 30대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총경력은 원장은 10년 이상이 55.7%, 교사는 10년 이상이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속 기관의 설립유형은 원장의 경우 국공립 44.6%, 사립 55.4%이며, 교사의 경우 국공립 55.1%, 사립 44.9%로 나타났다. 교사의 담당학급 비율은 만 5세반 31.9%로 가장 높다.

<표 I-3-4> 유치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 원장/교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원장	교사		원장	교사
전체	100.0(1,033)	100.0(1,040)			
지역 1					
서울	13.9(144)	12.1(126)	강원	4.6(48)	5.2(54)
부산	4.7( 49)	4.6( 48)	충북	3.7(38)	5.0(52)
대구	4.4( 45)	4.4( 46)	충남	5.6(58)	6.4(67)
인천	4.6( 48)	3.7( 38)	전북	6.8(70)	5.7(59)
광주	2.8( 29)	2.6( 27)	전남	6.5(67)	7.0(73)
대전	3.9( 40)	3.3( 34)	경북	6.5(67)	7.0(73)
울산	1.8( 19)	1.7( 18)	경남	7.7(80)	8.6(89)
경기	20.4(211)	20.2(210)	제주	1.9(20)	2.5(26)

(표 I-3-4 계속)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원장	교사		원장	교사
지역 2			시설규모		
대도시	36.2(374)	31.3(325)	20인미만	21.9(226)	26.9(280)
중소도시	33.8(349)	32.2(335)	20-49명	16.5(170)	20.5(213)
읍면동	30.0(310)	36.5(380)	50명이상	61.7(637)	52.6(547)
연령					
20-29세	-	24.1(251)	40-49세	28.3(292)	35.5(372)
30-39세	8.9( 92)	35.8(372)	50세 이상	62.8(649)	4.6( 48)
총경력					
2년1개월이하	19.7(203)	6.5( 68)	5년~9년1개월	15.5(160)	28.5(296)
3년~4년1개월	9.2( 95)	9.3( 97)	10년이상	55.7(575)	55.7(579)
설립유형					
국공립	44.6(461)	55.1(573)	사립	55.4(572)	44.9(467)
담당학급아동연령					
만 3세		11.7(122)	만 3~4세		4.5( 47)
만 4세		12.9(134)	만 4~5세		9.8(102)
만 5세		31.9(332)	만 3~5세		29.1(303)

####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민간 차원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을 실천 중인 어린이집 5곳, 유치원 3곳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원장 5인, 보육교사 6인, 유치원 원장 3인, 교사 6인 총 20인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경우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실행 시 애로사항과 주요 효과, 제도적 보완 사항,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교육의 효과, 교육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요구 등이다. 면담 실시 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3-5> 와 같다.

&lt;표 I-3-5&gt; 집단 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횟수	일시	대상 및 참여자수	질문 내용
1차	2011. 8. 8	어린이집 원장(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시 동기 및 실시과 정</li> <li>·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시 효과 및 애로사항, 부모교육 필요 및 방안</li> <li>· 원장 및 교사대상 아동권리 교육내용</li> </ul>

(표 I-3-5 계속)

횟수	일시	대상 및 참여자수	질문 내용
2차	2011. 8.24	어린이집 교사(3)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경험/보육활동 중 참여권 보장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시과정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3차	2011. 8.26	어린이집 교사(3)	· 교사대상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
4차	2011. 10.27	유치원 원장(3)	· 유아 권리 존중 교육 실시 동기 및 실시 과정 · 유아 권리 존중 교육 실시 효과 및 애로사항, 부모교육 필요 및 방안 · 원장 및 교사대상 아동권리 교육내용
5차	2011. 11.14	유치원 교사(6)	· 유아 권리 존중 교육 경험/교육활동 중 참여권 보장 · 유아 권리 존중 교육 실시과정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교사대상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

한편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I-3-6>, <표 I-3-7>과 같다. 우선 어린이집의 면담 참여자는 서울 지역에 위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소속으로 원장의 경우 학력은 대학원졸이고, 근무 경력은 1년 2개월에서 5년 7개월이며, 보육교사의 경우 학력은 전문대졸 또는 4년대졸이고, 근무 경력은 3년 6개월에서 12년 5개월로 다양하였다. 연령은 원장의 경우 34~49세, 보육교사의 경우 25세~31세이다.

<표 I-3-6> 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직위	연령	최종 학력	근무 경력
원장1	49세	대학원졸	20년
원장2	45세	대학원졸	5년 7개월
원장3	34세	대학원졸	2년
원장4	37세	대학원졸	1년 4개월
원장5	43세	4년제대졸	5년
교사1	26세	4년제대졸	4년
교사2	31세	전문대졸	12년 5개월
교사3	28세	4년제대졸	4년 2개월
교사4	29세	전문대졸	6년 6개월
교사5	26세	4년제졸	3년 6개월
교사6	25세	전문대졸	3년 6개월

유치원의 면담 참여자는 경기 지역에 위치하는 사립유치원 소속으로, 원장의 경우 학력은 대학원졸이며, 근무 경력은 25년 이상이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학

력은 대부분 전문대졸이며, 근무 경력은 2년 9개월에서 5년 9개월로 다양하였다. 연령은 원장의 경우 47세~54세, 교사의 경우 24~29세로 나타났다.

<표 1-3-7> 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 - 유치원 원장/교사

직위	연령	최종 학력	근무 경력
원장1	47	대학원졸	25년 7개월
원장2	54	대학원졸	25년
원장3	49	대학원졸	27년
교사1	26	전문대졸	5년 9개월
교사2	25	전문대졸	4년 9개월
교사3	26	전문대졸	4년 8개월
교사4	27	전문대졸	6년 8개월
교사5	24	전문대졸	2년 9개월
교사6	29	4년제졸	4년 9개월

## 라. 간담회 및 자문회의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육아지원기관 아동권리 실태 평가의 주요 영역 및 항목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은 다음 <표 1-3-8>과 같다.

<표 1-3-8>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시	참여자	회의 내용
집단	2011. 4. 6	학계전문가 총 5인	-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범위 - 연구 방향의 정립 등
집단	201. 6. 10	학계전문가 총 6인	- 권리 실태 파악의 주요 영역 및 항목의 적절성 검토 - 설문지 예비 검토 등
개별	2010. 6. 20	민간(S기관) 아동권리사업 담당 실무진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내용 등
집단	2011. 6. 23	서울 경기 소재 어린이집 원장 총 5인 (어린이집 유형별)	- 설문지 예비 검토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등
집단	2011. 6. 24	서울시 소재 유치원 원장 총 5인 (어린이집 유형별)	- 설문지 예비 검토 -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보육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등



### 마. 연구 범위와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기관은 대표적인 육아지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영유아 권리 영역의 포괄 범위는 이들 기관 내에서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을 위주로 하였다. 특히 2010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의하면, 건강·영양과 안전 영역이 운영 형태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므로 이들 영역에 보다 주목하였다(표 I-3-9, 표 I-3-10, 표 I-3-11 참조).

또한 이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내 이동권리 실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므로 영유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사항들, 즉 부모들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만족도, 부모 참여 및 지원에 관해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한정적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내 영유아 권리에 주목하므로 육아지원기관의 인프라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지원 등 국가 수준의 육아지원 수준 전반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 검토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권리 평가를 위한 주요 영역과 세부 항목의 선정은 모든 영유아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장애아 전담시설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I-3-9> 운영 형태에 따른 영역별 점수 현황(2010)

구분	총점 (표준편차)	1영역 (보육환경)	2영역 (운영관리)	3영역 (보육과정)	4영역 (상호작용·교수법)	5영역 (건강·영양)	6영역 (안전)
40인이상	88.42 (4.14)	93.36 (5.04)	89.78 (5.63)	93.12 (5.07)	89.71 (5.32)	88.32 (6.08)	85.20 (6.26)
장애아 전담	92.31 (3.24)	95.42 (5.05)	93.08 (5.38)	98.97 (1.03)	97.11 (3.46)	92.76 (4.27)	87.02 (5.83)
39인이하	87.99 (4.19)	1영역 (보육환경· 운영관리)	2영역 (보육과정)	3영역 (상호작용· 교수법)	4영역 (건강·영양)	5영역 (안전)	-
		89.25 (5.76)	91.24 (5.92)	91.79 (4.71)	89.16 (6.07)	87.10 (6.27)	

자료: 보건복지부(2011d).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2011.4.22). p. 6.

&lt;표 1-3-10&gt; 시설 규모별 인증결과(40인 이상 시설)

구분	총점	1영역 (보육환경)	2영역 (운영관리)	3영역 (보육과정)	4영역 (상호작용· 교수법)	5영역 (건강·영양)	6영역 (안전)
재인증	91.02	96.36	92.96	93.71	91.85	90.80	89.76
신규인증	88.42	93.36	89.78	93.12	89.71	88.32	85.20

자료: 보건복지부(2011d).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2011.4.22). p. 6.

&lt;표 1-3-11&gt; 시설 규모별 인증결과(39인 이하 시설)

구분	총점	1영역 (보육환경· 운영관리)	3영역 (보육과정)	4영역 (상호작용· 교수법)	5영역 (건강·영양)	6영역 (안전)
재인증	89.16	91.76	90.85	92.51	90.66	88.11
신규인증	87.99	89.25	91.24	91.79	89.16	87.10

자료: 보건복지부(2011d).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2011.4.22). p. 6.

한편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이 연구에서 시도된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실태는 원장과 교사의 평가에 근거하므로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은 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에서 도출되어 영유아 권리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인 척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명·보호·발달권은 서로 연계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이 연구에서는 실태 파악의 명료성과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위해 생존·보호권과 발달권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참여권 부문은 보육·교육일과 위주로 한정되어 추후 연구를 통해 전반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영유아 권리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들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들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1. 영유아 권리의 개념과 원칙<sup>2)</sup>

역사적으로 영유아의 삶은 성인의 삶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왔다. 영유아는 성인이 주도하는 공간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성인은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현실은 영유아가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어떤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실행이 모두 성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1절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기반 마련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체결

아동의 권리는 오랜 세월 논의되어 왔다.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된 이후 1989년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기까지 7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는 아동기는 필연적으로 성인이 구조화한 사회에 바탕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아동’의 저자 조셉조네이도

---

2) II장 제1절 “영유아 권리 개념과 원칙”은 황옥경(201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유엔의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011: 26)는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발달 등이 역설적으로 영유아의 욕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그는 '이데올로기는 유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유아를 방해한다'고 보았고 이데올로기가 성인과 아동의 관계를 가로 막고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은 성인이 반드시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촉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시자인 에글렌타인젠크 여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아기의 목숨을 끊는 처절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설립 4년 만인 1923년 '비록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아기의 생명권은 엄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널리 외치면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을 선포하였다.<sup>3)</sup> 이것은 유엔에서 제네바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아동의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195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네바 선언보다 좀 더 진전된 "아동권리선언"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선포에 뒤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개 부분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협약)은 미국과 소말리아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93개 당사국(State Party)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국제법 효력을 갖고 있어 협약 비준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을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인 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협약이 탄생되기까지 협약 내용 중 용어와 대상 규정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견이 있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보수성과 각 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교국과 카톨릭 국가들은 협약에서 여전히 태아가 제외되어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 국의 아동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입장은 협약 비준국이 193개국에 이르지만 63개국만 가입 또는 비준 시 협약의 몇몇 조항을 유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유보 조항은 대개는 성인과 아동권리의 충돌을 우려한 성인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국가가 소수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하거나 몇몇 국가가 다수의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한다면 조약의 법률적 기능이 침식될 수 있다.

3) <http://www.savethechildren.org.uk/about-us/history>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조건없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발달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아동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아동기의 미숙함 때문에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인은 옳고 아동은 나쁘다는 모순된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협약은 특히 아동이 의사표현과 자기결정 등과 같은 역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아동 참여는 이런 맥락에서 중시되어 왔다. Unicef(2005: 10)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아동을 발달적 존재, 참여적 존재, 보호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계 189개국 대표단 및 아동 대표 350명 등 총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 5월 처음으로 열린 아동을 위한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아동들은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하고 보호받아야 함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A World Fit for Children)’ 운동을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제 1부(1-41조), 제 2부(42-45조), 제 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앞부분의 다섯 조항은 조약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조항 6에서 조항 40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이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제공의 개념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질적 자원의 제공과 이를 사용할 권리로서, 성명, 국적, 의료, 교육, 여가 등을 즐길 권리와 요보호 아동 및 장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의 개념은 아동이 유해한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학대 및 부모로부터의 격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제1항),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제12조) 및 아동의 참여(제12조)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 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관,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라)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란 “어떠한 계획과 과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뜻한다. 그러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삶과 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의 모든 조항이 중국에 가서는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무차별 원칙의 지향점이 아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관련 문제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상의 명제로 받아들이지만 실

제 상황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심과 충돌한다. 아동과 관련된 일에 중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하면서, 아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이를 표명하는 입장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른바 ‘최선의 이익’의 원리가 갖는 ‘불명확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한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나 전문가, 부모, 아동 간에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언제나 있어도 아동이 권리의 소유자인 이상 아동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이 잠재력이든 현재의 능력이든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 3) 우리나라의 비준과 이행 상황

「아동복지법」 제3조와 제4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의 주요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I-1-1> 「아동복지법」 아동권리 보장 관련 조항

<p><b>아동복지법</b>  <b>제3조(기본이념)</b>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p> <p><b>제4조(책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즉 아동에 대한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한 생존과 건전한 발달 및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와 국가의 책무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6에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21조a ‘입양허가제’, 40조2b(v) ‘아동의 상소권 보장’의 세 개 조항을 유보한 채 협약을 비준하였다(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155). 협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하여 1994년 제1차와 2001년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되는 점과 이를 근거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권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제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아동권리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 제9조 제3항의 유보조항 철회를 통한 부모면접교섭권 확보, 아동권리 연구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000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아동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2004년 9월 24일 비준하였다.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부보고서는 2007년 11월 1일에 제출되었고 2008년 7월 2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7년 7월 16일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2008년 6월 27일 심의를 받았다. 또한 2002년 5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아동특별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UNGASS)에서 채택된 결과문서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Outcome Document : A World Fit for Children: WFFC)’에 대한 이행 현황을 2007년 10월 30일 제출하였다(이재연 외, 2009: 155).

한편 유니세프가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10개의 아동권리 보호 최소기준 지표를 준거로 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수준은 육아휴직 1년과 50%의 임금 지급, GDP 1%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교사 대 아동 비율 1:15, 4세아 80% 지원 등 4개 지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2010: 101).

## 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유아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였고, 2006년 일반 토론의 날에 유아기 아동권리 이행을 논의 주제로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함의를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협약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영유아가 권리 실현의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엔 일반논평 7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 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sup>4)</sup>.

### 1)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엔의 해석

#### 가) 영유아와 권리

일반논평에서 유아는 권리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반논평은 유아 그 자체의 발달적 특성만으로도 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유아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논평 5는 영유아가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해 가는 사회화의 단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탈피되어야 하고 유아는 자신

4) 일반논평은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풍부하게 만들어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일반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 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나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편역, 2006: 서문).

의 관심사와 이익 그리고 의견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며, 가족과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성장 발달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국이 유아기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아기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영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 보살핌과 세심한 지도를 특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아의 필요가 영유아 양육관련 정책, 법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논평 6 이하에서 유아기를 아동권리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기에 직면하는 발달 과제, 특별한 이익, 경험 및 도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유아기 아동권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 나) 영유아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3조, 6조, 12조를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제6조 생존, 생명 및 발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임신부의 보호, 유아 사망률의 감소, 영양 결핍, 예방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유아의 보호를 강조한다. 유아 발달의 모든 측면 즉,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영유아기의 연령 차별에 주목하였다. 비차별의 권리 제2조에 근거하여 유아는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유아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반논평 11에서 유아 차별은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부실한 영양 공급, 학습과 교육기회의 제한,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가혹한 대우, 비이성적인 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차, 특히 여아에 대한 차별은 여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였고, 불충분한 영양공급을 통한 유기와 영아 살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은 생존의 기대와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의료서비스 및 영양공급과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와 관련된 차별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별은 성인에 대한 아동의 분노와 충동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회와 자기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국가는 유아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에 주목하고 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을 감독해야 하며, 모든 유아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반논평 13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유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유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유아가 자신의 선호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과 정책, 제도의 개발 및 행정·사법절차에서의 최선의 이익과 보건서비스, 양육체계 혹은 보육 및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14는 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와 이를 고려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유아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제12조는 유아의 행위에 대한 존중이 간과되고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유아의 의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는 유아의 훈련과 사회화를 강조하면서 유아를 이해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및 선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대해왔다는 데 주목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12조 아동 참여는 아주 어리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유아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의 훨씬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부모 및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훈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유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와 16은 협약 전문에서 가족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그 집단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 환경"이라고 규정하였다. 협약 제5조는 부모의 역할을 협약 내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언급에 기초하여 부모(와 다른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타인

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며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신생아는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양육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교환을 하고 유아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 혹은 양육자와 다양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출생 후 유아의 발달은 권리 실현에 결정적인데, 부모 및 양육자들은 아동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동의 이익과 바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인 차이를 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고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일반논평은 협약 18조에 따라 양부모를 동등한 양육자로 인정하지만 가족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에 관심을 두었다. 각 국은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유아기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시기로 부모의 자원과 복지 상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 실현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반논평 21에 따르면 부모지원은 보건, 양육 및 교육 영역이 망라된다.

#### 라) 포괄적 육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일반논평 22에서 각 국은 유아기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전무하거나 프로그램이 파편화되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8세까지 유아와 관련된 법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는 유아관련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설비 또한 이러한 질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직원 수가 충분하고 잘 훈련되어야 하며 이들은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유아에게 필요한 포괄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가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아야 한다.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 발달은 심리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논평 28은 취학 전 1년간 무상교육을 높이 평가하였다. 교육은 아동중심 교육

이 되어야 하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논평 29는 아동의 양육자가 아동의 첫 번째 교육자임을 분명히 하고 조기교육 원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각국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때, 당사국은 부모 역할을 돕고, 아동중심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사국이 부모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부모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완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부모와의 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일반논평 30에서는 보육이나 교육이나의 논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유아에게 구조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및 확대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유아가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들이 유아기 교육경험이 학령기 적응과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4세부터 포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보호와 교육을 구분한 것이 언제나 유아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듀케어(educare)" 개념을 인식하면 유아기 서비스를 포괄적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며, 유아기에는 조화롭고 전체적이며 다양한 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고 언급하였다.

일반논평 31은 당사국이 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공급해야 할 것과 특히 아동의 참여를 통한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및 배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논평 32는 유아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일반논평 33은 유아기 교육에 권리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유아대상 권리교육은 유아의 이해, 관심 및 발달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는 참여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유아의 휴식, 여가 및 놀 권리에 대해 위원회는 특히 도시 유아의

놀이가 상업밀집지역, 교통체계, 소음, 오염, 경쟁적인 학업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데 주목하고, 놀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였다. 놀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중요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 마)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유아 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7호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한 학대와 유기 가족이 없는 아동, 난민, 유해한 노동, 장애 아동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 및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아동학대 관련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일반논평 36은 유아가 위협을 이해하거나 건강,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에 저항하거나 어려움을 피하는데 취약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데 주목하고, 유아가 위협 상황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위원회는 유아가 처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각 국에 촉구하였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유아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이 경험한 폭력을 이유로 비난받지 않아야 하며 정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바) 유아기 역량 개발

일반논평 38은 유아기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촉구하였다. 아동관련 정책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야 하며 공공과 민간기관, 가족 간의 협력 관계를 발달시키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다. 유아기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계를 생산할 것과 협약에 맞게 관련 자료수집 체계와 지표 개발을 촉구하였다. 일반논평 41은 아동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 즉 국회의원, 판사, 지사,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아동시설의 직원, 교사, 보건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부모들이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논평 43은 아동권리 독립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 정치 분야 최고 의사결정자들과의 지속적인 미팅을 촉구하였다.

## 2) 시사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 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협약의 내용을

유아에 맞게 재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논평 내용의 대부분이 협약의 이념과 원칙에 준해서 설명되고 제안되고 있으나 아동에 비해 연령이 어리고 부모에게 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발달적 특성을 각국의 법과 정책,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책 개발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일반논평의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였다. 위원회는 유아의 연령이 어리다는 데 주목하고 이로 인해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는데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아기도 이외의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임을 신생아기부터의 발달 특성을 예로 강조하고 있다. 아동보다 더 어린 존재이기 때문에 협약 적용이 어렵거나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위원회는 유아기를 권리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았다. 유아기의 특별한 요구와 경험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유아 권리의 시발점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유아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 전 영역의 균형있는 발달을 강조하였다. 즉 유아기를 8세까지로 보았는데, 이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초등 연계에 시사점을 준다. 보육 및 교육 그리고 초등교육 교사의 자격 규정 및 업무 연계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해석이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갑자기 아동이 되어야 하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유아의 생존과 발달과 관련하여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놀이 기회의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양육의 관점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유아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의 가능성이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차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유아의 발달 역량과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되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아기 발달 특징을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로서의 유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유아기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부모와 관련된 차별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넷째, 유아 최선의 이익을 중시하였다. 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유아의 이익과 바램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아의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인의 판단에 의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법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부모 및 가족 역할의 강조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유아권리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아와 유아는 어쩔 수 없이 성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아동의 일차적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는 유아 권리 실현의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다. 각국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포괄적인 부모 지원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유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유아의 의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놀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관련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어른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이 잦은 우리의 양육 상황에서 향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일곱째, 보호와 교육의 구분이 항상 유아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에듀케어(Educare)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유아기 서비스는 포괄적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특히 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런 맥락에서 민간 차원의 유아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여덟째, 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사자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교육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모를 비롯한 아동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게 될 관련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2.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영유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 가.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생활이라는 측면에 가장 관심을 두고,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사업안내”에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 중 발달권과 참여권 등이 보육과정의 실천과 영유아들이 참여하는 일과 활동의 내용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안전 및 건강 분야는 생존·보호권과 직결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제정을 제외하면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참여하는 보육활동 면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해야 하는 이슈라기보다는 활동을 주도하는 교사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끌어가는 원장의 의식적 각성과 실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여기에서는 제도적 규제와 정책으로써 영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 존중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치원 유아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은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몇몇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법적으로 학교로 분류되어 여러 학교 관련 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사업안내”와 같은 지침서가 해마다 발간되고 있지는 않다. 주요 부문별로 근거 법규와 지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

#### 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제5장에서 「건강·영양 및 안전」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유

아보육법 제32조제2항),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건강을 위해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 진단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에 대한 조치까지 규정하였다(표 II-2-1 참조). 이외에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이들이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표 II-2-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 ① 어린이집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 유지를 통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영양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식단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표 II-2-2 참조).

<표 II-2-2>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영양관련 조항

<p><b>영유아보육법</b>  <b>제33조(급식 관리)</b>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b>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b>  <b>제34조(급식 관리)</b>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

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1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조리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며, 특히 장신구 착용을 불허하였다. 또한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음식물의 보관과 관련해서는 냉장고를 반드시 확보할 것, 음식물류 사전검사

철저, 유통기한 경과 유의 등을 주의할 점으로 분명히 밝혀두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 뿐 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부록 7 참조)를 배부하여 이를 참고로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급식 이외 일반 위생관리로서는 조리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질환 감염 여부나 청결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의 의복 청결이나 기타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 질 쾌적 유지와 관리를 중요하게 보아 환경개선 등 공기 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리법령」에 따라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측정 결과의 기록과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매뉴얼'을 배포(2010년 5월 배포)하여 공기 질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음용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정수 장치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으로 수질을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고,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검사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동물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 경우에는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다)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건강검진과 급식에 대해 법 제 17조에서 규정해두고 있다. 즉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급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급식 시설·설비 기준을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해두고 있는데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은 만큼 급식 관련 시설·설비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해 두고 있다. 또한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표 II-2-3> 유아교육법 건강검진과 급식 관련 조항

<p><b>유아교육법</b>  <b>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b>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유아교육법 시행규칙</b>  <b>제3조(급식시설·설비기준 등)</b>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p>
--

<표 II-2-4> 유치원의 급식 시설·설비 기준

<p><b>유아교육법 시행규칙</b>  <b>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급식 시설·설비 기준</b></p> <p>1. 조리실</p> <p>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p> <p>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다.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耐火性), 내수성(耐水性) 및 내구성(耐久性)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마.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바.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사. 조리실에는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 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p> <p>아.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2. 설비·기구</p> <p>가.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解凍), 가열</p>
--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耐腐蝕性)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냉장식품을 검수(檢收)하거나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탐침(探針) 온도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폐달식으로 하여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 3. 식품 보관실

- 가. 식품 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 라) 학교보건법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유치원 원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건강, 위생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밝히고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 위생, 건강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표 II-2-5 참조).

이 중 특히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보건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2-5> 「학교보건법」 유치원 해당 조항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제6조의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제7조 건강검사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제8조 등교 중지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 보건교육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제14조 질병의 예방
제14조의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5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 2) 안전사고 예방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은 1) 안전교육, 2)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3) 안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4) CCTV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 가) 안전교육

“2011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집은 원장의 계획 하에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영유아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하며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 기준을 보면 다음 <표 II-2-6>과 같다.

<표 II-2-6> 안전교육 기준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3개월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올바른 교통 안전 지식 2.교통관련 법규 준수정신 3.안전 장구 착용의생활화 4.기타 교통 안전 관련 내용	1.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법적 처벌기준 3.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요령 2.위험물 취급 요령 3.재난 시 안전 행동 및 대피 요령	1.아동·청소년성취 발생 현황 2.성폭력 예방 지침 3.성폭력 예방 실습 4.성폭력 범죄 발생 시 대처법 5.법적 처벌 취업 제한 교정 6.성폭력범죄 신고 요령 절차	1.아동 실종 발생 현황 2.장소·상황별 실종·유괴 예방 지침 3.유괴·유인 시 대처 방법 4.유괴·유인 목적시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1.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실습 또는 현장학습 4.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시청각교육 3.현장방문 학습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시청각 또는 실습 3.사고사례 분석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시청각교육 3.사고사례 분석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2.시청각교육 3.실종사례 분석

자료: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나 경찰서, 가스 또는 유류 안전 점검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고 부모로부터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시설에 비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보고체계 강화 제도의 하나로,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된 감염병 보고는 지난주의 발생 현황을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육사업안내에 포함된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요구받는다.

다) 안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유치원을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 보고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유치원 유아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시장 등은 초중등학교와 어린이집과 함께 유치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2-7>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조항

<p><b>도로교통법</b>  <b>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b>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li> <li>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li> <li>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p> <p><b>도로교통법 시행규칙</b>  <b>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b>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p>
--

제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원장은 이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서 운전자에 대한 요건, 보호 장구의 구비 및 안전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 안전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II-2-8>과 같다.

<표 II-2-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준수 사항

-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 제출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귀가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

자료: 보건복지부(2011b).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 105.

#### 라) CCTV 등의 설치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2011년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어린이집내 CCTV 등 설치 운영 지침’은 어린이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육사업안내에 구체적으로 그 설치목적은 밝

하고 있다.

어린이집 IPTV를 포함한 CCTV등 설치·운영은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 목적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보건복지부(2011b),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 102.)

<표 II-2-9> 「아동복지법」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조항

<p><b>아동복지법</b>  <b>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li> <li>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li> <li>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li> </ol>
--

CCTV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된 화상 정보는 그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특히 모두 동의된 경우가 아니면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으며, 특히 유기 즉,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행위는 2011년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나 관련 교육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

<표 II-2-10>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1년 들어 보건복지부는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 방지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내 모든 영유아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여 체벌 폐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교사는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 추가된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3~6개월간 인건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인증(참여)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들 수 있고, 학대 사례를 인지했을 때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형사고소·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2-11>과 같다.

<표 II-2-11>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2011년 신규)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종사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3~6개월간 중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대 사실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형사고소·고발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1b).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 111.

#### 4) 아동권리교육

##### 가) 교직원 대상

우선 안전관련 교육을 들 수 있는데,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

고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협의하고 고지하며, 안전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종사자는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관련 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관련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표준보수교육과정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신규 직무교육으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등의 교과목이 편성되어있으며, 보육교사의 경우는 1, 2급 승급교육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이 포함되어있다.

#### 나) 아동 대상

「아동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의 해당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및 성폭력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 II-2-12> 「아동복지법」 아동의 안전교육 관련 조항

##### 아동복지법

#####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 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그 외 조치들

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볼 바는 영유아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발달권과 관련된 어린이집 내 놀이터의 설치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에 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을 포함되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관으로 규정된 점 등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2009년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보육교사용 아동권리 지침서 또한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들 수 있다.

#### 가)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터 규정

영유아가 신체운동 발달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놀이터 설치 규정을 둔 것은 영유아의 발달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외에서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에게 필요한 발달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놀이터의 기준을 보면,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옥내놀이터 공간은 특히 소음, 분진, 폭발, 화재 위험이 없어야 하며, 조명, 채광, 환기, 온도, 습도가 적정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나) 장애 영유아 차별 금지 조항의 준수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중 제 13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학

과 전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보육교사용 아동권리 교재의 배포

2009년 보건복지부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아동권리학회와 더불어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교재를 개발·보급하였다. 이는 일반공동용, 아동용, 보육교사용,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용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육교사용을 구분하여 다름으로써 영유아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보육교사용 아동권리 교재는 크게 이론편과 실제편으로 구분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 전략을 교육적으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외국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1) 영국 사례

영국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는 아동법 2004와 영유아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을 근간으로 한다. 아동법 2004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아동법 2004는 모든 아동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며, 그리고 경제적 역량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과 발달, 생존, 보호 참여의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황옥경, 2009: 46).

영유아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취업부부의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보육법은 ‘영국이 아이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치 아래 최상의 출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모든



영유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수준 높은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http://www.education.gov.uk>).

#### 가) 아동법 2004(Children Act 2004)

영국 아동법은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기본법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아동은 가족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하고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아동은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 모든 내용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권리와 더불어서 비차별의 원칙을 아동법에 적시한 것이다.

아동법 2004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아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윤철경, 박선영, 2008: 54).

- 부모와 가정,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 각각의 다른 기관과 시설에서 모인 종사자들이 개별 아동에 대해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 다양한 아동지도 팀 운영
- 공통의 평가시스템
- 전문화되고 복합적인 보호정책과 운영
- 아동들이 지역 학교시스템을 거점으로 보호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 자원활동 그룹, 종교단체, 지역사회 단체는 물론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모두가 함께 아동 보호정책과 시스템에 합류

아동법 2004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바는 아동학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보호시스템을 명시하고 잉글랜드에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국(The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을 설치하도록 하였다(황옥경, 2009: 35).

아동법 2004를 근거로 한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은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아동커미셔너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보호활동과 옹호활동을 주

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정부에게 이 기구의 설치를 꾸준히 요구 해왔었다. 아동커미셔너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커미셔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가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자신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법 2004의 아동커미셔너 지정은 아동권리증진 활동의 주체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황옥경·이승기, 2011: 52). 아동권리커미셔너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옹호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 사항에 대한 권고를 수행한다. 특히 아동권리커미셔너의 활동을 통해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교사 참여가 가능하다.

아동법은 육아지원기관 등 아동보호서비스 실행기관의 서비스를 감독·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서비스를 위한 지도원(lead member)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의 아동권리 침해를 수시로 관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로서 육아지원기관의 아동권리 성취에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법에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그리고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육아지원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효과적인 협조체계가 가능한 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법에서 아동 보호 과정에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필요시에 국가가 아동 양육에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는 자녀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아동 보호 과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모가 아동보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실제로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윤철경·박선영, 2008: 64)는 인식은 아동 보호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으로 이어졌다.

#### 나) 영유아보육법

2004년 12월 교육기술부, 노동연금부, 재무부, 통신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은 '부모를 위한 선택, 아

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영국 내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6년 4월에는 보육 10년 실행계획(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의 초기부터 최상의 출발을 하고, 부모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HM Treasury, DfES, DWP, DTI, 2004: 2).

2006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전문적이고 아동중심적인 환경에서 개별화된 보육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유아는 개별화된 특성과 요구를 이해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보육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행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또한, 영유아는 양질의 건강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취학 전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동들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의무, 일하는 부모에게 충분한 보육을 보장할 의무, 그리고 부모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보육관련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취 향상, 충분한 보육기회의 제공,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계획, 집행, 그리고 공급하는 등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총 4부 1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영유아보육법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주로 제3부에 포함되었다. 제3부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육 10년 전략인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 아동 보육을 위한 10년 전략”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규제, 지도 점검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3부의 첫 번째 장은 지도 감독자(chief inspector)의 역할, 두 번째 장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아들에 대한 보육 공급 규정, 세 번째 장은 8세 이하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 공급 규정, 네 번째 장은 자발적 등록에 관한 것, 다섯 번째 장은 공동 보육 공급 규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장의 41조 학습, 발달 요구 조건, 43조의 복지요구 조건, 44조의 학습, 발달, 복지 요구 조건 명시외 수단 등은 아동권리협약의 생존, 발

달권 등이 어린이집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제 4부는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영유아 프로그램

#####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

영국 정부의 Every Child matters의 정책 목적은 아동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다. 『Every Child Matters:Change for Children』은 영유아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건강하기 (Be Healthy)’, ‘안전하게 생활하기(Stay Safe)’, ‘즐겁게 배우기(Enjoy and Achieve)’,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Make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역량 갖추기 (Achieve Economic Well-being)’이다. 또한 이는 모든 영유아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발달 목표로 아동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는 상관이 없다(윤철경, 박선영, 2008: 52).

5가지 발달 목표는 중점 추진 사항과 지표(Target & Indicator), 그리고 세부 점검과제(Inspection)가 제시된다. 교육표준국(Ofsted)은 보건부와 영유아정책의 권고와 규정사항을 영유아 교육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 평가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원을 연계한다(Ofsted, 2008).

교육표준국(Ofsted)는 2001년에 지방정부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영유아기의 서비스 평가기준을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였다. 교육표준국(Ofsted)는 2006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0-5세 모든 영유아를 위해 새롭게 통합되어 단일화된 ‘영유아기 기초단계를 위한 보육지침(Practice Guidance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을 근간으로 하여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국(Ofsted)에 등록된 모든 보육과 유아교육 기관이 이 지침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교육표준국(Ofsted)은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기관이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부모들에게 기관의 질에 관한 정보 즉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부모가 그 결과 정보를 보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영숙·김명순·황옥경, 2010: 124). 교육표준국(Ofsted)의 평가요소는 모두 14개 영역으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인력, 운영, 학습과 놀이 및 보호, 물리적 환경, 설비, 안전, 급간식, 동등한 기회, 특수한 요구, 행동, 가정과

의 연계, 아동보호, 문서화이다. 14개 평가영역은 영유아의 권리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 수준을 교육표준국이 평가하고 있다.

(2) 국가 수준의 보육 및 교육과정

영국은 초등교과부터 Key Stage를 수준별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정을 Early Foundation Stage로 지칭하고 있다. Early Foundation Stage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Early Foundation Stage는 개별적인 아동(A Unique Child), 긍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hips), 지지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s), 배움과 학습(Learning and Development)의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과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arly Foundation Stage의 4개 주제는 <표 II-2-13>과 같다.

<표 II-2-13> 영국 Early Foundation Stage의 주제와 내용

개별적인 아동 (A Unique Child)	긍정적인 관계 (Positive Relationships)	지지적인 환경 (Enabling Environments)	배움과 학습 (Learning and Development)
아동 발달	다른 사람 존중하기	관찰, 평가, 계획	놀이와 탐험
개별적 서비스	파트너로서의 부모	모든 아동의 지원	적극적인 학습
안전하기	배움을 지원하기	학습환경	창의성과 논리적·비판적 사고
건강과 복지	주교사의 배정	관련 기관과의 연계	6개 배움/발달 영역

영국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사회적·정서적 발달, 의사소통·언어와 문해, 문제 해결력·추론·수리력,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 신체 발달, 창의성 발달 6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영국의 보육 및 교육과정은 4개의 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각 주제별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배움과 학습(Learning and Development)에서 창의성과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물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도록 도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arly Foundation Stage는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 운영 및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개별적 아동(A Unique Child)을 실천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각각의 영유아를 개별적인 아동으로 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직

면하게 되는 도전과 갈등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사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모든 아동은 고유한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특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영국 영유아들은 각 영역별 교과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의 개념을 익히게 되며, 특히 세계에 대한 지식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속성과 차이를 이해하여 공동체를 누리고 개인 간 차별을 해소하는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돕는다.

#### 라) 윤리강령

영국은 영유아 교사에 대한 윤리강령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혹은 육아지원 기관별로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을 개발, 시행하며 단계별로 지원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영국 영유아마사지협회(The Guild Infant and Child Massage)는 종사자 윤리강령을 14가지 항목으로 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영유아스포츠클럽의 종사자 윤리강령이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표 II-2-14> 영국 중서부 건강국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기는 안전, 안정, 존중, 이해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li> <li>2. 영유아의 권리, 참여,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해준다.</li> <li>3. 위기에 처한 영유아에게 이를 배려한 전문적인 보육을 제공해 준다.</li> <li>4. 보육경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 영유아를 참여시킨다.</li> <li>5.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고, 비판해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해 준다.</li> <li>5. 보육종사자와 영유아의 권리를 증진시킴으로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li> <li>6. 보다 전문적이고 질이 높은 보육을 위해 영유아, 동료, 그 외 전문가들과 협조한다.</li> <li>8. 개별 영유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성과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li> <li>9. 가족이 없거나 위기에 처한 영유아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10. 가족이 없거나 위기에 처한 영유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도록 주창한다.</li> <li>11. 보육기관의 질을 규칙적으로 점검한다.</li> <li>12. 종사자 회의, 슈퍼비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킨다.</li> </ol> |
|--|

영국 중서부건강국(Mid-Western, Health Bpard)의 영유아 교사 윤리강령은 <표 II-2-14>에 제시되었다(이완정, 2005: 806). 이에 따르면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2항에서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언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영유아의 잠재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명시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권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기 가족의 영유아의 발달과 보호, 생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 호주 사례

호주 정부는 아동에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위해 더 많은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의 양적 확충 및 현직 교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09년 국가차원의 유아교육 및 고용 인력 전략(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3년까지 호주 전역의 모든 아동이 학령 전(Preschool or Kindergarten) 한 해 동안 유아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취학 직전 해에 주 15시간, 연 40주 4년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 및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을 포함한 준비된 환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영숙 외, 2010: 123). 이는 호주 정부 최초로 영유아 교육에 관한 대규모 투자로 생후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표명된 것이다(임양미·송정·황옥경, 2011: 120).

### 가) 관련법 및 정책

호주의 Child Care Service Act 2007은 영유아 보육과정에서 제1부의5항과 6항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는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위험과 사적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가받은 기관에 의한 보육 및 유아교육이 아동의 창의성과 정서적·지적·언어적·신체적 발달을 도

모하고 여가와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 발달, 보호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호주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은 아동권리 보호의 맥락에서 계획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는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영유아의 권리를 실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호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보육시설 질 향상과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위생관리 기준을 평가인증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sup>5)</sup>. 1993년 설립된 국가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는 아동청년부장관(The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이 임명하고, 서비스 인증내용과 인증기간을 규정한다. 국가보육인증위원회는 종일보육시설에 대해 질 향상 인증시스템(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QIAS)<sup>6)</sup>을 집행한다. QIAS는 연방정부 사업으로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기금'의 지원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 QIAS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인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sup>7)</sup>

호주는 보육시설의 수준 및 질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주 단위의 많은 기관들이 있다. 호주의 서부에서는 보육 수준이 영유아들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아동보호서비스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Queensland에서는 보육시설이 가정 청소년, 지역사회관리부(Department of Family, Youth and Community Care)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의 종일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평가지표 중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를 명시한 항목은 <표 II-2-15>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사가 각 영유아의 배경과 능력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는 모든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적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5) NCAC 웹사이트 <http://www.ncac.gov.au> 참조.

6) [http://www.ncac.gov.au/qias\\_translation/qias\\_handbook\\_korean.pdf](http://www.ncac.gov.au/qias_translation/qias_handbook_korean.pdf) 참조.

7) 전체 문서는 [http://www.ncac.gov.au/qias\\_publications/qias\\_sourcebook\\_english.pdf](http://www.ncac.gov.au/qias_publications/qias_sourcebook_english.pdf) 참조.



&lt;표 II-2-15&gt; 종일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중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 지표

영역	원칙
교사가 영유아 및 동료교사와 갖는 관계	1.1 교사는 각 영유아와 다정하고 친절하게 상호 교류한다. 1.2 교사는 각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한다. 1.3 교사는 각 영유아와 예의 바르게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1.4 교사는 각 영유아의 배경과 능력을 존중한다. 1.5 교사는 모든 영유아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1.6 교사는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킨다.

#### 나) 윤리강령

호주의 보육교사 윤리강령은 국립 호주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종사자 협회(The National Working Party of the Early Childhood Australia)에 의해 개발되었다. 호주의 보육교사 윤리강령의 구성은 모두 4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유아 윤리 14개 항목, 가족에 대한 윤리 10개 항목, 동료에 대한 윤리 7개 항목, 공동체 및 사회에 대한 윤리 6개 항목, 전문가로서 내 자신에 대한 윤리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호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협회(The Australian Early Childhood Association)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윤리강령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영유아기는 발달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힘이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육종사자의 도덕적 자기 무장이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교사들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가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료들과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이완정, 2005: 794).

호주 AECA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는 <표 II-2-16>과 같다(이완정, 2005: 804). 윤리강령의 내용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으며, 모든 아동의 고유한 독특성을 강조하는 협약의 내용과 더불어 발달권을 강조하는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 또한 영유아의 참여권을 신장을 위한 제14항 “영유아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 육아지원 기관에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제11항의 성, 연령, 인종, 종교, 언어, 능력, 문화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다. 제6항의 영유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과정에서 영유아 이익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표 II-2-16> 호주 AECA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

1. 개별 영유아의 독특성과 잠재성을 이해한다.
2. 영유아기는 생애의 매우 고유하고 귀중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고유의 권리가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한다.
3.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발달해 간다는 점을 알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존중한다.
4. 개별아동의 장점, 역량, 자아 존중감을 키워준다.
5. 영유아의 개별 관심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6. 어린 영유아기는 취약한 시기임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영유아의 자율성, 주도성, 자존감, 존엄성을 키워주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8.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 요구, 감정을 타인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영유아기 발달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무 능력을 키운다.
10. 영유아와 가족의 특별한 관계를 존중하고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이를 존중한다.
11. 영유아가 성, 연령, 인종, 종교, 언어, 능력, 문화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준다.
12.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그 가치를 가르쳐 준다 .
13. 영유아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에 처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 준다.
14. 영유아의 생각을 반영시켜 준다.

### 3) 일본 사례

일본의 보육은 보육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므로 아동 관련 시설의 아동보호를 주로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보육인력의 양성, 자격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가) 관련법 제도

일본의 보육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은 아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출생하고 또한 육성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아동은 한결같이 생활이 보장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

법 제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동시에 아동을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책임을 갖는다고 적시하였다.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나) 교육 및 보육과정

일본 보육과정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는 '유아를 보육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당한 환경을 주어 그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최우선의 목표로 진술하고 있다. 일본의 보육 및 교육과정의 목표는 앞서 제시된 영국과는 달리 영유아 개인의 발달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개별성과 독특성 그리고 영유아의 복지에 방점을 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보육과정 내용을 보면 건강, 인간관계, 표현, 언어, 환경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관련 내용이 중시된다. 일본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편성 방식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물리적 환경 구성, 균형적인 일과 구성, 영유아의 흥미에 기초한 놀이, 다양한 상호작용, 영유아의 흥미와 개별성 등을 중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활동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양옥승·신은미, 2011: 313).

### 3. 선행연구

기존의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고 그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며, 관련 지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크리 다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연구 대상은 주로 청소년 등 아동 전반을 포괄하거나 취약 아동 위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영유아 권리 실태 연구와 영유아 권리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 지표의 개발,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증대에 따른 이용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연구가 고조되는 추세이다(황옥경, 2011;

지성애, 2011 등).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교사 및 학부모의 아동권리 및 권리교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수준을 조사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서영숙·서혜정·김진숙, 2009; 김진숙, 2009 등). 아동권리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교사대상 권리교육의 효과(김진숙·서영숙·서혜정, 2010), 아동권리 권리교육 실태와 제언 등이 제시되었다(황옥경, 2011).

여기서는 1) 아동권리 실태와 지표 개발 2) 영유아 보육·교육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3)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4) 아동권리교육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아동권리 실태 및 지표 개발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의 노력으로는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을 시도한 문용린·문미희·강윤정(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인권교육이 실시하려면 피교육자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진단도구를 각각 제작하였다. 그는 인권감수성을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인권감수성의 구성 요소를 크게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으로 나누어 모형화 하였다. 인권감수성 진단을 위해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고하여 인권 내용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인권내용 중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로서 논란이 된 바 있거나 연령별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였다.

아동권리 지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권리 지표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닌다고 밝히고, 아동권리 지표 분야를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의 8개로 구성한 후, 각 분야별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이들 지표를 시범 적용하여 지표별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정책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관련 연구결과로는 생존 및 건강 분야에서 안전사고로부터의 아동 보호 및 안전교육 강화,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취학 전 기회의 확대와 안전 등이 제시되

있고, 이외에도 아동 연령별 통계자료의 생산, 기존 사회통계 생산 시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포괄, 가족관련 통계 생산 시 아동권리 관련 사항 포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는데(이용교·이명묵·안경순 외, 2006),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권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별로 인권평가지표를 각각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영역별 5개의 대분류, 24개 중분류로 구분한 인권평가지표(안)을 고안하였다. 생존권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보건, 안전 등 5개,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 입소 시의 준비, 시설에서 아동 보호, 체벌과 문제 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 증진,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등 6개,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권리 등 3개, 참여권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금전에 대한 통제권, 시설 운영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5개, 아동 권리 보장체계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 옹호 지침과 불만 처리, 인권교육, 직원의 권리상황, 투명한 시설 운영 등 5개로 분류하였다. 이들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상당히 보장되나, 참여권은 다소 낮은 수준이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권리 보장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마련된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 측정 척도이자 서비스 기준, 시설 아동의 인권 모니터링 지표, 아동복지시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권리지수 개발이 시도된 바 있다(이혜연·김영지·김신영, 2009). 이 연구는 먼저 아동·청소년 권리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권리 지표와 지수의 개념과 기능을 제시한 후,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지표 및 핵심 지표 개발에 적용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각 권리 영역별로 세부 항목과 지표 항목을 제시하였다. 권리 영역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 생존권은 출생, 사망, 신체적 발달권은 빈곤, 건강, 안전, 질적 생존권은 가족(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보장(아동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요보호 아동 발생 수 및 보호 유형), 2) 보호권은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 응급 상황으로부터의 보호(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인원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3) 발달권은 인지적 발달 기회와 인지능력(각 학교별 취학율, 문제해결능력 지수 등), 정서적 발달 기회와 정서발달 정도(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청소년 우울증 지수 등), 사회성 발달, 직업적 발달(직업적 특성 이해, 진로 준비 행동 등), 신체적 발달 (운동 실천율, 아동청소년 평균체중 등), 참여권은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두발관련 재개정 학교 사례 수 등), 결사 집회의 자유, 정보 접근권(학교별 컴퓨터 보유 현황), 사회참여 및 참정권(자원 봉사활동 참여율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영유아 권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표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권리 영역별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을 포괄하고, 육아지원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각 권리 영역별 주요 영역과 각 영역에 속하는 세부 항목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나. 영유아 보육·교육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박윤창, 이영환, 이용교, 임재택은 아동권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영유아 보육·교육에서 아동의 보호, 발달, 생존, 참여권 실태와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 권리 영역별 영유아 권리 내용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우선 박윤창(2003)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호권 차원에서 신체적 발달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에서 질병과 안전사고, 영양 결핍으로부터의 보호,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보호받기 위한 보육시설에 다양한 교재교구 구비, 아동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이 강조된다. 나아가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시행과 이에 대한 감독,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자질 향상, 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발달권을 연구한 이영환(2003)에 의하면, 보육시설 초기 적응,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 보육의 실내외 환경, 보육시설 일과 제

획 등에서의 영유아 권리를 규명하고, 영유아 교육의 문제점으로 조기 과잉교육, 과도한 특별활동, 영어교육 차원에서 지적한 후, 조기교육이 아닌 적기교육, 아동중심적 영어교육 방법의 모색을 제안하고,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발달적 보육이라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이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용교(2003, 2004)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의 참여권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관 및 시설에서의 참여권을 보육/교육시설 선택에서의 참여권과 보육/교육과정 선택에서의 참여권, 일상생활을 정할 때 참여권, 급간식을 정할 때 참여권, 특별활동 시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여권 증진 방안으로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일상생활 규칙을 원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고 준수함, 간식급식에 대한 주기적인 요구 조사, 특별행사의 전 과정에 아동의 참여, 원생 회의와 부모 회의를 통한 참여의 제도화,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에 의한 아동권리교육은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권리 내용을 해석하고, 장난감 놀이, 역할놀이, 게임,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유아에게 권리를 가르치는 기법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전반에 대한 연구로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자료집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아권리 존중 보육의 중요성과 특징, 유아권리 주체 교육, 유아권리 존중 보육 환경 및 보육 일과 등과 보육교사의 유아권리 존중 보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 감수성 향상 및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보육활동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론적 논의로는 영유아 권리이행에 대한 일반논평을 분석하여 영유아 권리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교육방향을 제시한 황옥경(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주목하여 기존의 아동권리 연구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네 가지 권리를 상호의존적인 시각에서 연계하지 않고 상호배타적으로 연구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경우 권리 개념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영유아의 권리 이행'

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영유아가 아동권리의 시발점으로서 주된 권리는 유아 발달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과 건강한 생활, 심리사회적 복지, 유아에 대한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존중,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부모 등과 함께 관련된 비차별, 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아의 이익과 바람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화와의 조화, 보육 및 유아교육 상황에서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 연령에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지나친 특별활동 등에 대해 경고하고, 부모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성애(2011)는 보육센터장,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영유아 권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는 영유아 권리의 실현을 공보육과 5세 통합 의무교육 기반 마련,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시설·설비와 건강·안전·영양 확보, 이외에도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행 보육시설 규모에 따른 평가인증지표 이외에도 대상연령별로 구분된 지침을 마련하고 영유아 권리에 민감한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영유아기는 전 생애의 발달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권리 실현에서도 결정적인 시기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 영유아의 자율성 인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참여권이 특히 강조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영유아 권리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 권리 영역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각 권리 영역별로 보다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다.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국가인권위원회(2006)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모 이외에도 교사들이 영유아와 더불어 영유아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영유아의 특징을 고려하면 기관 및 시설보육 아동의 경우 교사는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영유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권리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 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권리인식과 실천 그리고 교사 대상 권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에 대한 연구(김진숙, 200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지내기 때문에 영유아가 권리 주체로서 주도적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경우는 영유아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서 나아가 존중받아야 할 주체라고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영유아 존중 보육으로 인식하여 보육현장 여건에 따라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행에서 딜레마를 겪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행수준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들의 경력과 연령,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행수준이 높고, 이외에도 아동학 전공자, 국공립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실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 연구로는 서영숙 외(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보육교사 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육교사들의 유아 권리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4년제 대졸 교사로서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의 유아권리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유아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유아권리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를 자료 및 프로그램 부족, 교육방법론의 부족으로 보았으며, 지침서와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교재 교구를 요구하였다, 넷째 보육교사는 유아권리

교육 연수 참여 의지가 높았으며, 연수 기관으로 국가기관과 대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김진숙 외, 2010)가 시도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 후,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동권리교육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신지현과 김정화(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 설문지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들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에 관한 내용보다는 생존이나 보호 양육에 해당되는 권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아동권리 인지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아동 발달 시기에 맞는 아동권리교육과 부모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육아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영유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인식과 실행수준은 영유아 권리 실태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각 권리 차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실태 파악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부모들의 권리 인식도 영유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라. 아동권리교육 관련 연구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과 기관 및 시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구분된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므로 이에 대해 스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교사들이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목표 및

교과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개발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6).

우선 유아권리교육과 관련하여 서정은(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유아들의 권리교육에 거의 최초로 주목하여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적용 시 유아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 내용에 근거하여 만 5세 유아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선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유아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구성된 활동으로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 그리기, 게임 등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방식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관찰 연구 결과, 유아는 성, 인종, 외모, 연령,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유아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하지만, 유아를 성인과 유사한 가치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는 가족과 사회의 사랑과 보호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의식주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많은 유아 수와 좁은 공간, 그리고 시간적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험학습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김숙자와 김현정(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인권교육과 유아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은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 또한 존중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육과 기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내용을 학습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경험과 관찰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인지적 교육을 넘어 정서적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경험학습이론이 유아인권 교육과 연관성을 지니며, 인권교육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참여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황옥경(2010)은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권리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차원으로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교육 대상,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는 아동관련 전문종사자를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민간 차원의 경우 세이브더칠드런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 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현행 아동권리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아동권리교육이 실시 기관마다 제각기 다르고 민간기관의 경우 독자적으로 실행됨으로써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방침상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둘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미약하여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권리 교육 교재를 발간한 것이 유일하며, 그나마 이 교재의 보급과 교육 실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아동권리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교재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아동권리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학교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제도화, 아동권리교육 모델 제시, 교육기간 확대와 심화교육과정 마련, 아동권리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내용 다양화, 문제중심형 아동권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보급의 활성화, 개발된 교수 매체의 효과 규명을 통한 효율적 매체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육아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중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여 향후 아동권리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Ⅲ.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강 및 영양관리, 청결한 위생관리, 안전보호(학대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개별성을 고려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육·교육활동 시에 영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을 1) 생존·보호권 2) 발달권 3)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리 영역별 세부 평가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유아 권리 영역별 실태 평가의 주요 차원과 세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평가지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지표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영유아 권리 보장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는 6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영역 1은 보육환경, 영역 2는 운영관리, 영역 3은 보육과정, 영역 4는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는 건강과 영양, 영역 6은 안전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권리 영역으로는 1) 안전 2) 건강과 영양 3) 보육과정 4) 상호작용 영역이다. 각 영역별 활용 항목은 <표 III-0-1>과 같다.

<표 III-0-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중 영유아 권리 실태 평가에의 활용

평가영역		항목	해당 권리 영역
안전	시설 안전관리	-보육실의 안전관리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생존· 보호권

(표 III-0-1 계속)

평가영역		항목	해당 권리 영역
안전	안전보호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비상사태 대비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생존·보호권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실내 공간의 청결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놀잇감의 청결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 유지 -개별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영유아를 위한 급식 -영유아를 위한 간식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계획안의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실외활동시간과 운영 -일과의 통합적 운영 -일상생활 관련 활동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발달권
	보육활동	-영역별(기본생활 등)활동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참여권
	교사의 상호작용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자료: 보건복지부(2011c). 2011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재구성.

다음으로 유치원 평가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도부터 유치원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007년 제1주기 유치원 평가지표는 4개 영역, 15개 지표, 29개 요소로 구성되며, 이에 근거하여 유치원 시범평가 및 1주기(2008년~2010년) 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2011년에 새롭게 마련된 제2주기(2011~2013년) 유치원 평가지표는 제1주기와 마찬가지로 4개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9개 항목, 15개 지표, 47개 요소로 유사 및 중복 지표를 통폐합하고 특히 권장 지표였던 종일반 지표를 기본 지표로 추가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권리 영역으로 포괄하는 부문은 1) 건강 및 안전 2) 교육과정 및 종일반 운영 영역이다. 각 영역별 활용항목은 <표 III-0-2> 와 같다.

<표 III-0-2> 유치원 평가지표 중 영유아 권리 실태 평가에의 활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해당 권리 영역
교육과정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	-교육목표 설정의 타당성 -교육계획안 작성 및 활용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 활동 선정	참여권
	교육활동 및 평가의 실시·활용	-통합적·균형적 일과 운영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및 상호작용 -교육평가 실시, 유아발달기록 및 활용	
건강 및 안전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유아 건강지도 및 관리 가정과의 정보 공유 -시설·설비의 청결한 관리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사용	생존·보호권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안전교육 실시 -사고발생대비 보험가입 및 대책마련 -실내외 시설·설비 안전 관리	생존·보호권
운영관리	종일반 운영	-종일제 시설·설비 -전담교사 배치 등	발달권

자료: 장명림(2011). 제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영역 및 항목들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주요 원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존·보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와 가능한 아동의 생존

과 안전한 보호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9조, 20조, 23조, 25조, 34조).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생존·보호권은 건강 영양 관리, 안전보호, 아동학대 예방이 핵심적인 차원을 이룬다.

## 가. 건강 및 영양관리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영유아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려면 실내외 공간과 각종 기구들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1) 청결과 위생관리

#### 가) 실내 및 서비스 공간과 놀잇감의 청결

실내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을 매일 청소하며,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은 진드기나 세균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자주 세척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과 세면장은 빈번하게 물을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발생하여 세균 번식을 일으켜 영유아의 건강에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조리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 및 환기가 매일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실내 및 서비스 공간과 놀잇감 청결 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어린이집 실내 및 서비스공간과 놀잇감의 청결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보육실, 공유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2	모든 실내 공간을 자주 소독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2개월에 1회 이상)
3	매일 청소상태, 소독과 대청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있다
4	플라스틱 블록, 인형, 소꿉놀이 도구 등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5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	조리실 바닥, 벽, 천장 등 청결관리 및 환기를 매일 잘 유지하고 있다



나) 개별 침구 등의 사용과 관리

영아를 위한 기저귀를 가는 공간은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침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서로 전염성 균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는 각기 자신의 베개 및 이불(개별 침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유아의 땀, 침 등 분비물, 대소변 등으로 침구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개별 침구 및 요 등은 주 1회 이상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개별 침구사용과 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어린이집 개별 침구 사용과 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개별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있다(주 1회 이상)
2	귀저귀 가는 공간이 있다
3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다) 식자재 등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식자재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사용하며,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식품구입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식자재 위생적 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어린이집 식자재 위생 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모든 식자재는 소비기한, 식품구입 날짜를 표기하고 있다

2) 건강관리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들은 각종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사용 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놀이 이후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영유아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또한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있다
2	모든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	건강검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다
4	영유아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개인용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 유아를 대상으로 일과 중 활동을 통해 청결·위생지도 등 건강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구강청결 교육·식중독 예방교육·전염병 예방교육 등 질병 예방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실시한 유아건강점검 결과를 파악하고 있거나 개별 유아의 특이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해야 한다. 실내 놀이기구 및 놀잇감, 각종 비품(책·겉상, 카펫트/ 깔개, 침구 등),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정수기, 컵, 칫솔 소독기 등의 유치원 실내외 시설·설비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실내 방역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유치원 건강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 및 위생지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예: 전염병·질병관리정보 가정에 알리고, 개별유아의 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3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방역을 실시한다
4	비갈놀이 시설·설비를 청결히 관리하며 모래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5	조리실 식기 조리도구는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3) 영양관리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성장기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급간식 계획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회 조리되어 배식된 음식이 남을 경우,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식도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한 일과로 다뤄져야 한다. 간식은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되어야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양관리 평가 항목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어린이집 영양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간식은 오전·오후 나누어 2회 제공하고 있다
2	배식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있다
3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가 건강과 영양의 관계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및 교육을 통해 기본지식을 형성하며, 식습관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설비 및 식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식재료의 신선도와 질 확보를 위한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영양 균형을 유지한 급식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2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튀김음식, 과자·사탕류의 제공을 피한다
3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 나. 안전관리 및 보호

### 1) 안전관리

유아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인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외 제반 시설·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유아 및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 갖추어진 안전 설비와 비상시 대처 방안, 종사자의 대처 능력은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 요인이 없어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먼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보육실 내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있어야 한다.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하고, 교구장에는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외시설은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외 놀잇감은 위험 요인이 없어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놀잇감을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도록 안전한 것으로 구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외 놀잇감에 맞게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보육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귀가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유아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

구분	
1	창문보호대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	전기콘센트에 안전 덮개가 덮여 있다
3	책상, 의자 등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다
4	모든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5	무거운 물건은 수납장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다
6	어린이집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7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인공잔디, 고무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했다
8	놀잇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다
9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0	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구성하였다
11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을 문서화하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12	모든 영유아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았다
13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유치원의 경우

실내외 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계획 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담과 책임 이행에 대한 안전점검 조직 구성, 시설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명문화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행 후 안전 담당자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개선된 사항은 즉시 수정·기록하여 연말에 유치원 내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에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2항)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sup>8)</sup>을 실시하여 안전한

8) 2011년 유치원 평가지표에 의하면, 기본적인 안전교육 내용 및 최소 교육 시간은, 교직원 대상으로는 주기적 안전교육으로 교원, 통원버스 운전자, 통원버스 탑승자 등에 관한 내용을, 유아 대상으로는 재난 대비·대피요령 교육(분기별 1회 이상, 연 6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2개월에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유아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 교직원·유아·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독성 물질·구급상자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사고발생 시 안전사고 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유치원 안전관리 평가 항목

구분	
1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예: 교통안전, 놀이시설안전, 아동학대 등)
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예: 안전관리 지도법, 응급처치법, 아동학대 및 유괴 등)
3	유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가정에 공지하고 있다
4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부모 비상연락처, 각종 응급처치 약품 구비, 구급요법에 관한 안내책자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5	실내의 시설 및 설비점검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 아동학대 예방

학대를 인권침해의 중요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의 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들이 현재 및 미래의 삶에 하고자 하는 바 (적극적 자유권)의 전제가 되는 정서적 발달과 성장에 위해함은 물론 보호와 발달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데 있다(박윤창, 2003: 37)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해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에서는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물론 정서적 학대 즉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영유아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

1회 이상, 연 12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6개월 1회 이상, 6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교육(3개월 1회 이상, 연 10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3개월에 1회 이상, 연 1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나 모욕하는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격취득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아동학대 예방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1-10>과 같다.

<표 III-1-10> 아동학대 예방 수준 평가 항목(어린이집/유치원)

구분	
1	영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살핀다
2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평소와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3	영유아의 신체에 멍 자국 등이 있을 때 영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4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5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6	보육교직원·유치원 교사가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7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8	보육교직원·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
9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
10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대응 방법(즉시 신고, 부모 확인 등)

## 2. 발달권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은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다. 또한 보육·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유아의 발달권 실현에 잘 부합하는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수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 가. 어린이집의 경우

#### 1) 보육활동 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서 가장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 요구, 학습속도, 기질, 능력, 참여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보육계획안을 수

립할 때는 영유아들의 발달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일과 중에 영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대·소집단 활동, 실외 활동, 전이활동 등 하루 일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활동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육일과 중에서는 반드시 실외활동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전 또는 오후 일과에 매일 1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보육활동 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은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어린이집 보육활동 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

구 분	
1	보육활동 계획 시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다
2	일과 중 실내/실외, 대근육/소근육, 개별/소집단/대집단, 정적·동적 활동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일과 중 실외활동을 1시간 이상 하고 있다(영아 경우 30분정도)
4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 및 영역이 영유아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5	영유아 자신과 가족, 또래,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 기회를 월 2회 이상 제공한다

## 2) 보육활동 내용

보육과정에는 개별 영유아나 집단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춰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할 뿐 아니라, 계획된 것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과 이러한 평가 내용을 다음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하는 것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가 어떤 보육활동을 경험하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어린이집 보육활동 내용 평가 항목과 표준보육과정 이해 및 적용에 관한 평가 항목은 <표 III-2-2>, <표 III-2-3>과 같다.

<표 III-2-2> 보육활동 내용 평가 항목

구 분	
1	정기적으로 보육활동을 평가하고, 개별 영유아 관찰이 이뤄진다
2	시행중인 특별활동 과목 수(특별활동의 예: 영어, 체육, 한자, 수영, 과학 등)



<표 III-2-3> 표준보육과정 이해 및 적용 평가 항목

구 분	
1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다
2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읽어본적이 있다
4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령집단별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7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8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9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 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10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나. 유치원의 경우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교육계획 수립 시 유치원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생활주제를 선정하고,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 및 활동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연중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계열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편성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은 <표 III-2-4>과 같다.

<표 III-2-4> 유치원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

구분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2	교육목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뿐 아니라 유아·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4	교육내용·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5	일일 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시간대별 활동, 목표, 준비물, 방법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교육과정 생활주제별, 유아 발달 영역별 통합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4 계속)

7	일과 중 자유활동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다(하루일과의 1/3~1/4시간 정도, 5시간 이상은 1/5)
8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이 1일 30~40분 이상, 주 3일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9	실내외 대소근육 개별/대소집단 장 동적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활동양이 유아에 적절하다
10	교육내용·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자료·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11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12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1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일과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14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15	개별 유아의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점검하고 활용한다

## 2) 교육활동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유아의 경험, 흥미 및 요구와 교육 내용을 통합하고, 유아와 유아 주변의 인적·물적 환경을 통합하며, 교육과정 영역들을 놀이중심으로 통합·재조직하여 균형적인 일과로 운영해야 한다. 유아는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나 흥미의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매체의 사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교사는 발문을 통해 유아의 사고 확장을 돕고, 유아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의 발달과 변화를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에 관한 평가 항목은 <표 III-2-5>과 같다.

&lt;표 III-2-5&gt;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 평가 항목

구분	
1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다
2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3	2007년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지도자료집을 읽어본 적이 있다
4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목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7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8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3) 종일반 운영

취업모가 늘어남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종일반 운영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종일제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 유치원의 실정, 유아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 대상 연령과 운영 형태 등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해야 한다.

종일반 프로그램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며, 이 때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유아들에게 부족한 경험을 보충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종일제를 운영할 때 종일제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종일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에 적절한 기본 시설 및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 평가 항목은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유치원 종일반 운영 평가 항목

구분	
1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3	종일반 프로그램은 오전 교육활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외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제공한다
5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가 있다

### 3.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13조, 17조, 18조)에 의하면,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와 이를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면, 당사국은 유아에게 모든 관련 환경들에서의 일상의 활동에서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모, 전문가 및 책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일반논평 14).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시에 영유아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기본생활에 관련된 행동은 한 번 형성되면, 형성된 것을 다시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도록 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사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때 교사들이 주로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영유아들이 수동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관련 상황을 활용하여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영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 음악, 몸, 움직임, 춤, 만들기와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 이때 교사의 지시나 다른 친구의 반응에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과정을 즐기도록 격려하며, 영유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반응이나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해보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영유아기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다른 사람의 역할 등을 상상해보면서 사회적 지식을 재구성하고, 사회 내 다양한 역할을 연습한다. 영유아의 역할놀이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쉽게 상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해주고, 기회를 자주 제공하며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과정은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보육·교육내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흥미영역 활동 시에 반드시 영유아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들은 스스로 보육활동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5> 바람직한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므로 즐겁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유아의 식습관과 자율성을 기르도록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유아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6>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흥미, 질문에 대해 누군가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준다면, 영유아는 더 많은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개발하여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7>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 지도 시,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필요할 때 대안 제시 등의 긍정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며, 영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한다.

<8> 영유아끼리 다투거나 문제가 생길 때, 교사는 영유아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줄기보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영유아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이를 신중하게 듣도록 한다.

<9> 영유아가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상황을 판단하여 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하기보다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한다.

<10> 영유아가 자신이 진행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스스로 탐색하며, 자발적으로 탐구하고자 몰입하고 시도하는 과정은 영유아에게 학습과 놀이에 대한 즐거움과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이나 놀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계속 유발하며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권 보장 수준 평가 항목은 <표 III-3-1> 과 같다.

<표 III-3-1> 참여권 보장 수준 평가 항목(어린이집/유치원)

	구분
1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2	음악,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영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3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	여러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뤄진다
5	급간식 시 영유아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6	영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7	영유아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8	교사는 영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한다
9	영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일과 중 영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4. 종합: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의 평가 영역 및 세부 항목

지금까지 살펴본 권리 영역별 평가영역과 세부 항목을 체계화하면 <표 III-4-1>과 같다. 즉 실태 파악을 위한 권리 영역은 크게 생명·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고, 이들 각 권리 영역별 하위 차원으로는 1) 생명·보호권의 경우 건강 및 영양관리, 안전보호 및 관리, 이동학대 예방, 2) 발달권은 보육·교육 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3) 참여권은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하도록 보육·교육일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4-1> 영유아 권리 영역별 실태 평가체계

생존·보호권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건강과 영양관리	청결과 위생관리	실내 및 서비스 공간과 놀잇감의 청결		1. 보육실, 공유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2. 모든 실내 공간을 자주 소독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2개월에 1회 이상)	
				3. 매일 청소상태, 소독과 대청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개별 침구 사용과 관리			4. 플라스틱 블록, 인형, 소꿉놀이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5.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 조리실바닥, 벽, 천장 등 청결관리 및 환기를 매일 잘 유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식자재 위생적 관리			1. 개별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있다(주 1회 이상)	
				2. 귀저귀 가는 공간이 있다	
				3.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관리	어린이집			1. 모든 식자재는 소비기한, 식품구입 날짜를 표기하고 있다	
				2. 간식은 오전·오후 나누어 2회 제공하고 있다	
				1.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있다	
건강관리	유치원			2. 모든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 건강검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다	
				4. 영유아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	
건강관리	유치원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과 위생지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예: 전염병·질병관리 정보를 가정에 알리고, 개별 유아의 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표 III-4-1 계속)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건강과 영양관리	건강관리	유치원 3.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방역을 실시한다 4. 바깥놀이 시설·설비를 청결히 관리하며 모래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5. 조리실 식기, 조리도구는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양관리	어린이집 1. 간식은 오전·오후 나누어 2회 제공하고 있다 2. 배식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있다 3.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 1. 영양 균형을 유지한 급식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2.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튀김음식, 과자·사탕류의 제공을 피한다 3.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 및 보호	어린이집	1. 창문보호대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 전기콘센트에 안전 덮개가 덮여 있다 3. 책상, 의자 등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다 4. 모든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5. 무거운 물건은 수납장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다 6. 어린이집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7.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인공잔디, 고무매트 등이 안전하게 설치했다 8. 놀잇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다 9.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0. 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구성하였다 11.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을 문서화하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12. 모든 영유아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았다 13.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1.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예: 교통안전, 놀이시설안전, 아동학대 등) 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예: 안전관리 지도법, 응급처치법, 아동학대 및 유괴 등) 3. 유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가정에 공지하고 있다 4.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부모 비상연락처, 각종 응급처치 약품 구비, 구급요법에 관한 안내책자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5. 실내외 시설 및 설비점검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표 III-4-1 계속)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아 동 학 대 예 방	어린이집 /유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li> <li>2.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평소와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본다</li> <li>3. 영유아의 신체에 멍 자국 등이 있을 때 영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li> <li>4.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li> <li>5.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li> <li>6. 보육교직원·유치원교사가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li> <li>7.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li> <li>8. 보육교직원·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li> <li>9.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항을 잘 알고 있다</li> <li>10.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대응 방법(즉시신고, 부모 확인 등)을 잘 알고 있다</li> </ol>
		<b>발달권</b>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보 육 / 교 육 과 정	보육활동 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동계획 시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다</li> <li>2. 일과 중 실내/실외, 대근육·소근육, 개별/소집단/대집단, 정적·동적 활동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li> <li>3. 일과 중 실외활동을 1시간 이상 하고 있다(영아 경우 30분 정도)</li> <li>4.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 및 영역이 영유아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li> <li>5. 영유아 자신과 가족, 또래,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기회를 월 2회 이상 제공한다</li> </ol>
	보육활동 내용	<p>&lt;어린이집 보육·교육활동 내용 평가 항목&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으로 보육활동을 평가하고, 개별 영유아 관찰이 이뤄진다</li> <li>2. 시행 중인 특별활동 과목 수(특별활동의 예: 영어, 체육, 한자, 수영, 과학 등)</li> </ol> <p>&lt;표준보육과정 이해 및 적용에 관한 평가 항목&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다</li> <li>2.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li> <li>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을 읽어본 적이 있다</li> <li>4.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li> <li>5.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li> </ol>



(표 III-4-1 계속)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보육 / 교육 과정	보육활동 내용	어린이집	6.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령 집단별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7.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 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8.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9.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 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10.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유치원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평가 항목>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2. 교육목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뿐 아니라 유아·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4. 교육내용·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5. 일일 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 시간대별 활동, 목표, 준비물, 방법,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교육과정 생활주제별, 유아 발달 영역별 통합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7. 일과 중 자유활동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다(하루일과의 1/3~1/4시간 정도, 5시간 이상은 1/5) 8.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이 1일 30~40분 이상, 주 3일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9. 실내·외, 대·소근육, 개별/대·소집단, 정·동적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활동양이 유아에 적절하다 10. 교육내용·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자료·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11.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12.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 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1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일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14.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 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15. 개별 유아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점검하고 활용한다

(표 III-4-1 계속)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보육 / 교육 과정	교육활동 내용	유치원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에 관한 평가 항목> 1.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다 2.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3.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지도 자료집을 읽어본 적이 있다 4.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목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7.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8.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 1.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3. 종일반 프로그램은 오전 교육활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외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제공한다 5.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가 있다
<b>참여권</b>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일과시	어린이집 /유치원	1.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2. 음악,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영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3.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 여러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뤄진다 5. 급간식 시 영유아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6. 영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7. 영유아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8. 교사는 영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한다

(표 III-4-1 계속)

평가영역/대상		세부 항목
일 과 시	어린이집 /유치원	9. 영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일과 중 영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IV.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실태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생존·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설문문항을 평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규명하였다.

### 1. 생존·보호권

#### 가. 건강·영양관리

##### 1) 어린이집

###### 가) 위생·청결관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위생·청결관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저귀 가는 공간과 개별침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87.6%, 97.9%로 대체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기저귀 가는 공간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아 비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저귀 가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기저귀 가는 공간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IV-1-1> 어린이집 위생·청결관리 수준-원장

항목	시설유형	단위: %(명)			$\chi^2$ (df)
		있음	없음	계	
기저귀 가는 공간 이 있다	전체	87.6	12.4	100.0(1,033)	19.48(3) <sup>***</sup>
	국공립/법인	89.8	10.2	100.0( 374)	
	민간	82.7	17.3	100.0( 352)	
	가정	94.7	5.3	100.0( 187)	
	직장/법인외	84.2	15.8	100.0( 120)	

(표 IV-1-1 계속)

항목	시설유형	있음	없음	계	$\chi^2$ (df)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97.9	2.1	100.0(1,033)	4.15(3)
	국공립/법인	98.1	1.9	100.0( 374)	
	민간	96.9	3.1	100.0( 352)	
	가정	99.5	0.5	100.0( 187)	
	직장/법인외	97.5	2.5	100.0( 120)	

\*\*\* p< .001.

나) 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모든 식자재는 소비 기한, 식품 구입 날짜 표기하고 있음'이 96.1%, '간식은 오전, 오후 나누어 2회 제공하고 있음'이 99.8%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식자재 관리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2> 어린이집 급식관리 수준-원장

단위: %(명)

항목	시설유형	실시함	실시안함	계	$\chi^2$ (df)
모든 식자재는 소비 기한, 식품 구입 날짜를 표기하고 있다	전체	96.1	3.9	100.0(1,033)	16.01(3)**
	국공립/법인	98.9	1.1	100.0( 374)	
	민간	94.9	5.1	100.0( 352)	
	가정	92.5	7.5	100.0( 187)	
	직장/법인외	96.7	3.3	100.0( 120)	
간식은 오전, 오후 나누어 2회 제공하고 있다	전체	99.8	0.2	100.0(1,033)	0.85(3)
	국공립/법인	99.7	0.3	100.0( 374)	
	민간	99.7	0.3	100.0( 352)	
	가정	100.0	-	100.0( 187)	
	직장/법인외	100.0	-	100.0( 120)	

\*\* p< .01.

다) 건강관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모든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99.3%, '건강검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음' 99.3%, '영유아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음' 96.0%로 나타나, 건강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증명서류의 비치 및 보관과 건강검진 안내의 실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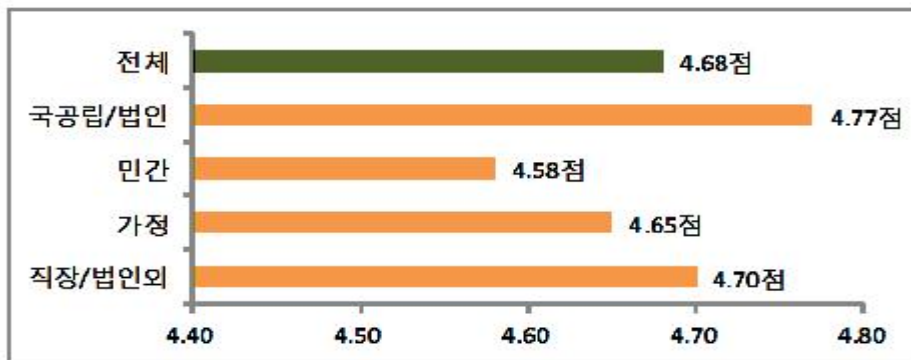
<표 IV-1-3>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원장

단위: %(명)

항목	시설유형	실시함	실시안함	계	$\chi^2$ (df)
모든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전체	99.3	0.7	100.0(1,033)	0.85(3)
	국공립/법인	99.7	0.3	100.0( 374)	
	민간	99.7	0.3	100.0( 352)	
	가정	97.3	2.7	100.0( 187)	
	직장/법인외	100.0	-	100.0( 120)	
건강검진 증명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다	전체	99.3	0.7	100.0(1,033)	9.46(3)*
	국공립/법인	100.0	-	100.0( 374)	
	민간	99.1	0.9	100.0( 352)	
	가정	97.9	2.1	100.0( 187)	
	직장/법인외	100.0	-	100.0( 120)	
영유아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	전체	96.0	4.0	100.0(1,033)	15.12(3)**
	국공립/법인	97.9	2.1	100.0( 374)	
	민간	95.2	4.8	100.0( 352)	
	가정	92.0	8.0	100.0( 187)	
	직장/법인외	99.2	0.8	100.0( 120)	

\*  $p < .05$ , \*\*  $p < .01$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현황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5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그림 IV-1-1]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교사

‘보육실, 공유 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있음’과 ‘배식된 음식 당일 소모함’이 평균 4.80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화장실, 세면장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평균 4.5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건강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V-1-4> 어린이집 건강관리 수준-교사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단위: 점(명)	
				표준편차	F
건강 및 영양 관리 전체	전체	(1,048)	4.68	0.39	15.50***
	국공립/법인	( 405)	4.77 <sup>c</sup>	0.34	
	민간	( 354)	4.58 <sup>a</sup>	0.42	
	가정	( 172)	4.65	0.42	
	직장/법인의외	( 117)	4.70	0.37	
1. 보육실, 공유 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전체	(1,048)	4.80	0.41	4.35**
	국공립/법인	( 405)	4.85 <sup>b</sup>	0.36	
	민간	( 354)	4.75 <sup>a</sup>	0.45	
	가정	( 172)	4.76 <sup>a</sup>	0.43	
	직장/법인의외	( 117)	4.85 <sup>b</sup>	0.36	
2. 모든 실내 공간을 자주 소독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2개월에 1회 이상)	전체	(1,048)	4.73	0.48	6.77**
	국공립/법인	( 405)	4.81 <sup>b</sup>	0.41	
	민간	( 354)	4.67 <sup>a</sup>	0.50	
	가정	( 172)	4.66 <sup>a</sup>	0.52	
	직장/법인의외	( 117)	4.74	0.48	
3. 매일 청소상태, 소독과 대청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있다	전체	(1,048)	4.60	0.62	16.48***
	국공립/법인	( 405)	4.76 <sup>c</sup>	0.48	
	민간	( 354)	4.47 <sup>a</sup>	0.67	
	가정	( 172)	4.48 <sup>a</sup>	0.75	
	직장/법인의외	( 117)	4.62 <sup>b</sup>	0.55	
4. 플라스틱 블록, 인형, 소꿉놀이 도구 등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전체	(1,048)	4.54	0.58	14.26***
	국공립/법인	( 405)	4.66 <sup>b</sup>	0.52	
	민간	( 354)	4.39 <sup>a</sup>	0.63	
	가정	( 172)	4.56 <sup>b</sup>	0.57	
	직장/법인의외	( 117)	4.57 <sup>b</sup>	0.58	

(표 IV-1-4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5.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1,048)	4.53	0.62	9.79***
	국공립/법인	( 405)	4.61	0.57	
	민간	( 354)	4.40 <sup>a</sup>	0.68	
	가정	( 172)	4.64 <sup>c</sup>	0.53	
	직장/법인의외	( 117)	4.50	0.62	
6. 조리실 바닥, 벽, 천장 등 청결관리 및 환기를 매일 잘 유지하고 있다	전체	(1,048)	4.59	0.52	10.63***
	국공립/법인	( 405)	4.68 <sup>b</sup>	0.49	
	민간	( 354)	4.46 <sup>a</sup>	0.61	
	가정	( 172)	4.62 <sup>b</sup>	0.56	
	직장/법인의외	( 117)	4.62 <sup>b</sup>	0.58	
7.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있다	전체	(1,048)	4.76	0.44	6.92***
	국공립/법인	( 405)	4.83 <sup>b</sup>	0.39	
	민간	( 354)	4.70 <sup>a</sup>	0.47	
	가정	( 172)	4.70 <sup>a</sup>	0.48	
	직장/법인의외	( 117)	4.81 <sup>b</sup>	0.41	
8. 개별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전체	(1,048)	4.69	0.53	11.51***
	국공립/법인	( 405)	4.80 <sup>c</sup>	0.42	
	민간	( 354)	4.57 <sup>a</sup>	0.60	
	가정	( 172)	4.69 <sup>b</sup>	0.54	
	직장/법인의외	( 117)	4.69 <sup>b</sup>	0.55	
9. 배식된 음식은 당일 소모 하고 있다	전체	(1,048)	4.80	0.42	5.86***
	국공립/법인	( 405)	4.86 <sup>c</sup>	0.35	
	민간	( 354)	4.74 <sup>a</sup>	0.49	
	가정	( 172)	4.77	0.42	
	직장/법인의외	( 117)	4.83	0.42	
10.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	전체	(1,048)	4.75	0.49	13.11***
	국공립/법인	( 405)	4.85 <sup>b</sup>	0.38	
	민간	( 354)	4.66 <sup>a</sup>	0.55	
	가정	( 172)	4.64 <sup>a</sup>	0.56	
	직장/법인의외	( 117)	4.79 <sup>b</sup>	0.45	

주: 평균(표준편차)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5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  $p < .001$ ,  $a \neq b \neq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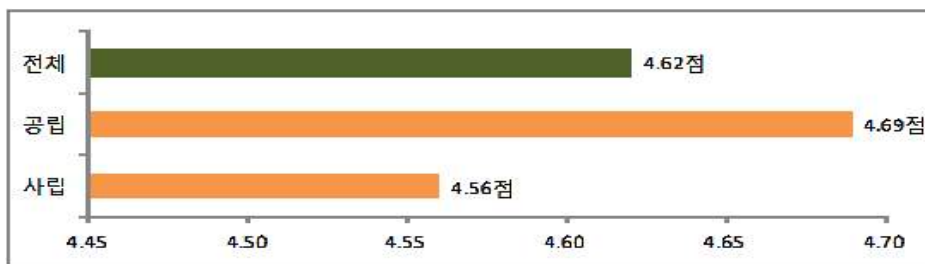
## 2) 유치원

### 가) 영양관리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현황을 질문한 결과, '신선한 식재



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사용함'이 평균 4.70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스턴트 음식·탄산 음료·튀긴 음식·과자·사탕류의 간식 제공을 피함'이 평균 4.5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식재료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식 제공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관 유형별로는 '인스턴트 음식·탄산 음료·튀긴 음식·과자·사탕류의 간식 제공을 피함'을 제외한 이외의 모든 문항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1-2]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표 IV-1-5> 유치원 영양관리 수준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영양관리 수준 전체	전체	(2,073)	4.62	0.44	6.80***
	공립	(1,034)	4.69	0.41	
	사립	(1,039)	4.56	0.46	
1. 영양 균형을 유지한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전체	(2,073)	4.58	0.57	4.07***
	공립	(1,034)	4.63	0.54	
	사립	(1,039)	4.53	0.60	
2.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튀김 음식, 과자·사탕류의 제공을 피한다	전체	(2,073)	4.50	0.66	1.42
	공립	(1,034)	4.52	0.62	
	사립	(1,039)	4.48	0.69	
3.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전체	(2,073)	4.68	0.48	5.69***
	공립	(1,034)	4.74	0.45	
	사립	(1,039)	4.62	0.51	
4.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검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전체	(2,073)	4.64	0.56	9.2***
	공립	(1,034)	4.75	0.47	
	사립	(1,039)	4.53	0.62	
5.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다.	전체	(2,073)	4.70	0.49	7.60***
	공립	(1,034)	4.78	0.44	
	사립	(1,039)	4.62	0.53	

\* p< .05, \*\* p< .01, \*\*\* p< .001.

## 나) 건강관리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현황이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 방역을 실시함'이 평균 4.69 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실외 시설·설비의 청결관리 및 연 2회 이상의 모래소독을 실시함'이 평균 3.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내 청결관리에 비해 실외 청결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관 유형별로는 '실내 시설·설비의 청결관리 및 연 2회 이상 실내 방역'을 제외한 이외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외 시설·설비의 청결관리 및 연 2회 이상의 모래소독을 실시함'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그 외 문항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lt;표 IV-1-6&gt; 유치원 건강관리 수준

단위: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건강관리 수준 전체	전체	(2,073)	4.46	0.47	0.80
	공립	(1,034)	4.47	0.46	
	사립	(1,039)	4.45	0.48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 및 위생지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2,073)	4.63	0.51	4.70***
	공립	(1,034)	4.68	0.48	
	사립	(1,039)	4.57	0.53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예: 개별 유아의 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전체	(2,073)	4.50	0.58	4.43***
	공립	(1,034)	4.56	0.56	
	사립	(1,039)	4.44	0.59	
3.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방역을 실시한다	전체	(2,073)	4.69	0.54	0.42
	공립	(1,034)	4.69	0.54	
	사립	(1,039)	4.68	0.55	
4. 바깥놀이 시설·설비를 청결히 관리하며 모래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전체	(2,073)	3.83	0.97	-5.18***
	공립	(1,034)	3.72	1.01	
	사립	(1,039)	3.94	0.92	
5. 조리실, 식기, 조리도구는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체	(2,073)	4.64	0.54	3.13**
	공립	(1,034)	4.68	0.53	
	사립	(1,039)	4.60	0.56	

\* p&lt; .05, \*\* p&lt; .01, \*\*\* p&lt; .001.

나. 안전보호

1) 어린이집

가) 시설 안전관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내외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 90% 이상 설치 및 점검이 이루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창문보호대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 87.2%,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 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했음' 80.5%로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특히 옥외놀이터 바닥 관리의 경우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은 약 90.0%의 설치율을 보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77.6%, 가정어린이집은 6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수준

항목	시설유형	단위: 점(명)			$x^2$ (df)
		있음	없음	계	
1. 창문보호대나 난간(추락방지)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	87.2	12.8	100.0(1,033)	1.24(3)
	국공립/법인	87.4	12.6	100.0( 374)	
	민간	85.8	14.2	100.0( 352)	
	가정	88.2	11.8	100.0( 187)	
	직장/법인외	89.2	10.8	100.0( 120)	
2. 전기 콘센트에 안전 덮개가 덮여 있다	전체	98.8	1.2	100.0(1,033)	5.82(3)
	국공립/법인	99.5	0.5	100.0( 374)	
	민간	97.7	2.3	100.0( 352)	
	가정	99.5	0.5	100.0( 187)	
	직장/법인외	99.2	0.8	100.0( 120)	
3. 책상, 의자 등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다	전체	98.6	1.4	100.0(1,033)	6.62(3)
	국공립/법인	98.9	1.1	100.0( 374)	
	민간	97.4	2.6	100.0( 352)	
	가정	99.5	0.5	100.0( 187)	
	직장/법인외	100.0	-	100.0( 120)	
4. 모든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전체	97.8	2.2	100.0(1,033)	7.76(3)*
	국공립/법인	98.9	1.1	100.0( 374)	
	민간	96.0	4.0	100.0( 352)	
	가정	98.4	1.6	100.0( 187)	
	직장/법인외	98.3	1.7	10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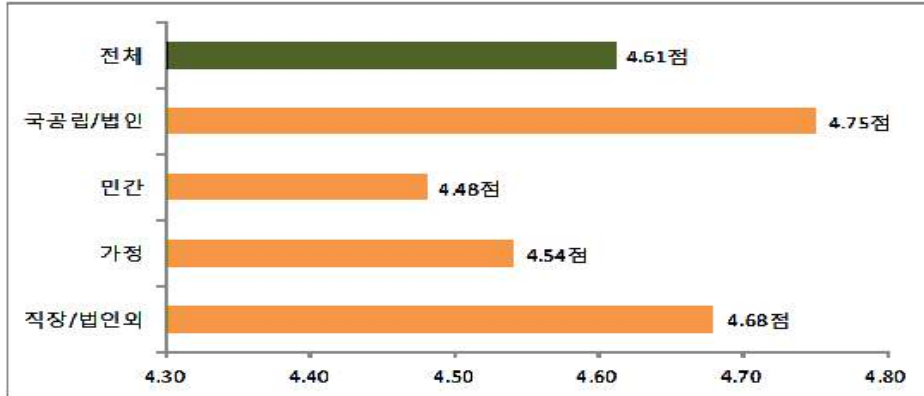
(표 IV-1-7 계속)

항목	시설유형	있음	없음	계	$\chi^2$ (df)
5. 무거운 물건은 수납장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다	전체	99.1	0.9	100.0(1,033)	2.74(3)
	국공립/법인	98.9	1.1	100.0( 374)	
	민간	99.7	0.3	100.0( 352)	
	가정	98.4	1.6	100.0( 187)	
	직장/법인외	99.2	0.8	100.0( 120)	
6. 어린이집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전체	96.4	3.6	100.0(1,033)	4.60(3)
	국공립/법인	96.8	3.2	100.0( 374)	
	민간	96.3	3.7	100.0( 352)	
	가정	97.9	2.1	100.0( 187)	
	직장/법인외	93.3	6.7	100.0( 120)	
7.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했다	전체	80.5	19.5	100.0(1,033)	72.79(3)***
	국공립/법인	89.8	10.2	100.0( 374)	
	민간	77.6	22.4	100.0( 352)	
	가정	61.5	38.5	100.0( 187)	
	직장/법인외	90.0	10.0	100.0( 120)	
8. 놀잇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다	전체	93.3	6.7	100.0(1,033)	16.65(3)**
	국공립/법인	97.1	2.9	100.0( 374)	
	민간	91.5	8.5	100.0( 352)	
	가정	88.8	11.2	100.0( 187)	
	직장/법인외	94.2	5.8	100.0( 120)	
9.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97.2	2.8	100.0(1,033)	14.52(3)**
	국공립/법인	99.2	0.8	100.0( 374)	
	민간	94.6	5.4	100.0( 352)	
	가정	97.9	2.1	100.0( 187)	
	직장/법인외	97.5	2.5	100.0( 120)	

\*  $p < .05$ , \*\*  $p < .01$ .

## 나) 안전보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안전보호 현황을 질문한 결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이 평균 4.73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문서화하여 절차와 방법 명시하였음'은 평균 4.4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안전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1-3] 어린이집 안전보호 수준

<표 IV-1-8> 어린이집 안전보호 수준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안전보호 수준 전체	전체	(1,033)	4.61	0.45	26.89***
	국공립/법인	( 374)	4.75 <sup>b</sup>	0.37	
	민간	( 352)	4.48 <sup>a</sup>	0.46	
	가정	( 187)	4.54 <sup>a</sup>	0.51	
	직장/법인외	( 120)	4.68 <sup>b</sup>	0.39	
1. 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구성하였다	전체	(1,033)	4.57	0.53	9.04***
	국공립/법인	( 374)	4.67 <sup>b</sup>	0.49	
	민간	( 352)	4.47 <sup>a</sup>	0.54	
	가정	( 187)	4.55 <sup>a</sup>	0.55	
	직장/법인외	( 120)	4.58	0.51	
2.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을 문서화하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전체	(1,033)	4.45	0.69	23.57***
	국공립/법인	( 374)	4.64 <sup>b</sup>	0.57	
	민간	( 352)	4.26 <sup>a</sup>	0.71	
	가정	( 187)	4.33 <sup>a</sup>	0.82	
	직장/법인외	( 120)	4.60 <sup>b</sup>	0.56	
3. 모든 영유아 보호자에게 귀가동 의서를 받았다	전체	(1,033)	4.69	0.55	19.11****
	국공립/법인	( 374)	4.83 <sup>b</sup>	0.38	
	민간	( 352)	4.54 <sup>a</sup>	0.64	
	가정	( 187)	4.64 <sup>a</sup>	0.63	
	직장/법인외	( 120)	4.76 <sup>b</sup>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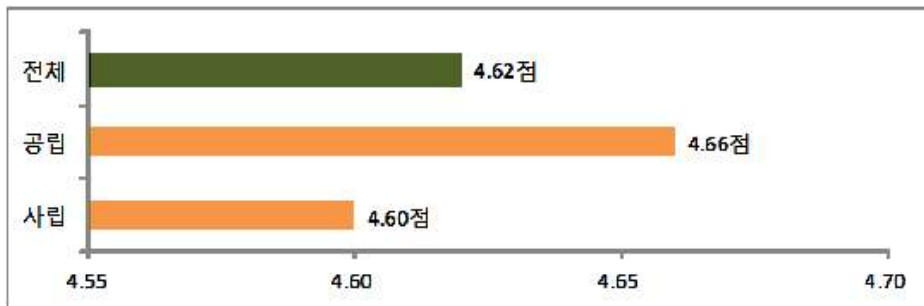
(표 IV-1-8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4.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1,033)	4.73	0.46	16.84***
	국공립/법인	( 374)	4.85 <sup>b</sup>	0.36	
	민간	( 352)	4.64 <sup>a</sup>	0.49	
	가정	( 187)	4.64 <sup>a</sup>	0.55	
	직장/법인의외	( 120)	4.79 <sup>b</sup>	0.43	

\*\*\* p< .001, a≠b.

## 2) 유치원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유치원 안전관리 현황을 질문한 결과, ‘안전보호 관련 문항에서는 유아 대상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가정에 공지함’이 평균 4.75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교사 대상의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평균 4.4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사 대상의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함’, ‘실내·외 시설설비 점검의 체계적 관리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고, ‘유아 상해보험 가입 및 가정에 공지함’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표 IV-1-9> 유치원 안전관리 수준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안전관리 수준 전체	전체	(1,033)	4.62	0.43	2.18*
	공립	( 461)	4.66	0.44	
	사립	( 572)	4.60	0.43	

(표 IV-1-9 계속)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예: 교통안전, 놀이시설안전, 아동학대 및 유괴 등)	전체	(1,033)	4.70	0.48	1.86
	공립	( 461)	4.73	0.46	
	사립	( 572)	4.67	0.50	
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예: 안전관리 지도법, 응급처치법, 아동학대 및 유괴 등)	전체	(1,033)	4.45	0.64	5.06***
	공립	( 461)	4.56	0.57	
	사립	( 572)	4.37	0.67	
3. 유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가정에서 공지하고 있다(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전체	(1,033)	4.75	0.47	-2.39*
	공립	( 461)	4.71	0.51	
	사립	( 572)	4.78	0.43	
4.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부모 비상연락처, 각종 응급처치 약품구비, 구급요법에 관한 안내책자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1,033)	4.68	0.51	-1.19
	공립	( 461)	4.66	0.52	
	사립	( 572)	4.70	0.50	
5. 실내·외 시설 및 설비점검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1,033)	4.54	0.61	4.10***
	공립	( 461)	4.63	0.55	
	사립	( 572)	4.48	0.66	

\* p< .05, \*\* p< .01, \*\*\* p< .001.

안전보호 실천과 관련하여 유치원 교사 6은 유치원의 시설·설비 안전 등은 법적 준수사항이므로 아동의 개별 의사 존중보다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 개별성의 존중은 실천 시에 교사들이 혼란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안전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시 보다는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실천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허용이 아니라 기본 생존을 위한 어쩌면 지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권리보다도 앞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하고 싶다고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 교사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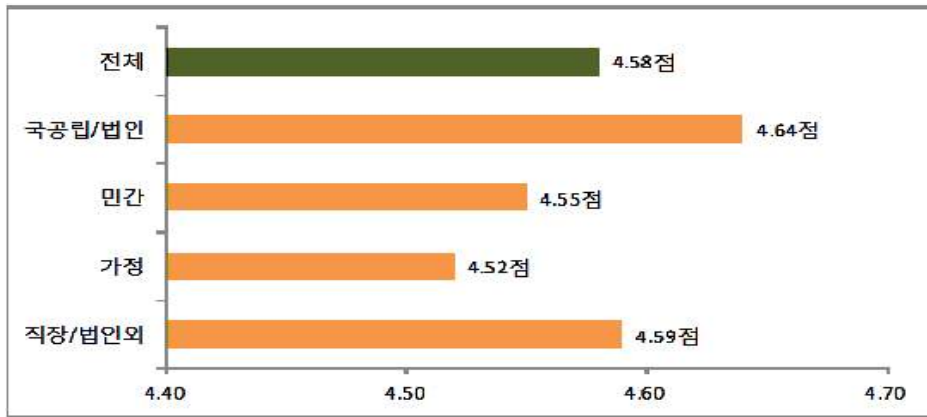
## 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1) 아동학대 예방

####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평소와 다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봄'이 평균 4.73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함'이 평균 4.2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 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수준

<표 IV-1-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수준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아동학대 예방 수준 전체	전체	(2,081)	4.58	0.44	8.59**
	국공립/법인	( 779)	4.64 <sup>c</sup>	0.41	
	민간	( 706)	4.55	0.45	
	가정	( 359)	4.52 <sup>a</sup>	0.45	
	직장/법인외	( 237)	4.59	0.43	
1. 영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상 태를 항상 살핀다	전체	(2,081)	4.71	0.46	3.89**
	국공립/법인	( 779)	4.75 <sup>b</sup>	0.43	
	민간	( 706)	4.67 <sup>a</sup>	0.49	
	가정	( 359)	4.69	0.46	
	직장/법인외	( 237)	4.73	0.45	
2.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전체	(2,081)	4.73	0.45	3.69*
	국공립/법인	( 779)	4.77 <sup>b</sup>	0.43	
	민간	( 706)	4.70 <sup>a</sup>	0.47	
	가정	( 359)	4.70 <sup>a</sup>	0.46	
	직장/법인외	( 237)	4.72	0.46	



(표 IV-1-10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3. 영유아의 신체에 멍 자국 등이 있을 때 영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 본다	전체	(2,081)	4.69	0.48	3.63*
	국공립/법인	( 779)	4.73 <sup>b</sup>	0.45	
	민간	( 706)	4.66	0.49	
	가정	( 359)	4.65 <sup>a</sup>	0.49	
	직장/법인외	( 237)	4.73 <sup>b</sup>	0.46	
4.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전체	(2,081)	4.20	0.84	10.14**
	국공립/법인	( 779)	4.31 <sup>c</sup>	0.80	
	민간	( 706)	4.17 <sup>b</sup>	0.82	
	가정	( 359)	4.03 <sup>a</sup>	0.90	
	직장/법인외	( 237)	4.18 <sup>b</sup>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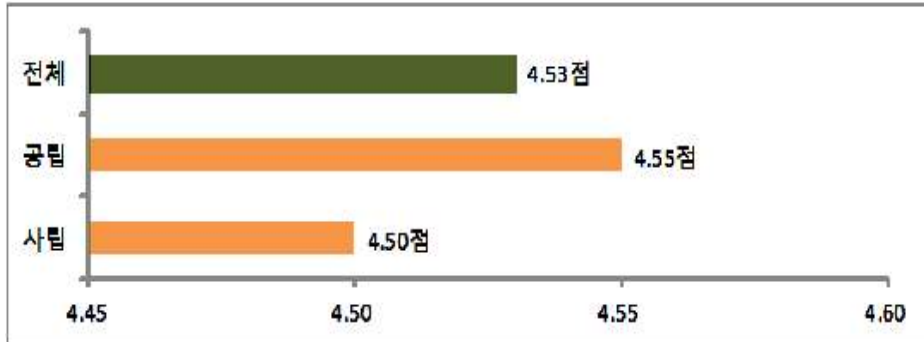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b≠c.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으로 보육교사 4는 동영상 자료가 적합하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영상 교육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납치 당하려던 아이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면 좋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없어서..... 그런 사건이 터질 때 교사가 뉴스를 찾아서 보여주는 방법 밖에..... (보육교사4)

나)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평소와 다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봄’이 평균 4.71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이 평균 4.0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로는 등원 시 아동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6]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수준

<표 IV-1-11>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수준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아동학대 예방 수준 전체	전체	(2,073)	4.53	0.45	2.70**
	공립	(1,034)	4.55	0.45	
	사립	(1,039)	4.50	0.44	
1. 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	전체	(2,073)	4.69	0.48	2.51*
	공립	(1,034)	4.72	0.47	
	사립	(1,039)	4.66	0.48	
2. 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전체	(2,073)	4.71	0.47	0.78
	공립	(1,034)	4.71	0.47	
	사립	(1,039)	4.70	0.47	
3. 유아의 신체에 멍 자국 등이 있을 때 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전체	(2,073)	4.64	0.51	0.44
	공립	(1,034)	4.65	0.51	
	사립	(1,039)	4.64	0.51	
4. 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체	(2,073)	4.07	0.84	3.59***
	공립	(1,034)	4.14	0.84	
	사립	(1,039)	4.00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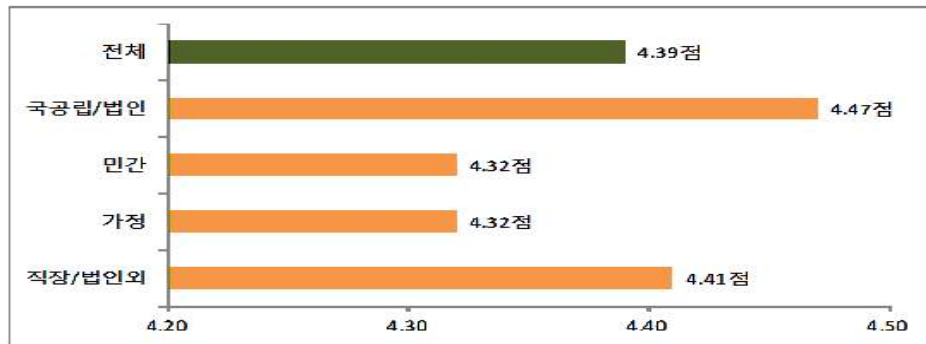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 2)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개념 인지 및 조치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평균 4.5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이 평균 4.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항(제26조)과 신고의무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제26조의2)에 한정되므로 피학대아동의 보호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학대 및 조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 어린이집 교직원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1-7] 어린이집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표 IV-1-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전체	전체	(2,081)	4.39	0.57	10.98***
	국공립/법인	( 779)	4.47 <sup>b</sup>	0.55	
	민간	( 706)	4.32 <sup>a</sup>	0.57	
	가정	( 359)	4.32 <sup>a</sup>	0.60	
	직장/법인외	( 237)	4.41 <sup>b</sup>	0.59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81)	4.46	0.62	5.20**
	국공립/법인	( 779)	4.52	0.60	
	민간	( 706)	4.40 <sup>a</sup>	0.65	
	가정	( 359)	4.43	0.63	
	직장/법인외	( 237)	4.53 <sup>c</sup>	0.56	
2. 보육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전체	(2,081)	4.59	0.56	14.53***
	국공립/법인	( 779)	4.68 <sup>b</sup>	0.52	
	민간	( 706)	4.50 <sup>a</sup>	0.59	
	가정	( 359)	4.54 <sup>a</sup>	0.60	
	직장/법인외	( 237)	4.65 <sup>b</sup>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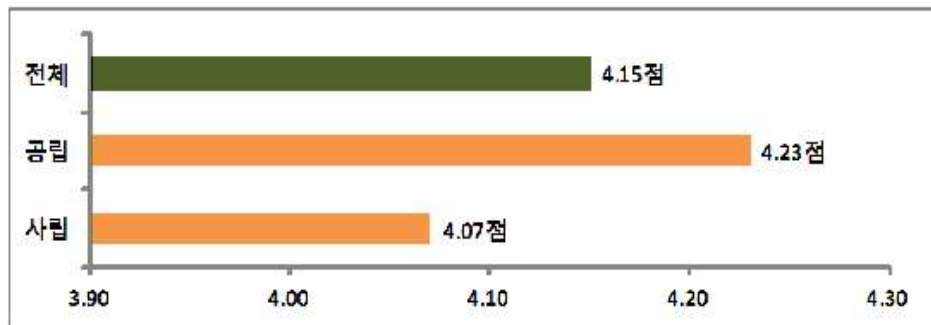
(표 IV-1-12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신고 전화번호, 신고 방식 등)	전체	(2,081)	4.24	0.77	9.80**
	국공립/법인	( 779)	4.35 <sup>b</sup>	0.72	
	민간	( 706)	4.15 <sup>a</sup>	0.76	
	가정	( 359)	4.18 <sup>a</sup>	0.80	
	직장/법인외	( 237)	4.24 <sup>a</sup>	0.81	
4.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자격 취소 등)	전체	(2,081)	4.33	0.73	5.71**
	국공립/법인	( 779)	4.41 <sup>b</sup>	0.72	
	민간	( 706)	4.27 <sup>a</sup>	0.71	
	가정	( 359)	4.26 <sup>a</sup>	0.74	
	직장/법인외	( 237)	4.35	0.80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	전체	(2,081)	4.31	0.77	7.38***
	국공립/법인	( 779)	4.41 <sup>b</sup>	0.74	
	민간	( 706)	4.26 <sup>a</sup>	0.75	
	가정	( 359)	4.21 <sup>a</sup>	0.76	
	직장/법인외	( 237)	4.27 <sup>a</sup>	0.88	

\*\* p< .01, \*\*\* p< .001, a≠b≠c.

#### 나) 유치원

아동학대 개념 인지 및 조치관련 사항을 질문한 결과, '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평균 4.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이 평균 3.9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IV-1-8] 유치원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표 IV-1-13> 유치원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아동학대 개념 및 규정 인식 수준 전체	전체	(2,073)	4.15	0.69	5.41***
	공립	(1,034)	4.23	0.68	
	사립	(1,039)	4.07	0.69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73)	4.35	0.69	3.91***
	공립	(1,034)	4.41	0.68	
	사립	(1,039)	4.29	0.69	
2. 유치원 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전체	(2,073)	4.42	0.66	4.03***
	공립	(1,034)	4.48	0.64	
	사립	(1,039)	4.36	0.68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신고 전화번호, 신고 방식 등)	전체	(2,073)	3.96	0.89	6.27***
	공립	(1,034)	4.09	0.86	
	사립	(1,039)	3.84	0.89	
4.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2,073)	4.05	0.89	4.98***
	공립	(1,034)	4.15	0.86	
	사립	(1,039)	3.95	0.91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	전체	(2,073)	3.97	0.92	3.53***
	공립	(1,034)	4.04	0.93	
	사립	(1,039)	3.90	0.91	

\* p< .05, \*\* p< .01, \*\*\* p< .001.

### 3)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의 즉각적인 대응, 즉 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 등이 영유아의 신체 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좀 더 두고 봄' 34.3%, '부모에게 확인 후 아니라면 믿음'이 23.0%에 달하므로,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영아 대상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90.7%(48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발생 빈도는 '거의 매일'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a: 38) 가정 내 학대 발생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경우 학대 의심 사례의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IV-1-14&gt;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수준-어린이집

단위: 점(명)

구분	신고의무자 이므로 즉시 신고	부모에게 확인 후 아니라면 믿음	좀더 두고 봄	계	$\chi^2(df)$
전체	42.7	23.0	34.3	100.0(2,081)	
국공립/법인	45.4	23.2	31.3	100.0( 779)	21.28(6)**
민간	37.5	26.6	35.8	100.0( 706)	
가정	44.6	17.0	38.4	100.0( 359)	
직장/법인외	46.0	20.7	33.3	100.0( 237)	

\*\* p&lt; .01.

## 나) 유치원

아동학대예의 즉각적인 개입, 즉 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 등이 영유아의 신체 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함'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좀 더 두고 봄'은 32.1%, '부모에게 확인 후 아니라고 하면 믿음'은 30.7%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 별로는 즉시 신고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공립유치원 교직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IV-1-15&gt;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수준-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	부모에게 확인 후 아니라면 믿음	좀더 두고봄	모른척한다	계	$\chi^2(df)$
전체	37.1	30.7	32.1	0.1	(2,073)	
공립	45.2	30.9	23.9	0.1	(1,034)	78.896(3)***
사립	29.2	30.5	40.2	0.1	(1,039)	

\* p&lt; .05, \*\* p&lt; .01, \*\*\* p&lt; .001.

유치원 교사 2, 3은 가끔 가정에서 체벌을 받아 멍이 든 채 등원한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기는 모호한 측면이 있고, 학부모에게 직접 학대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가끔 부모에게 맞아서 온 아이들 본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엉덩이에 멍 들고..... 아빠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고집 부려서..... 체벌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아직 학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유

지원 교사2)

여름이었는데 남자 아이가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반바지 사이로 시퍼런 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셔서..... 얘기 꺼내기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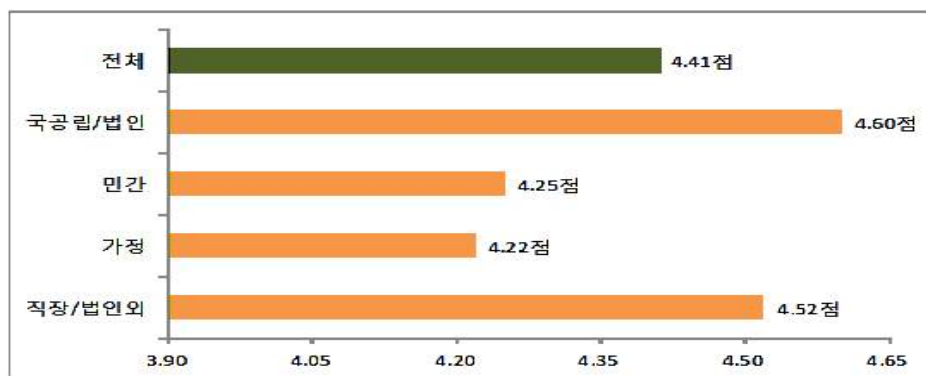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대해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는 물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 규정(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즉 신고인의 신분 보호와 신원 노출 금지 등에서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2. 발달권

### 가. 보육·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 1)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 교사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2-1]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또한, 전체 평균은 4.41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계획 시 아동 발달을 고려한다'가 평균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영유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 등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가 평균 4.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1>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전체	전체	(1,048)	4.41	0.51	46.13***
	국공립/법인	( 405)	4.60 <sup>b</sup>	0.44	
	민간	( 354)	4.25 <sup>a</sup>	0.52	
	가정	( 172)	4.22 <sup>a</sup>	0.49	
	직장/법인의외	( 117)	4.52 <sup>b</sup>	0.47	
1. 활동계획 시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다	전체	(1,048)	4.51	0.52	15.23***
	국공립/법인	( 405)	4.61 <sup>b</sup>	0.51	
	민간	( 354)	4.42 <sup>a</sup>	0.52	
	가정	( 172)	4.37 <sup>a</sup>	0.51	
	직장/법인의외	( 117)	4.61 <sup>b</sup>	0.49	
2. 일과 중 실내/실외, 대근육.소근육, 개별/소집단/대집단, 정적/동적 활동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체	(1,048)	4.45	0.59	21.19***
	국공립/법인	( 405)	4.59 <sup>b</sup>	0.55	
	민간	( 354)	4.32 <sup>a</sup>	0.59	
	가정	( 172)	4.30 <sup>a</sup>	0.61	
	직장/법인의외	( 117)	4.60 <sup>b</sup>	0.53	
3. 일과 중 실외활동을 1시간 이상 하고 있다(영아 경우 30분 정도)	전체	(1,048)	4.30	0.77	31.17***
	국공립/법인	( 405)	4.56 <sup>c</sup>	0.64	
	민간	( 354)	4.07 <sup>a</sup>	0.81	
	가정	( 172)	4.14 <sup>a</sup>	0.74	
	직장/법인의외	( 117)	4.33 <sup>b</sup>	0.85	
4.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 및 영역이 영유아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일일 2시간30분 이상)	전체	(1,048)	4.48	0.64	25.91***
	국공립/법인	( 405)	4.65 <sup>b</sup>	0.53	
	민간	( 354)	4.31 <sup>a</sup>	0.72	
	가정	( 172)	4.32 <sup>a</sup>	0.60	
	직장/법인의외	( 117)	4.62 <sup>b</sup>	0.60	
5. 영유아 자신과 가족, 또래,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 기회를 월 2회 이상 제공한다 (영아 경우 월 1회 정도)	전체	(1,048)	4.27	0.75	36.33***
	국공립/법인	( 405)	4.54 <sup>c</sup>	0.63	
	민간	( 354)	4.09 <sup>a</sup>	0.78	
	가정	( 172)	3.98 <sup>a</sup>	0.77	
	직장/법인의외	( 117)	4.35 <sup>b</sup>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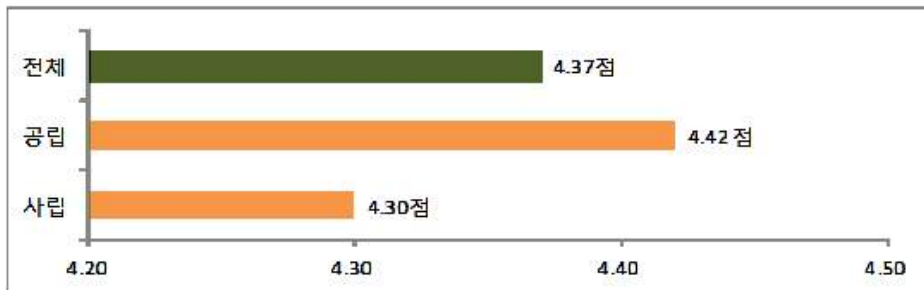
(표 IV-2-1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6. 정기적으로 보육활동을 평가하고, 개별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진다(월 1회 이상)	전체	(1,048)	4.46	0.64	35.85***
	국공립/법인	( 405)	4.67 <sup>b</sup>	0.51	
	민간	( 354)	4.29 <sup>a</sup>	0.69	
	가정	( 172)	4.23 <sup>a</sup>	0.70	
	직장/법인의외	( 117)	4.63 <sup>b</sup>	0.57	

\*\*\* p< .001, a≠b≠c.

## 2) 유치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교육계획의 목표 및 활동·내용 간 연계성이 있음'이 평균 4.58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가방법과 도구의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적합함'이 평균 4.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각 문항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평균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계획의 목표 및 활동·내용 간 연계성이 있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일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함', '평가의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 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함'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V-2-2]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표 IV-2-2>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 전체	전체	(1,040)	4.37	0.45	4.15***
	공립	( 573)	4.42	0.45	
	사립	( 467)	4.30	0.44	

(표 IV-2-2 계속)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1. 교육 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전체	(1,040)	4.47	0.53	5.33***
	공립	( 573)	4.55	0.53	
	사립	( 467)	4.37	0.53	
2. 교육 목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뿐 아니라 유아·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1,040)	4.42	0.57	6.35***
	공립	( 573)	4.52	0.55	
	사립	( 467)	4.30	0.57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전체	(1,040)	4.58	0.51	1.70
	공립	( 573)	4.60	0.50	
	사립	( 467)	4.55	0.52	
4. 교육내용 및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전체	(1,040)	4.50	0.53	2.10*
	공립	( 573)	4.53	0.53	
	사립	( 467)	4.46	0.53	
5. 일일 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또는 소단원 등) 시간대별 활동, 활동 목표, 준비물 및 방법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1,040)	4.46	0.61	-2.19*
	공립	( 573)	4.43	0.65	
	사립	( 467)	4.51	0.56	
6. 교육과정 생활주제별, 유아 발달 영역별 통합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1,040)	4.51	0.53	2.47*
	공립	( 573)	4.54	0.53	
	사립	( 467)	4.46	0.54	
7. 일과 중 자유활동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다(하루 일과의 1/3~1/4시간 정도, 5시간 이상일 경우 1/5)	전체	(1,040)	4.48	0.60	7.90***
	공립	( 573)	4.61	0.52	
	사립	( 467)	4.31	0.66	
8.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이 1일 30~40분 이상, 주 3일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1,040)	4.21	0.81	6.60***
	공립	( 573)	4.35	0.74	
	사립	( 467)	4.03	0.85	
9. 실내·외, 대·소근육, 개별/대·소집단, 정·동적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활동양이 유아에 적절하다	전체	(1,040)	4.35	0.62	6.87***
	공립	( 573)	4.46	0.58	
	사립	( 467)	4.20	0.63	
10. 교육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및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체	(1,040)	4.31	0.61	4.10***
	공립	( 573)	4.38	0.59	
	사립	( 467)	4.23	0.63	
11.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전체	(1,040)	4.30	0.59	4.26***
	공립	( 573)	4.37	0.57	
	사립	( 467)	4.22	0.59	
12.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전체	(1,040)	4.30	0.61	4.39***
	공립	( 573)	4.37	0.61	
	사립	( 467)	4.21	0.59	
1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일과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전체	(1,040)	4.24	0.67	-1.39
	공립	( 573)	4.21	0.71	
	사립	( 467)	4.27	0.61	

(표 IV-2-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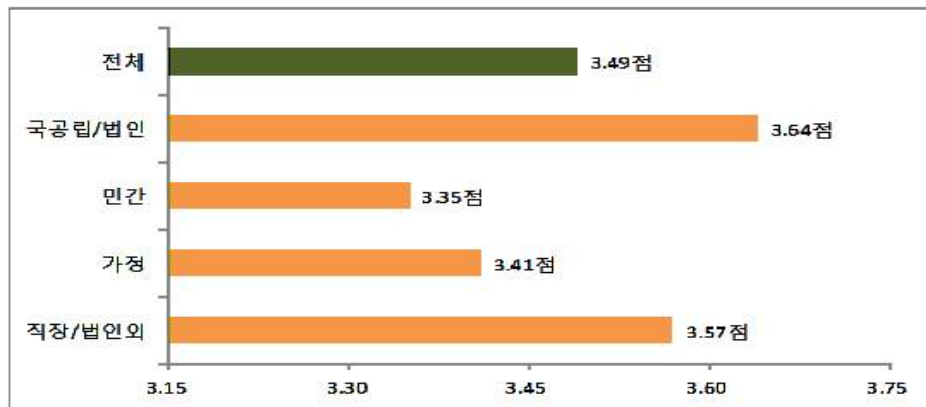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14.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전체	(1,040)	4.15	0.66	0.25
	공립	( 573)	4.15	0.69	
	사립	( 467)	4.14	0.61	
15. 개별 유아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점검하고 활용한다(예: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부모 면담 등)	전체	(1,040)	4.23	0.67	-2.24*
	공립	( 573)	4.19	0.72	
	사립	( 467)	4.28	0.61	

\* p< .05, \*\* p< .01, \*\*\* p< .001.

## 나. 보육·교육과정 이해와 적용

###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표준보육과정 읽어본 적 있음'이 평균 3.59점(만점 4점),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읽어본 적 있음'이 평균 3.52점,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읽어본 적 있음'이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평균은 '전혀 모른다' 1점, '들어본 적 있다' 2점, '내용을 알고 있다' 3점,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 있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4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그림 IV-2-3]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lt;표 IV-2-3&gt;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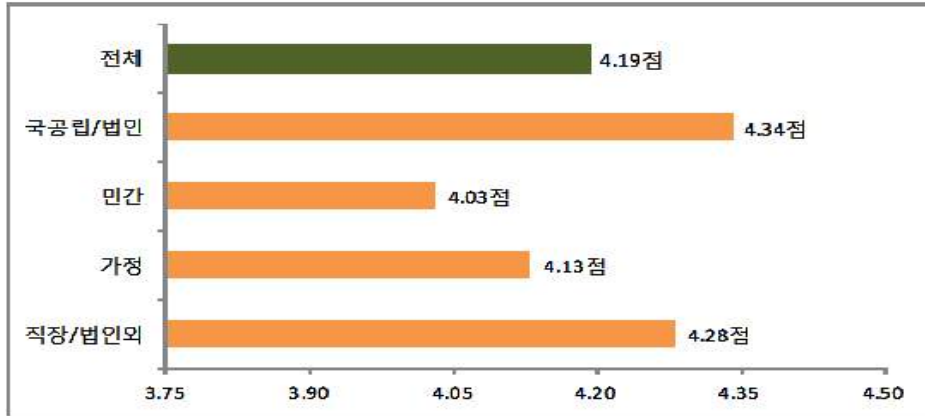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전체	전체	(2,081)	3.49	0.61	33.87***
	국공립/법인	( 779)	3.64 <sup>b</sup>	0.52	
	민간	( 706)	3.35 <sup>a</sup>	0.65	
	가정	( 359)	3.41 <sup>a</sup>	0.60	
	직장/법인외	( 237)	3.57 <sup>b</sup>	0.60	
1.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2,081)	3.59	0.61	33.85***
	국공립/법인	( 779)	3.73 <sup>b</sup>	0.51	
	민간	( 706)	3.44 <sup>a</sup>	0.66	
	가정	( 359)	3.50 <sup>a</sup>	0.62	
	직장/법인외	( 237)	3.67 <sup>b</sup>	0.60	
2.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2,081)	3.37	0.77	30.81***
	국공립/법인	( 779)	3.55 <sup>c</sup>	0.67	
	민간	( 706)	3.20 <sup>a</sup>	0.81	
	가정	( 359)	3.26 <sup>a</sup>	0.77	
	직장/법인외	( 237)	3.44 <sup>b</sup>	0.79	
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2,081)	3.52	0.66	15.09***
	국공립/법인	( 779)	3.64 <sup>b</sup>	0.58	
	민간	( 706)	3.40 <sup>a</sup>	0.72	
	가정	( 359)	3.48 <sup>a</sup>	0.66	
	직장/법인외	( 237)	3.59 <sup>b</sup>	0.62	

주: 평균(표준편차)은 '전혀 모른다' 1점, '들어본 적 있다' 2점, '내용을 알고 있다' 3점,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 있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4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  $p < .001$ ,  $a \neq b \neq c$ .

또한 표준보육과정 이해와 적용 수준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평균 4.31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 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이 평균 4.29점을 나타내었다. 반면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은 평균 4.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표준보육과정 적용에 대한 사후평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V-2-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

<표 IV-2-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

단위: 점(명)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표준보육과정 이해와 적용 전체	전체	(2,081)	4.19	0.60	38.11***
	국공립/법인	( 779)	4.34 <sup>c</sup>	0.57	
	민간	( 706)	4.03 <sup>a</sup>	0.60	
	가정	( 359)	4.13 <sup>b</sup>	0.58	
	직장/법인외	( 237)	4.28 <sup>c</sup>	0.56	
1.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 상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있다	전체	(2,081)	4.20	0.68	27.07***
	국공립/법인	( 779)	4.34 <sup>c</sup>	0.63	
	민간	( 706)	4.04 <sup>a</sup>	0.71	
	가정	( 359)	4.15 <sup>b</sup>	0.65	
	직장/법인외	( 237)	4.30 <sup>c</sup>	0.65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체	(2,081)	4.16	0.70	31.30***
	국공립/법인	( 779)	4.32 <sup>b</sup>	0.67	
	민간	( 706)	3.99 <sup>a</sup>	0.71	
	가정	( 359)	4.07 <sup>a</sup>	0.69	
	직장/법인외	( 237)	4.27 <sup>b</sup>	0.66	
3.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령 집단별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있다	전체	(2,081)	4.14	0.71	26.52***
	국공립/법인	( 779)	4.28 <sup>b</sup>	0.68	
	민간	( 706)	3.98 <sup>a</sup>	0.72	
	가정	( 359)	4.06 <sup>a</sup>	0.71	
	직장/법인외	( 237)	4.24 <sup>b</sup>	0.68	

(표 IV-2-4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4.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 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81)	4.15	0.69	24.02***
	국공립/법인	( 779)	4.29 <sup>b</sup>	0.67	
	민간	( 706)	4.00 <sup>a</sup>	0.69	
	가정	( 359)	4.09 <sup>a</sup>	0.69	
	직장/법인의외	( 237)	4.22 <sup>b</sup>	0.70	
5.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81)	4.10	0.73	25.66***
	국공립/법인	( 779)	4.26 <sup>b</sup>	0.70	
	민간	( 706)	3.95 <sup>a</sup>	0.73	
	가정	( 359)	4.10 <sup>a</sup>	0.73	
	직장/법인의외	( 237)	4.18 <sup>b</sup>	0.70	
6.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전체	(2,081)	4.29	0.67	29.35***
	국공립/법인	( 779)	4.43 <sup>c</sup>	0.63	
	민간	( 706)	4.12 <sup>a</sup>	0.68	
	가정	( 359)	4.26 <sup>b</sup>	0.64	
	직장/법인의외	( 237)	4.36 <sup>c</sup>	0.66	
7.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전체	(2,081)	4.31	0.66	35.24***
	국공립/법인	( 779)	4.47 <sup>c</sup>	0.61	
	민간	( 706)	4.14 <sup>a</sup>	0.68	
	가정	( 359)	4.25 <sup>b</sup>	0.64	
	직장/법인의외	( 237)	4.39 <sup>c</sup>	0.66	

\*\*\* p &lt; .001, a ≠ b ≠ c.

한편 집단면담에서 보육교사 1은 보육계획 수립 시 영유아 개별성 존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보육교사 4는 보육프로그램 운용 시 부모들 요구와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이는 보육계획안에 영유아의 개별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며,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에 따른 적용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시켜준다.

보육일과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 활동이 끝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제가 다 수용해 줄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힌 적도 있었고..... 모든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해서, 이 아이가 지금 물놀이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하고 싶다거나 할 경우 내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일 대 다수이고, 업무가 여러 가지여서 어려움이 있어요.(보육교사1)

저는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특기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동들이 지금 당장 미술활동이 하기

싶은데 그 활동을 해서 어머님들은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교사가 유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보육교사4)

또한 보육교사 2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천 측면에서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표준보육과정내에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례 중심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준보육과정을 쉽게 보는 거는 3월 첫째 주에는 뭐, 둘째 주에는 뭐.....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계획을 짤 때 쉽게 적용이 되는데, 영유아 권리 관련은 추상적이어서 어느 수업 때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스러워요.(보육교사2)

## 2) 유치원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모두 보았음'이 5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관심있는 내용 위주로 보았음' 32.1%, '대충 훑어 보았음'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는 '모두 보았음'이 53.1%로 가장 높고, '관심있는 내용 위주로 보았음' 33.0%, '대충 훑어 보았음'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지도자료집에 대해서는 '모두 보았음'이 47.6%로 가장 높고, '관심있는 내용 위주로 보았음' 38.3%, '대충 훑어 보았음'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대체로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5>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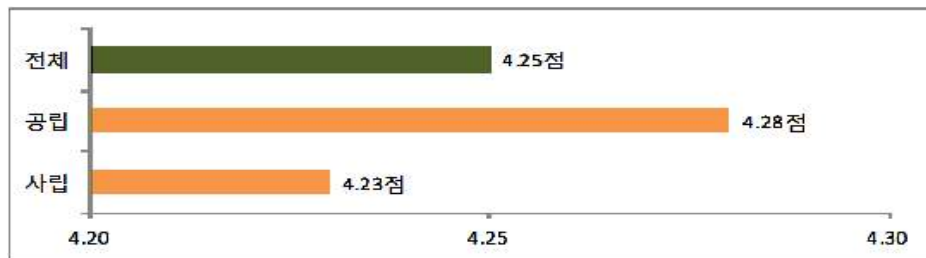
항목	기관유형	전혀 읽지 않았음	대충 훑어 보았다	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모두 (읽어)보았다	계	x2(df)
유치원 교육과정	전체	0.4	7.6	32.1	59.9	(2,073)	
	공립	0.7	8.8	32.5	58.0	(1,034)	9.94
	사립	0.1	6.4	31.8	61.8	(1,039)	(3)*

(표 IV-2-5 계속)

항목	기관유형	전혀 읽지 않았다	대충 훑어 보았다	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모두 (읽어)보았다	계	x2(df)
유치원	전체	1.0	12.9	33.0	53.1	(2,073)	
교육과정	공립	1.6	13.9	32.1	52.3	(1,034)	10.60
해설서	사립	0.4	11.8	33.9	53.9	(1,039)	(3)*
유치원	전체	1.8	12.3	38.3	47.6	(2,073)	
교육과정	공립	2.8	13.6	37.1	46.4	(1,034)	14.63
지도자료집	사립	0.9	11.1	39.4	48.7	(1,039)	(3)**

\* p< .05, \*\* p< .01.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도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을 잘 이해함’이 평균 4.33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평가를 이해함’은 평균 4.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을 잘 이해함’,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읽’,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 항목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5]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표 IV-2-6>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전체	전체	(2,073)	4.25	0.65	
	공립	(1,034)	4.28	0.68	1.72
	사립	(1,039)	4.23	0.63	
1.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는 목적과 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73)	4.33	0.67	
	공립	(1,034)	4.38	0.67	3.35**
	사립	(1,039)	4.28	0.66	



(표 IV-2-6 계속)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2.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체	(2,073)	4.27	0.70	2.65**
	공립	(1,034)	4.31	0.71	
	사립	(1,039)	4.23	0.68	
3.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73)	4.22	0.72	2.11*
	공립	(1,034)	4.25	0.74	
	사립	(1,039)	4.18	0.70	
4.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73)	4.26	0.70	0.20
	공립	(1,034)	4.27	0.74	
	사립	(1,039)	4.26	0.67	
5.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2,073)	4.19	0.74	-0.15
	공립	(1,034)	4.19	0.77	
	사립	(1,039)	4.19	0.71	

\* p< .05, \*\* p< .01, \*\*\* p< .001.

### 다. 특별활동/종일반 운영

#### 1) 특별활동 운영 - 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 수를 질문한 결과, 3개 이상은 41.1%, 2개는 34.1%,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1.1%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2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개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 54.5%, 직장/법인의 41.0%, 국공립/법인 36.0%, 가정 25.6%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자율성 보장과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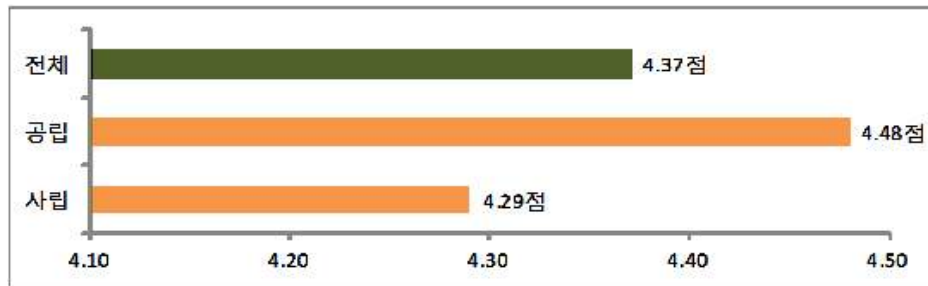
<표 IV-2-7>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수

구분	단위: 개(명)				계	x <sup>2</sup> (df)
	3개 이상	2개	1개	실시하지않음		
전체	41.1	34.1	13.7	11.1	100.0(1,048)	70.00(9)***
국공립/법인	36.0	36.8	15.8	11.4	100.0( 405)	
민간	54.5	31.1	7.6	6.8	100.0( 354)	
가정	25.6	33.1	19.8	19.8	100.0( 172)	
직장/법인의외	41.0	35.0	16.2	16.2	100.0( 117)	

\*\*\* p< .001.

## 2) 종일반 운영 - 유치원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종일반 운영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유아에 적절한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됨'이 평균 4.55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구비하고 있음'이 평균 4.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점검의 체계적 관리' 및 '정기적 안전점검'을 제외한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6] 유치원 종일반 운영

<표 IV-2-8> 유치원 종일반 운영

단위: 점(명)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전체	전체	(1,033)	4.37	0.58	5.33***
	공립	( 461)	4.48	0.54	
	사립	( 572)	4.29	0.60	
1.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체	(1,033)	4.55	0.59	5.86***
	공립	( 461)	4.67	0.50	
	사립	( 572)	4.46	0.63	
2.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예: 취침실, 조리실, 화장실 냉온수 겸용 샤워시설 등)를 구비하고 있다	전체	(1,033)	4.26	0.78	3.31**
	공립	( 461)	4.35	0.75	
	사립	( 572)	4.19	0.80	
3. 유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가정에 공지하고 있다(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전체	(1,033)	4.42	0.68	8.07***
	공립	( 461)	4.60	0.55	
	사립	( 572)	4.28	0.73	
4.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학부모 비상연락처, 각종 응급처치 약품구비, 구급요법에 관한 안내책자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1,033)	4.33	0.71	3.27**
	공립	( 461)	4.41	0.67	
	사립	( 572)	4.26	0.73	

(표 IV-2-8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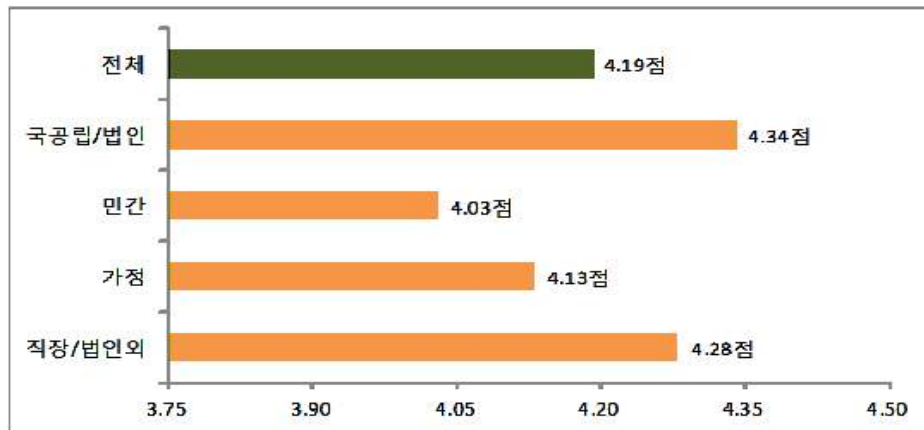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5.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점검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1,033)	4.29	1.06	1.93
	공립	( 461)	4.36	1.03	
	사립	( 572)	4.23	1.08	

\*\* p< .01, \*\*\* p< .001.

### 3. 참여권

#### 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표현과 선택의 기회 보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함’이 평균 4.50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음악,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함’이 평균 4.4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이 4.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V-2-7] 어린이집 참여권 보장 수준

&lt;표 IV-2-9&gt; 어린이집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점(%)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참여권 보장 수준 전체	전체	(2,081)	4.19	0.60	10.00***
	국공립/법인	( 779)	4.34 <sup>c</sup>	0.57	
	민간	( 706)	4.03 <sup>a</sup>	0.60	
	가정	( 359)	4.13 <sup>b</sup>	0.58	
	직장/법인외	( 237)	4.28 <sup>c</sup>	0.56	
1.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전체	(2,081)	4.20	0.68	4.81**
	국공립/법인	( 779)	4.34 <sup>c</sup>	0.63	
	민간	( 706)	4.04 <sup>a</sup>	0.71	
	가정	( 359)	4.15 <sup>b</sup>	0.65	
	직장/법인외	( 237)	4.30 <sup>c</sup>	0.65	
2. 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 활동 시 (영)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전체	(2,081)	4.16	0.70	9.42***
	국공립/법인	( 779)	4.32 <sup>b</sup>	0.67	
	민간	( 706)	3.99 <sup>a</sup>	0.71	
	가정	( 359)	4.07 <sup>a</sup>	0.69	
	직장/법인외	( 237)	4.27 <sup>b</sup>	0.66	
3.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전체	(2,081)	4.14	0.71	4.53**
	국공립/법인	( 779)	4.28 <sup>b</sup>	0.68	
	민간	( 706)	3.98 <sup>a</sup>	0.72	
	가정	( 359)	4.06 <sup>a</sup>	0.71	
	직장/법인외	( 237)	4.24 <sup>b</sup>	0.68	
4. 다양한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루어진다	전체	(2,081)	4.15	0.69	14.91***
	국공립/법인	( 779)	4.29 <sup>b</sup>	0.67	
	민간	( 706)	4.00 <sup>a</sup>	0.69	
	가정	( 359)	4.09 <sup>a</sup>	0.69	
	직장/법인외	( 237)	4.22 <sup>b</sup>	0.70	
5. 급간식 시 (영)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전체	(2,081)	4.10	0.73	3.74*
	국공립/법인	( 779)	4.26 <sup>b</sup>	0.70	
	민간	( 706)	3.95 <sup>a</sup>	0.73	
	가정	( 359)	4.10 <sup>a</sup>	0.73	
	직장/법인외	( 237)	4.18 <sup>b</sup>	0.70	
6. (영)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전체	(2,081)	4.29	0.67	8.07***
	국공립/법인	( 779)	4.43 <sup>c</sup>	0.63	
	민간	( 706)	4.12 <sup>a</sup>	0.68	
	가정	( 359)	4.26 <sup>b</sup>	0.64	
	직장/법인외	( 237)	4.36 <sup>c</sup>	0.66	

(표 IV-2-9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7. (영)유아가 의문이 생길 때 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전체	(2,081)	4.31	0.66	5.86**
	국공립/법인	( 779)	4.47 <sup>c</sup>	0.61	
	민간	( 706)	4.14 <sup>a</sup>	0.68	
	가정	( 359)	4.25 <sup>b</sup>	0.64	
	직장/법인외	( 237)	4.39 <sup>c</sup>	0.66	
8. 교사는 (영)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전체	(2,081)	4.10	0.73	8.21***
	국공립/법인	( 779)	4.26 <sup>b</sup>	0.70	
	민간	( 706)	3.95 <sup>a</sup>	0.73	
	가정	( 359)	4.10 <sup>a</sup>	0.73	
	직장/법인외	( 237)	4.18 <sup>b</sup>	0.70	
9. (영)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전체	(2,081)	4.29	0.67	6.92**
	국공립/법인	( 779)	4.43 <sup>c</sup>	0.63	
	민간	( 706)	4.12 <sup>a</sup>	0.68	
	가정	( 359)	4.26 <sup>b</sup>	0.64	
	직장/법인외	( 237)	4.36 <sup>c</sup>	0.66	
10. 일과 중 (영)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전체	(2,081)	4.31	0.66	5.687**
	국공립/법인	( 779)	4.47 <sup>c</sup>	0.61	
	민간	( 706)	4.14 <sup>a</sup>	0.68	
	가정	( 359)	4.25 <sup>b</sup>	0.64	
	직장/법인외	( 237)	4.39 <sup>c</sup>	0.66	

\* p< .05, \*\* p< .01, \*\*\* p< .001, a≠b≠c.

한편 면담에서는 위에 제시된 보육활동 시에 참여권 실천 노력과 그 효과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참여권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1, 3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3은 게임 활동, 의사 결정 시 투표, 토의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표준보육과정에도 게임 등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을 모두 다 아이들이 정하게 하거든요. 확실적으로 나눈다거나 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말이든 글이든.....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가 큰 틀은 만들어 주되, 나머지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채워 나가도록.....(보육교사3)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20인 만 4, 5세 담당 보육교사 1은 보육활동 시에 많은 수의 아동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아동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투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 반대 입장이라도 수긍하기가 가장 수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교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한되고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도 아동들의 참여권과 선택권을 많이 보장하려고 노력해요.(보육교사1)

보육교사 1에 의하면, 간식은 반 전체가 한꺼번에 대그룹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으나, 스스로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한 결과, 간식을 자유롭게 먹은 이후 영유아 스스로 놀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똑같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도 자율간식으로 바꿨거든요.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지금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놀이를 중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간식 책상 영역을 하나 만들고, 먹고 싶은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먹고..... 다시 놀이를 시작하고, 놀이의 시작과 마무리는 아동들이 하고 있거든요(보육교사1)

또한 급·간식 제공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3은 자율배식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게 됨에 따라 편식 습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소근육 발달 효과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율배식을 실시하고..... 대신 약속을 정했어요. 규칙을 정해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 대신 남기지 말고, 먹기 싫은 것은 조금이라도 먹어 보자. 그렇게 약속을 정해서 했더니 2개월 반 만에 편식 습관이 거의 없어지고 잔반도 거의 안 나오고, 소근육 발달이 조금 미흡했던 아이들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보육교사3)

어린이집 원장 3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권리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서로의 권리 주장 등으로 충돌이 일어나지만 점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하였다.

초기에는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육활동 중에 충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럴 경우 아이들 사이에서 토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어린이집 원장3)

아동권리 존중 보육 실천의 효과로서 보육교사 4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낀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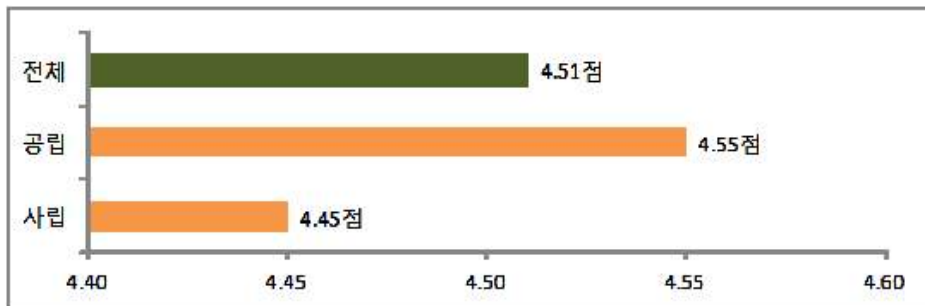
교실이 누구 것이냐고 질문하면, 예전에는 선생님 것, 원장님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 모두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교실이 배치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교재교구가 준비 되어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보육교사4)

자유선택활동 시에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경우, 전인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편중된 놀이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육교사 6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때 교사는 단지 기회만 제공하고, 모든 활동을 영유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토록 하여 기존에 활동을 선택하지 않았던 아동들의 참여도까지 높였다고 언급하였다.

역할놀이는 너무 싫어하는 아동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필요한 준비물과 역할을 정하고, 시작과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정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준비했고 환경도 만들었고 역할도 정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매우 높았어요. (보육교사6)

## 나. 유치원

유치원 교육활동 중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음악, 동작, 미술 활동 등 예술활동 시 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함’이 평균 4.58 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간식 시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함’이 평균 4.4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8] 유치원 참여권 보장 수준

각 문항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평균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함'을 제외한 이외의 문항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2-10> 유치원 참여권 보장 수준

문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단위: 점(명)
참여권 보장 수준 전체	전체	(1,040)	4.51	0.44		
	공립	( 573)	4.55	0.43	3.56***	
	사립	( 467)	4.45	0.44		
1.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전체	(1,040)	4.52	0.55		
	공립	( 573)	4.53	0.57	0.84	
	사립	( 467)	4.51	0.52		
2. 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전체	(1,040)	4.58	0.51		
	공립	( 573)	4.61	0.50	2.62**	
	사립	( 467)	4.53	0.52		
3. 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 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전체	(1,040)	4.48	0.57		
	공립	( 573)	4.53	0.56	2.95**	
	사립	( 467)	4.43	0.58		
4. 다양한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유아 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루어진다	전체	(1,040)	4.54	0.55		
	공립	( 573)	4.59	0.55	3.43**	
	사립	( 467)	4.47	0.55		
5. 급·간식 시 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 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전체	(1,040)	4.43	0.60		
	공립	( 573)	4.47	0.59	2.65**	
	사립	( 467)	4.37	0.61		
6. 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 를 표현한다	전체	(1,040)	4.49	0.54		
	공립	( 573)	4.55	0.52	4.08***	
	사립	( 467)	4.41	0.56		
7. 유아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 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준다	전체	(1,040)	4.50	0.54		
	공립	( 573)	4.57	0.51	4.53***	
	사립	( 467)	4.42	0.56		
8. 교사는 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 해 함께 이야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전체	(1,040)	4.56	0.52		
	공립	( 573)	4.60	0.51	2.49*	
	사립	( 467)	4.52	0.52		
9. 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전체	(1,040)	4.51	0.55		
	공립	( 573)	4.54	0.55	2.10*	
	사립	( 467)	4.47	0.56		
10. 일과 중 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 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관심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전체	(1,040)	4.45	0.54		
	공립	( 573)	4.49	0.55	2.73**	
	사립	( 467)	4.40	0.54		

\* p < .05, \*\* p < .01, \*\*\* p < .001.



면담에서 유치원 원장 2는 이외의 다른 권리 영역들에 비해 참여권 보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솔직히 안전, 보호, 건강, 영양관리, 물리적 환경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신경을 쓰면 보장이 될 부분들이고요. 아동을 직접 대해야 하는, 상호작용 등에서 아이들 참여권 보장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유치원 원장2)

유치원 교사 1도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교사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의 언어, 행동 전반의 변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아도 교사들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려 하고,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언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들이 유아의 선택권이나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 참여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유치원 교사1)

####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권리 영역별 실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보호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 위생·청결관리 수준은 급식관리와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기저귀 가는 공간과 개별 침구 사용 등 위생·청결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관리 평가는 평균 4.68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놀잇감의 정기적인 소독, 화장실 및 세면장 바닥 건조, 청소관련 기록 관련 항목은 이외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평가인증 등 기관 평가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육실과 공유 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배식된 음식을 당일 소모한다는 항목에서 실천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영양관리 수준은 평균 4.62점(만점 5점), 건강관리 수준은 평균

4.46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영양관리 부문 중 '균형 잡힌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인스턴트 위주의 간식 제공을 피한다'는 항목과 건강관리 부문 중 '바깥놀이 시 청결관리와 모래소독 연 2회 실시'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건강 및 영양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보호 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 시설 안전의 경우 특히 창문보호대와 난간 설치, 옥외놀이터의 바닥 안전의 경우 미설치율이 각각 12.8%, 19.5%로 나타나, 미설치 시설의 경우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원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수준의 평가는 평균 4.61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인계 시 인계과정의 문서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수준은 평균 4.53점(만점 5점),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평균 4.39점(만점 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와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으나(평균 4.39점, 만점 5점), 아동학대 발견 시 즉각적으로 신고한다는 응답은 42.7%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학대 예방 및 조치 수준은 이외의 안전보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 수준이 낮아 학대 예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안전보호 수준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 4.62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 대상 안전교육과 실내외 시설 점검 시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수준과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각각 평균 4.43점과 4.15점으로,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의 안전보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발달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에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 4.41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항목 중 실외활동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천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관심도에 비해 이해와 적용 수준이 높게 나타므로 영유아의 이상적인 발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프로그램과 해설서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표준보육과정의 평가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별활동 과목 수는 3개 이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므로 영유아의 개별 의사 존중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에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평균 4.37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항목 중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주 3회 이상), 유아의 참여 유발 발문과 교사와 유아간의 질적 상호작용, 개별 유아의 발달 상황 기록 및 점검, 활용 등에 대한 실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등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해당 항목은 모두 교사 개인의 노력 이외에도 높은 유아 대 교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은 평균 4.25점(만점 5점)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일반 운영은 평균 4.55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나 사후관리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평균 4.41점, 만점 5점)에 비해 유치원(평균 4.51점, 만점 5점)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권리 인식 수준과 일관된 결과로서 유치원의 참여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도가 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참여권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기관 유형별 참여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권리 영역 중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므로 육아지원기관 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일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아동학대 예방 등 생존·보호권조차 미흡한 수준을 보이므로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가 요

구된다. 또한 기관별로는 유치원의 경우는 보호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부분의 권리 영역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권리 보장 수준이 이외의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V.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교육 경험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과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그리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분석하였다.

### 1.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 가.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인지와 이해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 있다' 76.5%, '들어본 적 없다' 23.5%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81.8%)에 비해 가정(72.4%)과 민간어린이집(72.0%)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어린이집/유치원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	단위: %(명), 점
					$\chi^2(df)$
어린이집	전체	23.5	76.5	100.0(2,081)	24.24(3)***
	국공립/법인	18.2	81.8	100.0( 779)	
	민간	28.0	72.0	100.0( 706)	
	가정	27.6	72.4	100.0( 359)	
	직장/법인의외	21.1	78.9	100.0( 237)	
유치원	전체	26.0	74.0	100.0(2,073)	16.73(1)***
	공립	22.1	77.9	100.0(1,034)	
	사립	29.9	70.1	100.0(1,039)	

\*\*\* p< .001.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들어본 적 있다' 74.0%, '들어본 적 없다' 26.0%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교사/원장

구분	단위: %(명), 점			$\chi^2(df)$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	
전체	24.7	75.3	100.0(4,154)	46.12(3)***
어린이집원장	20.2	79.8	100.0(1,033)	
어린이집교사	26.7	73.3	100.0(1,048)	
유치원원장	20.7	79.3	100.0(1,033)	
유치원교사	31.3	68.8	100.0(1,040)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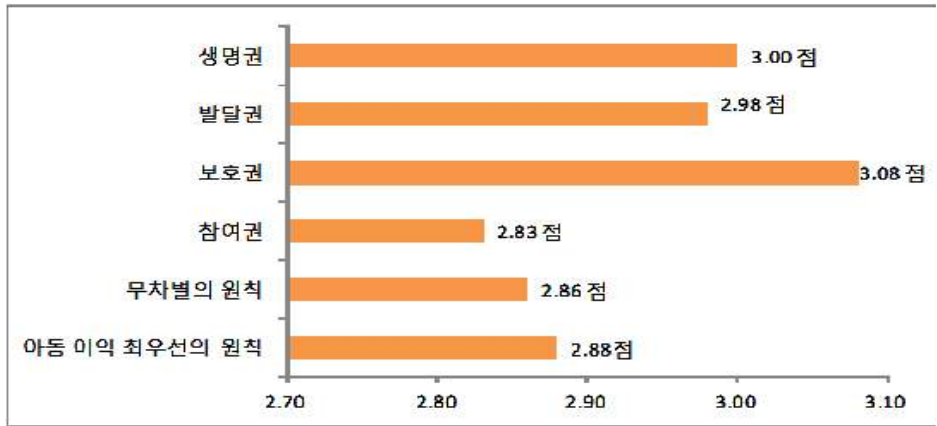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1은 아동권리 존중 보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지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 인식이 곧 활동 전반에 반영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동권리(존중)보육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교사들의 의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동과의 활동은 일상생활 그 자체거든요. (어린이집 원장1)

## 2)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이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보호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3.08점(만점 4점)으로 가장 높고, 참여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2.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평균은 '전혀 모른다' 1점, '들어본 적 있다' 2점, '내용을 알고 있다' 3점,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 있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4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그림 V-1-1]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어린이집

<표 V-1-3>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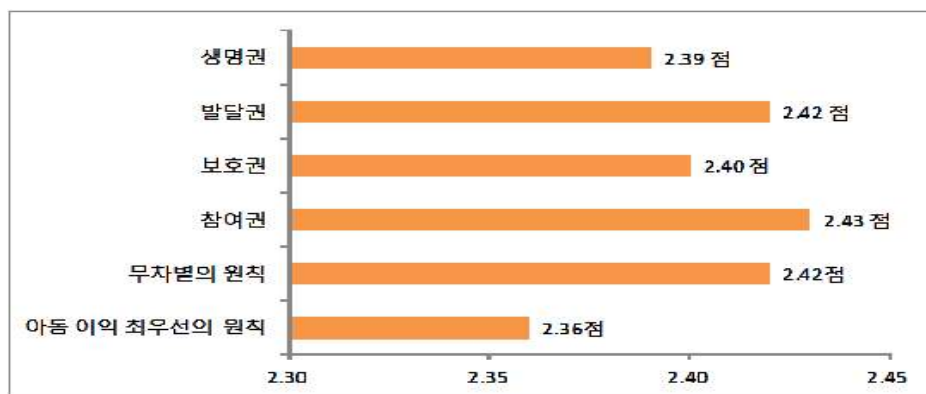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 있다	계
생 명 권	전체	2.4	25.1	43.0	29.5	100.0(2,081)
	국공립/법인	1.7	25.0	42.5	30.8	100.0( 779)
	민간	3.0	25.2	43.6	28.2	100.0( 706)
	가정	3.1	24.0	45.4	27.6	100.0( 359)
	직장/법인의외	2.1	27.0	38.8	32.1	100.0( 237)
발 달 권	전체	3.3	24.2	43.4	29.1	100.0(2,081)
	국공립/법인	2.7	23.0	43.4	30.9	100.0( 779)
	민간	4.1	23.7	44.8	27.5	100.0( 706)
	가정	2.8	27.9	42.9	26.5	100.0( 359)
	직장/법인의외	3.8	24.5	40.1	31.6	100.0( 237)
보 호 권	전체	1.7	22.2	42.2	33.9	100.0(2,081)
	국공립/법인	1.5	22.1	40.8	35.6	100.0( 779)
	민간	1.8	21.4	43.3	33.4	100.0( 706)
	가정	1.7	24.5	43.2	30.6	100.0( 359)
	직장/법인의외	2.1	21.5	41.8	34.6	100.0( 237)

(표 V-1-3 계속)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을 알고있다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계
참여권	전체	5.9	28.4	41.9	23.7	100.0(2,081)
	국공립/법인	6.5	28.0	40.6	24.9	100.0( 779)
	민간	6.2	28.5	41.9	23.4	100.0( 706)
	가정	3.9	30.9	41.8	23.4	100.0( 359)
	직장/법인외	5.9	26.2	46.4	21.5	100.0( 237)
무차별의 원칙	전체	7.3	27.8	36.5	28.4	100.0(2,081)
	국공립/법인	6.9	25.2	36.1	31.8	100.0( 779)
	민간	8.1	29.2	35.7	27.1	100.0( 706)
	가정	6.4	31.5	36.5	25.6	100.0( 359)
	직장/법인외	7.2	26.6	40.5	25.7	100.0( 237)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전체	5.6	28.4	38.6	27.4	100.0(2,081)
	국공립/법인	5.1	29.1	36.8	28.9	100.0( 779)
	민간	6.1	27.5	40.1	26.3	100.0( 706)
	가정	5.0	29.8	37.6	27.6	100.0( 359)
	직장/법인외	6.8	26.6	41.4	25.3	100.0( 237)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보육교직원에 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2.36점(만점 4점)으로 가장 낮고, 참여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2.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한하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이해도가 공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2.02, p<0.05$ ).



[그림 V-1-2]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유치원



〈표 V-1-4〉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을 알고있다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계
생명권	전체	15.9	39.9	33.3	10.9	100.0(2,073)
	공립	17.1	37.3	32.6	13.0	100.0(1,034)
	사립	14.7	42.4	34.1	8.8	100.0(1,039)
발달권	전체	17.3	36.1	33.9	12.7	100.0(2,073)
	공립	18.2	33.3	33.8	14.8	100.0(1,034)
	사립	16.5	38.9	34.1	10.6	100.0(1,039)
보호권	전체	19.0	35.1	32.7	13.2	100.0(2,073)
	공립	20.5	32.3	30.9	16.3	100.0(1,034)
	사립	17.5	37.9	34.5	10.1	100.0(1,039)
참여권	전체	15.7	37.4	34.8	12.0	100.0(2,073)
	공립	18.1	34.6	35.2	12.1	100.0(1,034)
	사립	13.4	40.2	34.5	11.9	100.0(1,039)
무차별의 원칙	전체	19.0	35.2	31.2	14.7	100.0(2,073)
	공립	21.8	32.9	29.8	15.6	100.0(1,034)
	사립	16.2	37.4	32.6	13.8	100.0(1,039)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전체	20.1	36.6	30.9	12.4	100.0(2,073)
	공립	23.5	34.8	28.3	13.3	100.0(1,034)
	사립	16.7	38.4	33.4	11.5	100.0(1,03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응답자의 소속 기관과 지위에 따라 분석해보면, 모든 원칙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이해도가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들의 보호권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의 아동보호 관련 규정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보호권에 대한 이해도는 이외의 권리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권리 영역 별 실태에 의하면, 유치원의 보호권 보장 수준이 어린이집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유치원의 보호권 관련 규정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표 V-1-5〉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원장/교사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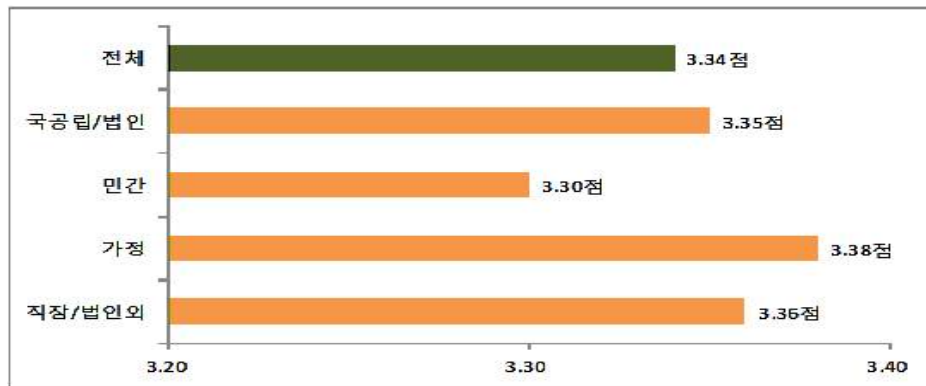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 본적 있다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을 잘알고 적용하 고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생 명 권	전체	9.1	32.5	38.2	20.2	100.0(4,154)	2.69	0.89	301.513***
	어린이집원장	1.8	24.1	42.8	31.3	100.0(1,033)	3.03 <sup>a</sup>	0.79	
	어린이집교사	3.0	26.1	43.1	27.8	100.0(1,048)	2.96 <sup>b</sup>	0.81	
	유치원원장	26.9	42.3	27.6	3.2	100.0(1,033)	2.07 <sup>c</sup>	0.82	
	유치원교사	5.0	37.5	39.0	18.5	100.0(1,040)	2.71 <sup>d</sup>	0.82	
발 달 권	전체	10.3	30.1	38.7	20.9	100.0(4,154)	2.70	0.91	255.981***
	어린이집원장	3.0	24.0	41.3	31.7	100.0(1,033)	3.02 <sup>a</sup>	0.82	
	어린이집교사	3.6	24.4	45.4	26.5	100.0(1,048)	2.95 <sup>a</sup>	0.81	
	유치원원장	28.7	37.5	29.0	4.8	100.0(1,033)	2.10 <sup>b</sup>	0.87	
	유치원교사	6.1	34.7	38.8	20.5	100.0(1,040)	2.74 <sup>c</sup>	0.85	
보 호 권	전체	10.4	28.6	37.4	23.6	100.0(4,154)	2.74	0.93	447.458***
	어린이집원장	1.5	20.6	41.0	36.8	100.0(1,033)	3.13 <sup>a</sup>	0.79	
	어린이집교사	1.9	23.8	43.3	31.0	100.0(1,048)	3.03 <sup>b</sup>	0.79	
	유치원원장	34.3	38.1	24.7	2.9	100.0(1,033)	1.96 <sup>c</sup>	0.84	
	유치원교사	3.8	32.1	40.6	23.5	100.0(1,040)	2.84 <sup>d</sup>	0.83	
참 여 권	전체	10.8	32.9	38.4	17.9	100.0(4,154)	2.63	0.90	94.705***
	어린이집원장	6.7	28.4	40.4	24.6	100.0(1,033)	2.83 <sup>a</sup>	0.88	
	어린이집교사	5.2	28.5	43.4	22.9	100.0(1,048)	2.84 <sup>a</sup>	0.83	
	유치원원장	21.5	36.9	33.5	8.1	100.0(1,033)	2.28 <sup>b</sup>	0.89	
	유치원교사	10.0	38.0	36.2	15.9	100.0(1,040)	2.58 <sup>c</sup>	0.87	
무차별 의원칙	전체	13.1	31.5	33.9	21.6	100.0(4,154)	2.64	0.96	104.763***
	어린이집원장	8.2	28.1	35.1	28.6	100.0(1,033)	2.84 <sup>a</sup>	0.93	
	어린이집교사	6.3	27.5	37.9	28.3	100.0(1,048)	2.88 <sup>a</sup>	0.89	
	유치원원장	26.4	33.8	29.0	10.7	100.0(1,033)	2.24 <sup>b</sup>	0.96	
	유치원교사	11.5	36.5	33.4	18.6	100.0(1,040)	2.59 <sup>c</sup>	0.92	
아동 이익 최우선 의원칙	전체	12.8	32.5	34.7	19.9	100.0(4,154)	2.62	0.94	160.156***
	어린이집원장	6.1	27.4	38.3	28.2	100.0(1,033)	2.89 <sup>a</sup>	0.89	
	어린이집교사	5.2	29.4	38.8	26.6	100.0(1,048)	2.87 <sup>a</sup>	0.87	
	유치원원장	29.5	34.8	28.6	7.2	100.0(1,033)	2.13 <sup>b</sup>	0.92	
	유치원교사	10.7	38.5	33.2	17.7	100.0(1,040)	2.58 <sup>c</sup>	0.90	

\*\*\* p &lt; .001, a ≠ b ≠ c ≠ d.

## 나.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실행

### 1)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실행 노력 수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활동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 실행 정도를 질문한 결과, '노력한다' 56.8%, '매우 노력한다' 38.8%로 나타났으며 (표 V-1-6 참고), 평균 3.34점(만점 4점)을 보여 대체로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평균은 '노력하지 않는다' 1점, '약간 노력한다' 2점, '노력한다' 3점, '매우 노력한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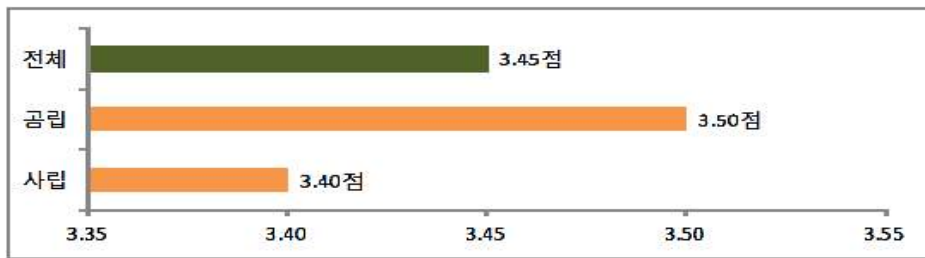
[그림 V-1-3]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어린이집

<표 V-1-6>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노력한다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계	
						전체
어린이집	전체	38.8	56.8	4.1	0.3	100.0(1,592)
	국공립/법인	38.6	57.8	3.5	0.2	100.0( 637)
	민간	36.6	57.3	5.9	0.2	100.0( 508)
	가정	41.2	56.2	2.7	0.0	100.0( 260)
	직장/법인의외	42.2	52.9	3.7	1.1	100.0( 187)
유치원	전체	48.8	47.7	3.3	0.2	100.0(1,534)
	공립	52.0	45.9	2.1	0.0	100.0( 806)
	사립	45.3	49.6	4.7	0.4	100.0(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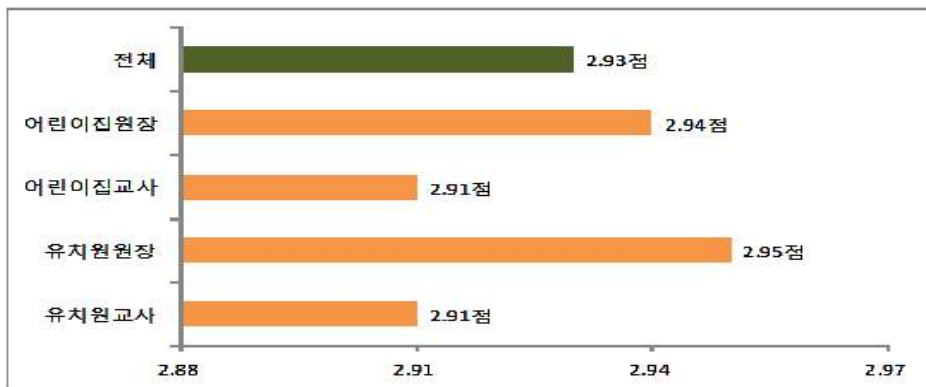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매우 노력한다' 48.8%, '노력한다' 47.7%로 나타났다으며, 평균 3.45점(만점 4점)으로 대체로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6 참조). 이를 기관 유형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아동권리 실천 노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t=3.43, p<0.01$ ).



주: 평균은 '노력하지 않는다' 1점, '약간 노력한다' 2점, '노력한다' 3점, '매우 노력한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그림 V-1-4]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유치원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의 아동권리 실행 노력 수준은 평균(2.93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2.94점, 2.95점)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인지 수준은 2.91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강화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 평균 '노력하지 않는다' 1점, '약간 노력한다' 2점, '노력한다' 3점, '매우 노력한다'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그림 V-1-5]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원장/교사

<표 V-1-7>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 노력 수준-원장/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노력한다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계
전체	43.7	52.3	3.7	0.2	100.0(3,126)
어린이집원장	48.9	48.3	2.7	0.1	100.0( 824)
어린이집교사	28.0	65.9	5.7	0.4	100.0( 768)
유치원원장	57.4	40.3	2.3	0.0	100.0( 819)
유치원교사	39.0	56.1	4.5	0.4	100.0( 715)

유치원 원장 2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천 사례로서 부모들의 참여와 상호작용 기회 제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특히 그림책과 식물을 소재로 유아들과 수업한 내용을 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그림책과 식물을 통해 부모교육을 해요. 일 년에 권리에 관한 책을 20권 선정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도 그 책을 읽게 하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주말마다 가정으로 보내요. 이런 책 보고 상호작용하라고 보내주고..... 유치원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부모님들과 그와 관련된 식물 워크샵을 해요. (유치원 원장2)

## 2)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1-8>과 같다.

<표 V-1-8>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무차별 원칙	아동이 익취우 선원칙	없음	계	$\chi^2(df)$	
어린이집	전체	2.6	2.4	10.3	34.4	3.7	23.0	23.6	100.0(1,592)	
	국공립/법인	1.9	2.2	11.1	35.3	3.1	24.2	22.1	100.0( 637)	
	민간	3.0	3.0	9.6	34.3	4.5	22.2	23.4	100.0( 508)	18.71
	가정	4.2	2.7	6.9	35.4	3.8	23.1	23.8	100.0( 260)	(18)
	직장/법인의외	1.6	1.6	13.9	29.9	3.2	20.9	28.9	100.0( 187)	
유치원	전체	2.5	2.9	16.4	27.5	4.4	22.0	24.2	100.0(2,073)	
	공립	2.4	3.3	17.4	30.6	5.0	20.1	21.2	100.0(1,034)	18.74
	사립	2.7	2.3	15.4	24.0	3.8	24.2	27.5	100.0(1,039)	(6)**

\*\* p< .01.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참여권이 34.4%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고, 다음으로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23.0%), 보호권(10.3%), 무차별의 원칙(3.7%), 생명권(2.6%), 발달권(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참여권 27.5%,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22.0%, 보호권 16.4%, 무차별의 원칙 4.4%, 발달권 2.9%, 생명권 2.5% 순으로 나타났다(표 V-1-9 참조).

이를 응답자의 소속 기관과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참여권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해당 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는 보호권 실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권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보호권 실행을 위한 관련 교육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표 V-1-9> 실행이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원장/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무차별 원칙	아동이 익최우 선원칙	없음	계	$\chi^2(df)$
전체	2.6	2.7	13.3	31.0	4.1	22.5	23.9	100.0(3,126)	
어린이집원장	2.4	2.7	10.8	33.7	3.3	22.1	25.0	100.0( 824)	
어린이집교사	2.7	2.2	9.8	35.0	4.2	24.0	22.1	100.0( 768)	47.68
유치원원장	2.8	3.5	16.1	28.4	3.9	20.3	24.9	100.0( 819)	(18)***
유치원교사	2.2	2.1	16.8	26.4	5.0	24.1	23.4	100.0( 715)	

\*\*\* p< .001.

한편 참여권 실행의 어려움은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보육교사 4는 아동에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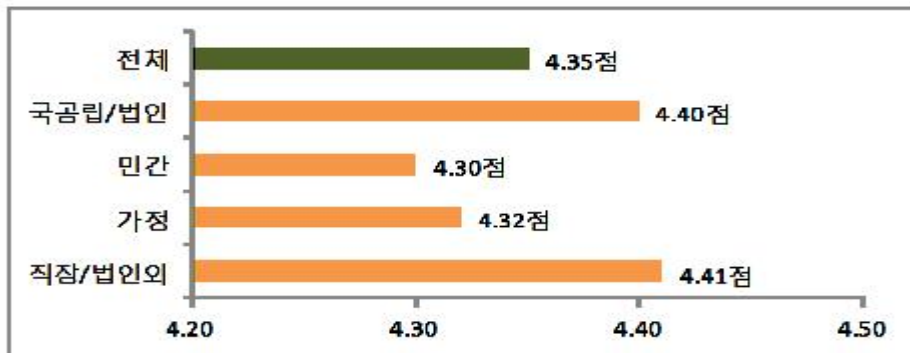
영아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캐치하기 어렵거나, 내가 과연 이 아이의 의견을 잘 수용한 것인지, 그 부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치마는 왜 입고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을 위해 제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 개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대답해야 하는지 의견이 들어요.(보육교사4)

보육·교육활동 시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은 일회성 교육 등을 통해 온전히 실천되기 어려우므로 참여권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사 대상 교육이 요구되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천 사례집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참여권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 다.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 1)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우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은 평균 4.35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평균 4.61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5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그림 V-1-6]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어린이집

〈표 V-1-10〉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어린이집

단위: %(명), 점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권리 인식 수준 전체	전체	(2,081)	4.35	0.45	8.60***
	국공립/법인	( 779)	4.40 <sup>a</sup>	0.43	
	민간	( 706)	4.30 <sup>b</sup>	0.46	
	가정	( 359)	4.32 <sup>b</sup>	0.45	
	직장/법인외	( 237)	4.41 <sup>a</sup>	0.41	
1.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체	(2,081)	4.59	0.54	9.31***
	국공립/법인	( 779)	4.64 <sup>a</sup>	0.51	
	민간	( 706)	4.53 <sup>b</sup>	0.58	
	가정	( 359)	4.54 <sup>b</sup>	0.54	
	직장/법인외	( 237)	4.70 <sup>a</sup>	0.50	
2.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전체	(2,081)	3.87	0.98	0.23
	국공립/법인	( 779)	3.88	1.00	
	민간	( 706)	3.88	0.93	
	가정	( 359)	3.86	0.96	
	직장/법인외	( 237)	3.82	1.07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전체	(2,081)	4.49	0.61	9.98***
	국공립/법인	( 779)	4.54 <sup>a</sup>	0.58	
	민간	( 706)	4.41 <sup>b</sup>	0.64	
	가정	( 359)	4.45 <sup>b</sup>	0.60	
	직장/법인외	( 237)	4.61 <sup>a</sup>	0.55	
4.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 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협에 처하기 쉽다	전체	(2,081)	4.37	0.69	2.77*
	국공립/법인	( 779)	4.35 <sup>a</sup>	0.73	
	민간	( 706)	4.34 <sup>a</sup>	0.68	
	가정	( 359)	4.37 <sup>a</sup>	0.68	
	직장/법인외	( 237)	4.49 <sup>b</sup>	0.61	
5. 영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전체	(2,081)	4.34	0.71	2.53
	국공립/법인	( 779)	4.38	0.69	
	민간	( 706)	4.29	0.74	
	가정	( 359)	4.35	0.71	
	직장/법인외	( 237)	4.38	0.66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영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전체	(2,081)	3.95	0.99	3.62*
	국공립/법인	( 779)	4.02 <sup>a</sup>	0.95	
	민간	( 706)	3.86 <sup>b</sup>	1.02	
	가정	( 359)	3.92	0.98	
	직장/법인외	( 237)	4.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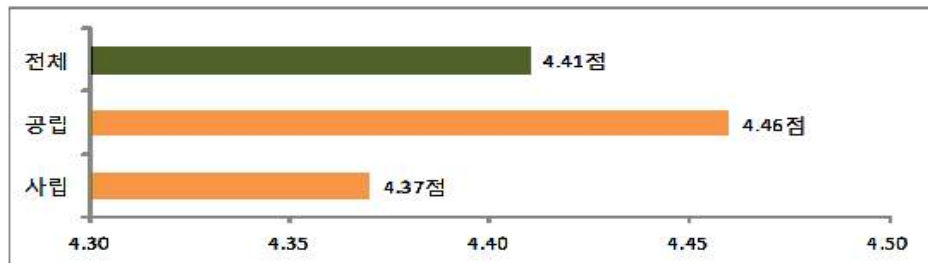
(표 V-1-10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7. 영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영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2,081)	4.51	0.59	5.09**
	국공립/법인	( 779)	4.56 <sup>a</sup>	0.57	
	민간	( 706)	4.46 <sup>b</sup>	0.61	
	가정	( 359)	4.47 <sup>b</sup>	0.61	
	직장/법인외	( 237)	4.57 <sup>a</sup>	0.54	
8.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전체	(2,081)	4.26	0.71	3.99**
	국공립/법인	( 779)	4.31 <sup>a</sup>	0.68	
	민간	( 706)	4.19 <sup>b</sup>	0.73	
	가정	( 359)	4.23	0.70	
	직장/법인외	( 237)	4.29	0.72	
9. 영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체	(2,081)	4.56	0.53	10.79***
	국공립/법인	( 779)	4.64 <sup>a</sup>	0.50	
	민간	( 706)	4.50 <sup>b</sup>	0.56	
	가정	( 359)	4.49 <sup>b</sup>	0.53	
	직장/법인외	( 237)	4.61 <sup>a</sup>	0.51	
10.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전체	(2,081)	4.59	0.52	14.32***
	국공립/법인	( 779)	4.67 <sup>a</sup>	0.50	
	민간	( 706)	4.51 <sup>b</sup>	0.55	
	가정	( 359)	4.53 <sup>b</sup>	0.54	
	직장/법인외	( 237)	4.65 <sup>a</sup>	0.49	

주: 평균(표준편차)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이하 5점 척도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동일 적용함.

\*\* p< .01, \*\*\* p< .001, a≠b.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은 평균 4.41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1-7] 유아 권리 인식 수준-유치원

&lt;표 V-1-11&gt; 유아 권리 인식 수준-유치원

단위: %(명), 점

항목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권리 인식 수준 전체	전체	(2,073)	4.41	0.44	4.88***
	공립	(1,034)	4.46	0.43	
	사립	(1,039)	4.37	0.44	
1. 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체	(2,073)	4.67	0.52	2.15*
	공립	(1,034)	4.69	0.51	
	사립	(1,039)	4.64	0.52	
2. 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전체	(2,073)	4.12	0.92	4.85***
	공립	(1,034)	4.21	0.88	
	사립	(1,039)	4.02	0.94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전체	(2,073)	4.56	0.55	3.52***
	공립	(1,034)	4.60	0.55	
	사립	(1,039)	4.52	0.55	
4. 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전체	(2,073)	4.48	0.60	4.87***
	공립	(1,034)	4.55	0.58	
	사립	(1,039)	4.42	0.62	
5. 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전체	(2,073)	4.35	0.69	2.45*
	공립	(1,034)	4.38	0.69	
	사립	(1,039)	4.31	0.68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영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전체	(2,073)	4.03	0.92	4.73***
	공립	(1,034)	4.12	0.90	
	사립	(1,039)	3.93	0.93	
7. 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영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2,073)	4.54	0.58	3.77***
	공립	(1,034)	4.58	0.57	
	사립	(1,039)	4.49	0.58	
8.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전체	(2,073)	4.23	0.71	2.51*
	공립	(1,034)	4.27	0.71	
	사립	(1,039)	4.20	0.71	
9. 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체	(2,073)	4.57	0.54	0.4
	공립	(1,034)	4.58	0.54	
	사립	(1,039)	4.57	0.54	
10.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전체	(2,073)	4.60	0.52	1.43
	공립	(1,034)	4.62	0.52	
	사립	(1,039)	4.59	0.53	

\* p&lt; .05, \*\*\* p&lt; .001.

한편 전체 응답자의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은 평균 4.38점이며, 응답자 대상 별로는 유치원 원장이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인 반면, 어린이집 교사가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표 V-1-12〉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원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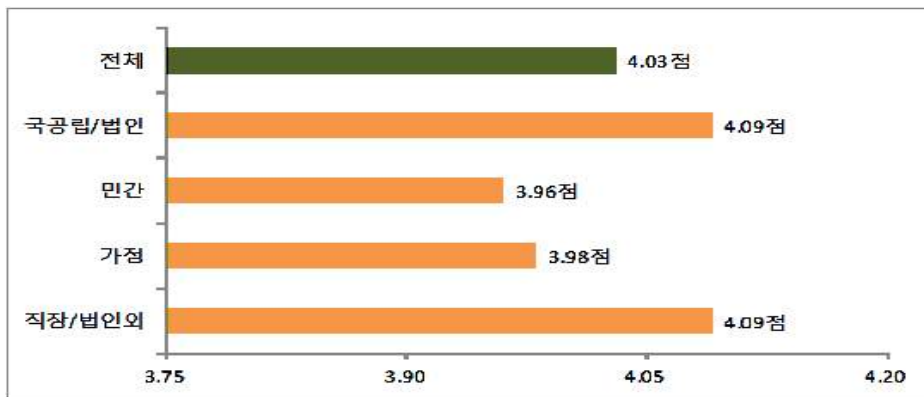
단위: %(명), 점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권리 인식 수준 전체	전체	(4,154)	4.38	0.44	14.20***
	어린이집원장	(1,033)	4.39 <sup>a</sup>	0.43	
	어린이집교사	(1,048)	4.32 <sup>b</sup>	0.46	
	유치원원장	(1,033)	4.44 <sup>c</sup>	0.43	
	유치원교사	(1,040)	4.39 <sup>a</sup>	0.45	

\*\*\* p< .001, a≠b≠c≠d.

## 2)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소속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이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4.03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평균 4.38점)의 실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제공을 계획할 경우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평균 3.45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보육활동 시 아동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나, 보육계획의 수립 시 아동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V-1-8]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어린이집

각 문항에 대해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실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램 운영 시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 고려',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의 참여 기회 차별 제공', '영유아 존엄성 및 개별 견해 존중'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3〉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어린이집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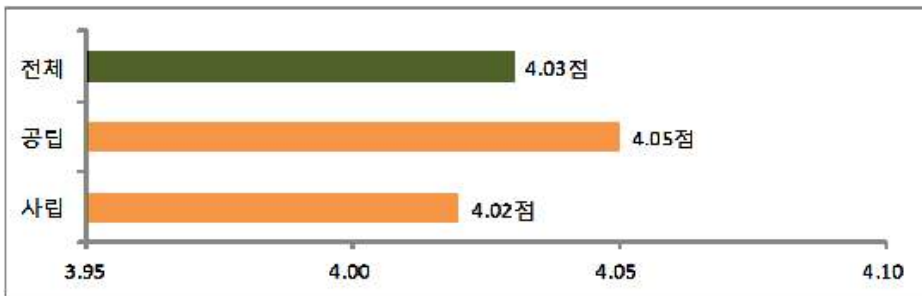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권리 실행 수준 전체	전체	(2,081)	4.03	0.44	13.77***
	국공립/법인	( 779)	4.09 <sup>a</sup>	0.43	
	민간	( 706)	3.96 <sup>b</sup>	0.45	
	가정	( 359)	3.98 <sup>b</sup>	0.41	
	직장/법인외	( 237)	4.09 <sup>a</sup>	0.45	
1.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 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전체	(2,081)	4.38	0.57	9.98***
	국공립/법인	( 779)	4.42	0.55	
	민간	( 706)	4.29 <sup>a</sup>	0.58	
	가정	( 359)	4.38 <sup>b</sup>	0.54	
	직장/법인외	( 237)	4.48 <sup>c</sup>	0.59	
2.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 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2,081)	4.29	0.67	41.74***
	국공립/법인	( 779)	4.45 <sup>a</sup>	0.59	
	민간	( 706)	4.20 <sup>b</sup>	0.69	
	가정	( 359)	4.03 <sup>c</sup>	0.73	
	직장/법인외	( 237)	4.41 <sup>a</sup>	0.59	
3. 보육과정에 영유아 권리교육 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2,081)	3.88	0.83	2.06
	국공립/법인	( 779)	3.92	0.82	
	민간	( 706)	3.89	0.81	
	가정	( 359)	3.79	0.84	
	직장/법인외	( 237)	3.89	0.92	
4. 나는 영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역코딩)	전체	(2,081)	4.17	1.02	1.60
	국공립/법인	( 779)	4.21	1.01	
	민간	( 706)	4.11	1.03	
	가정	( 359)	4.18	1.00	
	직장/법인외	( 237)	4.23	1.02	
5. 나는 영유아의 성별·장애여부 에 따라 참여기회를 달리 적 용한 적이 있다(역코딩)	전체	(2,081)	3.80	1.15	4.24**
	국공립/법인	( 779)	3.86 <sup>a</sup>	1.12	
	민간	( 706)	3.68 <sup>b</sup>	1.16	
	가정	( 359)	3.80	1.16	
	직장/법인외	( 237)	3.93 <sup>a</sup>	1.16	

(표 V-1-13 계속)

항목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6.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 등을 계획할 경우(예: 교육계획 수립 시),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전체	(2,081)	3.45	0.84	1.70
	국공립/법인	( 779)	3.50	0.83	
	민간	( 706)	3.40	0.82	
	가정	( 359)	3.43	0.85	
	직장/법인외	( 237)	3.46	0.88	
7. 보육 활동 시에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전체	(2,081)	4.19	0.60	6.53***
	국공립/법인	( 779)	4.26 <sup>a</sup>	0.59	
	민간	( 706)	4.13 <sup>b</sup>	0.61	
	가정	( 359)	4.14 <sup>b</sup>	0.58	
	직장/법인외	( 237)	4.24 <sup>a</sup>	0.59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영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전체	(2,081)	4.07	0.67	2.45
	국공립/법인	( 779)	4.11	0.66	
	민간	( 706)	4.02	0.71	
	가정	( 359)	4.06	0.62	
	직장/법인외	( 237)	4.10	0.67	

\*\* p< .01, \*\*\* p< .001, a≠b≠c.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권리 실행 수준은 평균 4.03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유아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평균 4.40점)가 가장 높은 실행 수준을 보인 반면, '서비스 제공을 계획할 경우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평균 3.48점)의 실행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9] 유아 권리 실행 수준-유치원

각 문항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 시 유아의 개

별적 차이 고려', '영유아의 참여 기회 차별 제공', '유아의 성별 및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영유아 존엄성 및 개별 견해 존중', '의사결정 시 유아의 이익에 근거함' 총 5개 문항에서 공립유치원의 유아 권리 실행 수준이 사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항목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4〉 유아 권리 실행 수준-유치원

항목	기관유형	N	평균	단위: %(명), 점	
				표준편차	F
권리 실행 수준 전체	전체	(2,073)	4.03	0.45	1.78
	공립	(1,034)	4.05	0.46	
	사립	(1,039)	4.02	0.44	
1.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같은 연령대의 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전체	(2,073)	4.40	0.56	2.11*
	공립	(1,034)	4.42	0.55	
	사립	(1,039)	4.37	0.57	
2.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2,073)	4.16	0.68	-2.67**
	공립	(1,034)	4.12	0.69	
	사립	(1,039)	4.20	0.67	
3. 보육과정에 유아권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2,073)	3.81	0.89	-0.87
	공립	(1,034)	3.79	0.92	
	사립	(1,039)	3.83	0.85	
4. 나는 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역코딩)	전체	(2,073)	4.21	1.05	0.90
	공립	(1,034)	4.23	1.09	
	사립	(1,039)	4.18	1.00	
5. 나는 유아의 성별·장애여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역코딩)	전체	(2,073)	3.83	1.16	2.75**
	공립	(1,034)	3.90	1.16	
	사립	(1,039)	3.76	1.16	
6. 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등을 계획할 경우(예: 교육계획 수립시),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전체	(2,073)	3.48	0.88	0.26
	공립	(1,034)	3.48	0.89	
	사립	(1,039)	3.47	0.87	
7. 보육 활동 시에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전체	(2,073)	4.25	0.60	2.72**
	공립	(1,034)	4.28	0.60	
	사립	(1,039)	4.21	0.60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전체	(2,073)	4.15	0.68	2.58*
	공립	(1,034)	4.19	0.70	
	사립	(1,039)	4.11	0.66	

\*  $p < .05$ , \*\*  $p < .01$ .

한편 유치원 교사 6은 위의 <표 V-1-14> 문항 5 '나는 유아의 성별·장애 여

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와 관련하여 교사가 장애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해도 해당 부모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로 느끼는 등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실천 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참여권의 실천에 대한 교사 대상 교육과 더불어 부모들의 이해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폐아를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이런 아이의 엄마일수록 같이 어울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풍 가고 견학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는 힘들어하고 싫어하지만 부모는 같이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교사로서 아이의 입장에서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상처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도 많이 됐고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유치원 교사6).

이를 전체 응답자의 기관 및 소속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03점(만점 5점)이며, 유치원 원장의 권리 실행 수준이 가장 높고, 유치원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5〉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원장/교사

단위: %(명), 점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권리 실행 수준 전체	전체	(4,154)	4.03	0.44	16.47***
	어린이집원장	(1,033)	4.04 <sup>a</sup>	0.42	
	어린이집교사	(1,048)	4.01 <sup>a</sup>	0.46	
	유치원원장	(1,033)	4.10 <sup>b</sup>	0.44	
	유치원교사	(1,040)	3.97 <sup>c</sup>	0.45	

\*\*\* p< .001, a≠b≠c.

또한 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 4와 유치원 원장 3은 부모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부모가 자연스럽게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참여와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교육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중요한 시도로 보여진다.

‘놀이’를 주제별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어머니들에게 전해 드렸거든요. 같이 노는 건 노는 건데, ‘아 이게 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선하다고 좋아하

셨던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4)

내 마음이, 참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야 되는데 내 마음 참 중요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서술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부모님들께 보내줘요. 그래서 부모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아동권리 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부모들을 방문하게 하고, 한 학기에 5주, 10주, 15주 부모교육, 아빠 대상은 저녁 일곱시부터 밤 아홉시 반까지 해요.(유치원 원장3)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sup>9)</sup>, 개인 요인 중 총 경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설 환경 요인에 비해 개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시설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개인 요인 중에서 총 경력이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권리 인식 수준에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6> 영유아 권리의 인식/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육교사

항목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beta$	T	$\beta$	T	$\beta$	T
권리 인식 수준	시설 지역(대도시)	0.04	1.06			0.03	0.62
	환경 지역(중소도시)	-0.01	-0.28			-0.04	-0.92
	적 설립유형(국공립 법인)	0.05	1.44			0.02	0.48
	요인 평가인증여부(인증통과)	0.04	1.33			0.04	1.31
	연령			0.03	0.85	0.04	1.10
	개인 학력			0.15	4.61***	0.15	4.45***
	적 총 경력			0.12	2.96**	0.10	2.46*
	요인 담당학급 아동연령			-0.02	-0.75	-0.03	-0.79
	최종 소지자격			-0.07	-1.84	-0.07	-1.89
		$R^2$	0.01		0.04		0.04

9) 회귀분석 더미변수: 지역(대도시) - 대도시=1, 그외 지역=0, 지역(중소도시) - 중소도시=1, 그외 지역=0, 기준범주=읍면동 / 설립유형 - 국공립,법인=1, 민간,가정,직장,법인의외=0 / 평가인증 여부 - 인증 통과=1, 미통과=0



(표 V-1-16 계속)

항목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β	T	β	T	β	T
권리 실행 수준	시설 지역(대도시)	0.04	0.88			0.02	0.57
	환경 지역(중소도시)	0.03	0.84			0.03	0.61
	적 설립유형(국공립 법인)	0.06	1.89			0.05	1.35
	요인 평가인증여부(인증통과)	-0.01	-0.30			-0.01	-0.33
	연령			-0.02	-0.53	-0.01	-0.24
	개인 학력			0.01	0.18	-0.01	-0.04
	적 총 경력			0.10	2.41*	0.08	2.00*
	요인 담당학급 아동연령			0.03	0.91	0.03	1.03
	최종 소지자격			-0.01	-1.01	-0.04	-1.12
	R <sup>2</sup>		0.01		0.01		0.01

\* p< .05, \*\* p< .01, \*\*\* p< .001.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설 환경 요인 중 설립유형, 즉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경우가 권리 인식에는 정적인 영향, 권리 실행에는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고 총 경력이 낮을수록 유아 권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개인 요인, 유아 권리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시설 환경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설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법인), 학력, 총 경력이며, 이들 중 총 경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유아 권리 실행 수준에는 설립유형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7> 유아 권리 인식/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치원 교사

항목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β	T	β	T	β	T
권리 인식 수준	시설 지역(대도시)	0.01	0.15			-0.04	-1.02
	환경적 지역(중소도시)	0.03	0.74			0.01	0.23
	요인 설립유형(공립)	0.14	4.06***			0.14	3.28**
	연령			0.09	1.52	0.05	0.92
	개인적 학력			0.17	4.91***	0.12	3.34**
	요인 총 경력			-0.14	-2.27*	-0.20	-3.23**
	최종 소지자격			0.01	0.36	0.06	1.74
	R <sup>2</sup>		0.02		0.03		0.04

(표 V-1-17 계속)

항목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beta$	T	$\beta$	T	$\beta$	T	
권리 실행 수준	시설 지역(대도시)	-0.04	-0.90			-0.03	-0.80	
	환경적 지역(중소도시)	0.04	0.98			0.03	0.88	
	요인 설립유형(공립)	-0.10	-2.83**			-0.15	-3.45**	
	개인적 요인	연령			0.01	0.15	0.04	0.73
		학력			0.02	0.60	0.07	1.79
		총 경력			-0.04	-0.59	-0.01	-0.01
		최종 소지자격			-0.01	-0.19	-0.03	-0.90
R <sup>2</sup>		0.01		0.001		0.02		

\*  $p < .05$ , \*\*  $p < .01$ , \*\*\*  $p < .001$ .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권리 인식과 실행에는 전반적으로 총 경력이 가장 주된 영향을 미치므로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 양성과정이나 경력 초기에 권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 가.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인식

#### 1) 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관심 있다 56.6%, 매우 관심 있다 31.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가정어린이집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관심 있다 55.7%, 매우 관심 있다 30.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의 관심도가 사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이 다	거의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T
어 린 이 집	전체	31.2	56.6	11.8	0.3	0.1	100.0(2,081)	4.18	0.65
	국공립/법인	35.3	53.9	10.4	0.1	0.3	100.0( 779)	4.24 <sup>a</sup>	0.65
	민간	30.9	56.4	12.3	0.4	0.0	100.0( 706)	4.18 <sup>a</sup>	0.65
	가정 직장/법인의	23.4	61.8	14.5	0.3	0.0	100.0( 359)	4.08 <sup>b</sup>	0.62
유 치 원	30.4	58.2	10.5	0.8	0.0	100.0( 237)	4.18 <sup>a</sup>	0.64	
유 치 원	전체	30.3	55.7	13.4	0.5	0.0	100.0(2,073)	4.16	0.66
	공립	34.0	54.6	10.8	0.4	0.1	100.0(1,034)	4.22	0.65
	사립	26.6	56.8	16.0	0.7	0.0	100.0(1,039)	4.09	0.67

\*\* p< .01, \*\*\* p< .001, a≠b.

전체 응답자의 소속 기관과 지위별로 살펴보면, 관심있다와 매우 관심있다는 합한 응답율이 86.9%로 대체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며, 교사들에 비해 원장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리 운영상 책임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V-2-2〉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원장/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이 다	거의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전체	30.7	56.2	12.6	0.4	0.1	100.0(4,154)	4.17	0.65	
어린이집 원장	38.0	54.6	7.2	0.1	0.1	100.0(1,033)	4.30 <sup>a</sup>	0.61	52.27 <sup>***</sup>
어린이집 교사	24.4	58.6	16.3	0.6	0.1	100.0(1,048)	4.07 <sup>b</sup>	0.66	
유치원원장	38.1	52.7	9.0	0.1	0.1	100.0(1,033)	4.29 <sup>a</sup>	0.63	
유치원교사	22.5	58.8	17.8	1.0	0.0	100.0(1,040)	4.03 <sup>c</sup>	0.66	

\*\*\* p< .01, a≠b≠c.

한편 면담에서 유치원 원장 1은 교육활동 시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아 권리 존중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놀이활동 등에서 강압적인 지시 위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아 권리 존중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놀이활동이나 아이들과 교사가 언어적 상호작

용을 하는 가운데.....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강압적인 언사라든가 너무 지시적인 언어 사용, 이 부분을 교사가 좀 알고 어떤 언어를 써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관심 갖게 되었던 거죠.(유치원 원장1)

## 2)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41.9%, 필요하다 52.9%로 나타나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 43.6%, 필요하다 51.4%로 응답자의 95% 이상이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필요도가 사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필요 없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T
어 린 이 집	전체	41.9	52.9	5.0	0.0	0.1	100.0(2,081)	4.36	0.59	15.53***
	국공립/법인	48.7	48.1	3.0	0.0	0.3	100.0( 779)	4.45 <sup>a</sup>	0.58	
	민간	38.5	54.7	6.8	0.0	0.0	100.0( 706)	4.32 <sup>b</sup>	0.59	
	가정	30.4	61.8	7.5	0.3	0.0	100.0( 359)	4.22 <sup>c</sup>	0.58	
	직장/법인외	47.3	49.8	3.0	0.0	0.0	100.0( 237)	4.44 <sup>a</sup>	0.55	
유 치 원	전체	43.6	51.4	4.8	0.2	0.0	100.0(2,073)	4.38	0.59	-3.84***
	공립	47.7	48.3	3.8	0.2	0.1	100.0(1,034)	4.43	0.59	
	사립	39.5	54.6	5.8	0.2	0.0	100.0(1,039)	4.33	0.59	

\*\*\* p< .001, a≠b≠c.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율이 94.9%로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속 기관 및 지위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가 교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4〉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원장/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전체	42.7	52.2	4.9	0.1	0.1	100.0(4,154)	4.37	0.59	
어린이집 원장	47.7	49.2	3.0	0.0	0.1	100.0(1,033)	4.44 <sup>a</sup>	0.56	18.34 <sup>***</sup>
어린이집 교사	36.2	56.6	7.1	0.1	0.1	100.0(1,048)	4.29 <sup>b</sup>	0.60	
유치원 원장	47.8	48.0	4.1	0.0	0.1	100.0(1,033)	4.43 <sup>a</sup>	0.58	
유치원 교사	39.3	54.8	5.5	0.4	0.0	100.0(1,040)	4.33 <sup>b</sup>	0.60	

\*\*\* p< .001, a≠b≠c.

한편 어린이집 원장 3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해당 기관에서 강화하게 된 것은 교사들이 아동권리 감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장시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자칫 아동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동권리교육 강화 동기는,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달리 장시간 보육기관이잖아요..... 그렇다보니 교사들이 좀 지치고 그로 인해 아동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정서적으로 잘 읽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의 권리 감수성을 키워줘야 현장에서 아동들의 정서학대가 적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어린이집 원장2)

또한, 유치원 교사 4는 그 동안 자신이 수업하면서도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새롭게 깨우친 것이 있어 다른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 3은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교사와 받지 않은 교사는 인식과 실천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권리교육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아동권리(교육) 받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늘 위해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게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우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받으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저를 많이 평가하는 시간이었거든요.(유치원 교사4)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담임선생님들만 연수를 받으셨고, 종일반 선생님이나 시간 여유가 없으셔서 못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그 차이

가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은 경우)의식이 깐다고 해야 될까?..... 아동 권리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유치원 교사3)

한편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설 환경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과 평가인증 여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 요인으로는 총 경력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설 환경 요인에 비해 개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시설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평가인증 여부와 총 경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중 총 경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5>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육교사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시설 환경적 요인	지역(대도시)	-0.01	-0.08			-0.02	-0.54
	지역(중소도시)	0.01	0.24			-0.01	-0.20
	설립유형(국공립, 법인)	0.07	2.23*			0.05	1.42
	평가인증여부(인증통과)	0.08	2.36*			0.08	2.24*
개인적 요인	연령			0.01	0.35	0.03	0.84
	학력			0.04	1.21	0.03	0.93
	총 경력			0.14	3.51***	0.11	2.65**
	담당학급 이동연령			-0.01	-0.11	-0.01	-0.19
	최종 소지자격			-0.01	-0.07	-0.01	-0.21
$R^2$	0.01		0.02		0.03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만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학력이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6>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치원 교사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시설						
지역(대도시)	-0.06	-1.60			-0.07	-1.71
환경적						
지역(중소도시)	0.00	-0.01			-0.01	-0.15
요인						
설립유형(국공립, 법인)	0.06	1.57			0.03	0.70

(표 V-2-6 계속)

변인	모형1		모형2		전체	
	β	T	β	T	β	T
연령			-0.04	-0.64	-0.05	-0.81
개인적 학력			0.07	2.18*	0.06	1.71
요인 총 경력			0.07	1.15	0.03	0.48
최종 소지자격			-0.02	-0.59	0.01	0.24
R <sup>2</sup>	0.01		0.0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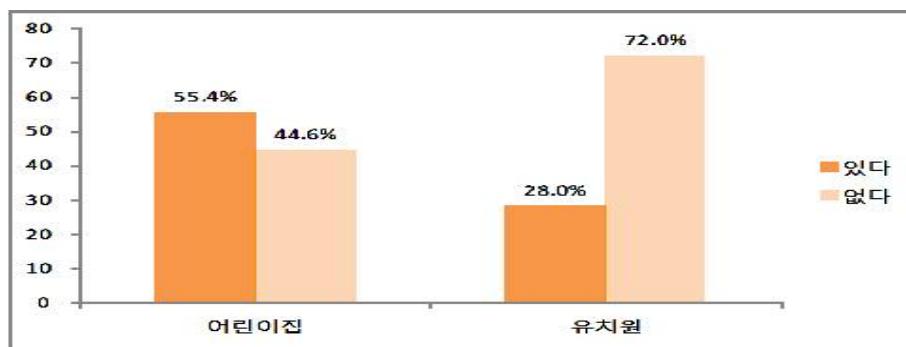
\* p< .05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경력이 길수록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및 교육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영유아 권리교육 현황

#### 1)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 여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 과반수(55.4%)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2-1]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 권리교육 경험 수혜율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61.2%로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이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참여 경험이 없다'가 72.0%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의 교육 경험율이 사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계	단위: %(명), 점
					$\chi^2(df)$
어 린 이 집	전체	55.4	44.6	100.0(2,081)	10.87(3)*
	국공립/법인	56.9	43.1	100.0( 779)	
	민간	55.4	44.6	100.0( 706)	
	가정	48.5	51.5	100.0( 359)	
	직장/법인의외	61.2	38.8	100.0( 237)	
유 치 원	전체	28.0	72.0	100.0(2,073)	16.33(1)***
	공립	24.0	76.0	100.0(1,034)	
	사립	32.0	68.0	100.0(1,039)	

\*  $p < .05$ , \*\*\*  $p < .001$ .

전체 응답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8.3%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속 기관 및 지위별로는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 경험이 가장 많고, 유치원 교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8〉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여부-원장/교사

구분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계	단위: %(명), 점
				$\chi^2(df)$
전체	41.7	58.3	100.0(4,154)	330.28(3)***
어린이집원장	58.3	41.7	100.0(1,033)	
어린이집교사	52.6	47.4	100.0(1,048)	
유치원원장	29.5	70.5	100.0(1,033)	
유치원교사	26.4	73.6	100.0(1,040)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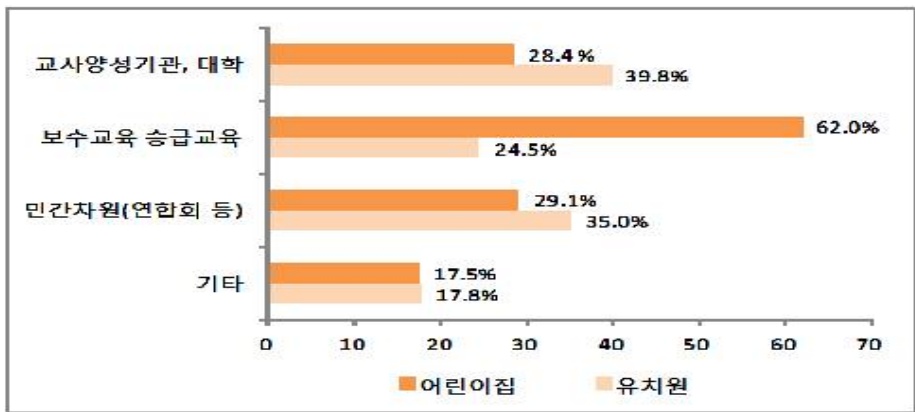
## 2)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

영유아 권리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기관이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보수 및 승급교육 6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 29.1%, 교사양성기관과 대학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권리교육은 대부분 양성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대학 39.8%, 민간 35.0%, 보수 및 승급교육 24.5%, 기타 17.8%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양성교육시에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2]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표 V-2-9>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교사양성기관 대학	보수교육 승급교육	민간차원 (연합회 등)	기타	계 (중복응답)
어 린 이 집	전체	28.4	62.0	29.1	17.5	(1,153)
	국공립/법인	24.6	59.8	29.3	21.0	( 443)
	민간	31.7	65.0	31.2	14.6	( 391)
	가정	33.3	67.2	26.4	8.0	( 174)
	직장/법인외	25.5	54.5	25.5	26.2	( 145)
유 치 원	전체	39.8	24.5	35.0	17.8	( 580)
	공립	42.3	26.6	31.0	16.5	( 248)
	사립	38.0	22.9	38.0	18.7	( 332)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통해,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 양성기관과 대학, 민간 기관을 통해 아동권리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보육교사 2, 보육교사 3은 양성과정 중에 아동권리교육이 미흡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히 영유아 권리 보육 및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는 교육받은 바 없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는 아동권리 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없고, 저도 ‘아동 발달’ 과목에서 아동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나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보육교사2)

대학 다닐 때도 ‘아동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 이 정도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막연하게 아동권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교육받은 것이지 아동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교육받은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처음이어요.(보육교사4)

교육 받았던 것은..... 직무교육 등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받은 교육은 신체적 학대나 성폭행, 이런 쪽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어린이집 원장1)

앞서 언급된 보육교사 2, 3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사 1도 양성과정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수업이 미흡했다고 언급하고, 양성교육과정에서 아동권리 교육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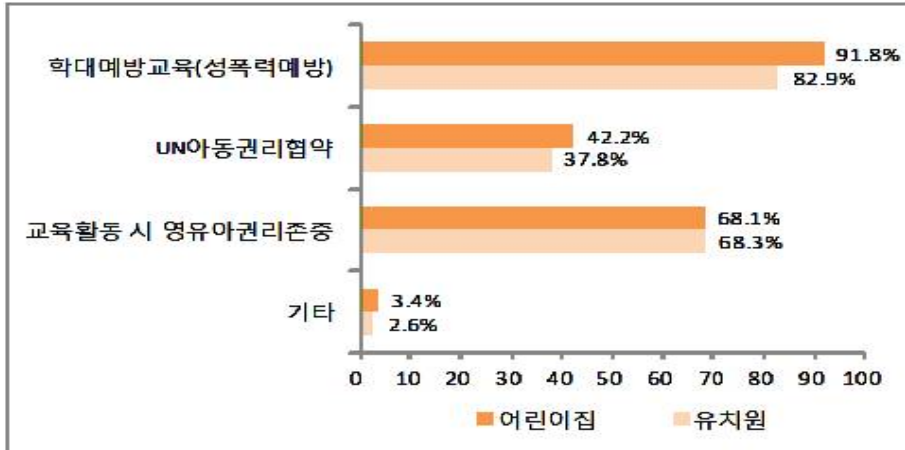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동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런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도 배우고 나오면 처음부터 그런 게 잡혀서 나오지 않을까..... 권리교육은 양성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교사1)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양성과정 중 권리교육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성과정기관에서의 아동권리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을 질문한 결과, 학대예방교육(성폭력 예방)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육활동 시 영유아 권리 존중(68.1%), 유엔아동권리협약(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 학대예방교육(성폭력 예방) 82.9%, 교육활동 시 유아 권리 존중 68.3%, 유엔아동권리협약 37.8%의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V-2-3]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표 V-2-10>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육·교육활동 시 영유아 권리존중	기타	계 (중복응답)
	어린이집	91.8	42.2	68.1	3.4
유치원	82.9	37.8	68.3	2.6	(580)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교육은 학대예방 위주이며,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육·교육활동 시 영유아 권리의 실천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당 교육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영유아 권리교육 실시 경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실시한 적 없다'가 56.9%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특히 가정어

린이집의 실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 '실시한 적 없다' 72.1%, '실시한 적 있다' 27.9%로 대체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립유치원의 실시율이 공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 종합하면, 대체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권리교육 실시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11〉 영유아 권리 교육 실시 여부-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chi^2(df)$
	구분	실시한 적 있다	실시한 적 없다	계	
어 린 이 집	전체	43.1	56.9	100.0(2,081)	37.35(3)***
	국공립/법인	47.0	53.0	100.0( 779)	
	민간	45.8	54.2	100.0( 706)	
	가정	28.7	71.3	100.0( 359)	
	직장/법인외	44.3	55.7	100.0( 237)	
유 치 원	전체	27.9	72.1	100.0(2,073)	17.17(1)***
	공립	23.8	76.2	100.0(1,034)	
	사립	32.0	68.0	100.0(1,039)	

\*\*\* p < .001.

집단면담(보육교사 1, 3)을 통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교육 사례로는 대체로 사례 중심 교재를 이용하는 편이나 이외에도 보육프로그램에 포괄하거나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이 있었다.

사실 보육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것은 제가 실행하기는 어렵구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안전교육처럼 하고 있어요. 1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대신 연간 계획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모든 보육프로그램 활동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보육교사3)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교육..... 한 달에 한 번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습을 이끌어가는 거는 개인 교사 영역인 것 같고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서..... 교구들은 저희가 생각을 하거나 ppt를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요.(보육교사1)

한편 보육교사 2는 아동 대상 권리교육의 효과로서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 효과는 가정과의 연계가 요구됨을 암시하였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교육받은 날에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한테 아이들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집에 와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학대여요,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육교사2)

### 5) 영유아 권리교육 미 실시 이유

소속 기관에서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유를 질문하였다.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가 49.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18.8%),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7.6%),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육자료의 부족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육시간의 부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2-12〉 영유아 권리교육 미 실시 이유-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부족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χ <sup>2</sup> (df)
어린이집	전체	7.6	7.4	18.8	49.7	4.8	11.7	100.0(1,184)
	국공립/법인	8.7	7.7	10.9	55.0	4.6	13.1	100.0( 413)
	민간	7.3	8.4	23.8	48.0	5.5	7.0	100.0( 383)
	가정	7.0	5.5	28.1	42.6	3.1	13.7	100.0( 256)
유치원	전체	6.1	7.6	10.6	52.3	6.8	16.7	100.0( 132)
	공립	14.0	11.2	11.3	44.3	8.0	11.2	100.0(1,495)
	사립	16.4	11.8	10.8	40.0	9.1	11.9	100.0( 788)
	사립	11.3	10.5	11.9	49.2	6.6	10.5	100.0( 707)

\*\* p< .01, \*\*\* p< .001.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가 44.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14.0%),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11.3%), ‘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교육자료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재를 적극적

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육·교육과정 내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괄하여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다.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현황

#### 1)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구비 여부

소속 어린이집에 영유아 권리교육 교구교재 구비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교재가 없다’가 62.2%로 나타나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권리교육 관련 교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교재교구를 구비하지 않은 비율은 6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유아 대상 권리교육의 미실시의 가장 주된 이유로서 교육 자료의 부족이 지적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권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유아 대상 권리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V-2-4]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구비 여부-어린이집/유치원

<표 V-2-13>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구비 여부-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있다	없다	계	$\chi^2(df)$
어린이집	전체	37.8	62.2	100.0(2,081)	
	국공립/법인	41.2	58.8	100.0( 779)	
	민간	35.6	64.4	100.0( 706)	
	가정	31.5	68.5	100.0( 359)	
	직장/법인외	42.6	57.4	100.0(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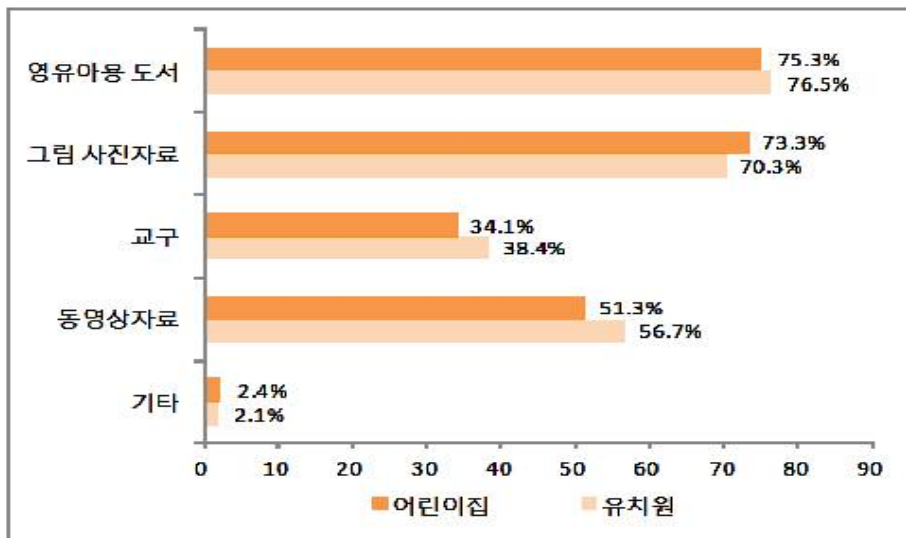
(표 V-2-13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	$\chi^2(df)$
유 치 원	전체	37.6	62.4	100.0(2,073)	1.27(1)
	공립	38.8	61.2	100.0(1,034)	
	사립	36.4	63.6	100.0(1,039)	

## 2)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종류

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교육 관련 교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영유아용 도서와 그림과 사진자료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각각 75.3%, 73.3%), 다음으로는 동영상 자료(51.3%), 교구(34.1%)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용 도서 76.5%, 그림과 사진자료 70.3%, 동영상 자료 56.7%, 교구 3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모든 관련 교재들에서 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2-5]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종류-어린이집/유치원(중복응답)

〈표 V-2-14〉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 종류-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영유아용 도서	그림 사진자료	교구	동영상 자료	기타	계 (중복응답)
어 린 이 집	전체	75.3	73.3	34.1	51.3	2.4	(786)
	국공립/법인	76.6	72.3	34.3	54.5	3.4	(321)
	민간	69.7	76.5	29.1	48.6	2.8	(251)
	가정	78.8	65.5	41.6	36.3	0.9	(113)
	직장/법인의외	81.2	77.2	37.6	64.4	0.0	(101)
유 치 원	전체	76.5	70.3	38.4	56.7	2.1	(779)
	공립	74.8	68.3	36.9	53.1	2.5	(401)
	사립	78.3	72.5	39.9	60.6	1.6	(378)

### 3.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 가.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하루 종일 보육을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 과중'이 69.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부족' 43.1%, '부모 이해와 협조 부족' 37.6%, '교사의 필요성 인식 부족' 36.0%, '교재 교구 부족' 35.0%,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34.3%,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어린이집 유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3-1〉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중복 응답)-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교사의 필요성 인식 부족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높은 교사대 영유아 비율	교재 교구 부족	프로 그램 부족	부모 이해 및 협조 부족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 업무 과중	기타	계 (중복 응답)
전체	36.0	23.7	34.3	35.0	43.1	37.6	7.7	69.0	1.5	(2,081)
국공립/법인	37.7	25.3	43.5	35.3	42.7	38.3	7.3	68.5	1.4	( 779)
민간	36.1	22.8	26.2	35.0	44.2	40.9	7.8	71.0	1.6	( 706)
가정	33.4	22.3	30.1	31.8	37.9	34.5	8.6	71.3	1.4	( 359)
직장/법인의외	33.8	23.6	34.2	39.2	48.5	30.4	7.6	61.2	2.1	( 237)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동일하게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 부족이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필요성 인식 부족(39.5%), 교재 교구 부족(35.3%),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35.1%), 부모 이해 및 협조 부족(31.3%), 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3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2〉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중복 응답)-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교사의 필요성 인식부족	유아권리 존중의 이해부족	높은 교사 대 유아비율	교재교구 부족	프로그램 부족	부모의 이해 및 협조부족	기타	계 (중복응답)
전체	39.5	30.9	35.1	35.3	50.5	31.3	1.8	(2,073)
공립	35.3	31.5	32.9	34.4	51.7	31.0	2.1	(1,034)
사립	43.6	30.3	37.2	36.1	49.3	31.6	1.5	(1,039)

종합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주된 애로사항은 프로그램의 부족이며, 특히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애로사항은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보육교사 6은 부모들의 이해와 협조 부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부모들의 요구와 영유아 권리 보장간의 괴리가 있을 경우 교사 입장에서 영유아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부모들의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과 아동들이 원하는 것과의 간극이 있잖아요. 낮잠 시간 같은 것을 예로 들어도, 자고 싶어하는 아동, 어머니들은 안 재우고 싶고, 이런 것에서 오는 차이,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 원치 않지만,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그런 점도 어려운 상황이.....(보육교사 6)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인해 영유아의 개별성 존중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보육교사 3). 영유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많은 원아들로 인해 획일적인 규칙 등을 정해 두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영유아 권리 보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보육교사 1).

아무래도 아동권리 개념 자체가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데..저는 아이들이 21

명인데요, 제가 원 담임으로 이끌어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규칙이나 약속들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통제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약속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이에게 타임아웃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저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걸 알고 아이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육교사3)

여덟시 반에 출근을 하면 다섯 시가 넘어서까지 교사가 아동을 모두 데리고 있어요. 퇴근은 여섯시지만 오십 분 안에 교실 청소도 해야 하고 내일 수업 정리도 해야 되고 오늘 했던 활동평가도 해야 하고, 여섯 시 퇴근하기 어렵죠. 저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장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데, 교사도 사람인걸라..... 그럴 때 ‘아, 내 권리는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보육교사1)

이러한 지적들은 유치원 교사 6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 보장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받을 때 아동권리는 존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다 들 하는 말이 교사 권리는 언제 존중해주지?..... 제도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면 아동권리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리가 먼저 존중이 되어야지..... 권리를 보장받는 교사가 아동들의 권리도 보장해줄 수 있잖아요.(유치원 교사6)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4는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면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 중심으로 보육활동이라든지 교육내용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개선할 수 있지만,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은 정부 예산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한 교사가 맡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가장 어려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인력이 더 있으면 아이들 권리 보장이 더 잘 될텐데,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과 중에 자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고 교사 주도적이 되고 지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과를 운영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4)

## 나.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내용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강화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가

39.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29.2%),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23.1%), '영유아의 건강·영양관리'(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국공립/법인, 직장/법인 외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균에 비해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균에 비해 영양관리, 안전관리 부문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3>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내용-어린이집 원장(1순위)

단위: %(명), 점

구분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	$\chi^2(df)$
전체	29.2	23.1	8.2	39.4	100.0(1,033)	
국공립/법인	28.6	29.1	6.4	35.8	100.0( 374)	
민간	31.3	16.8	9.7	42.3	100.0( 352)	29.87
가정	26.7	17.1	10.2	46.0	100.0( 187)	(9)***
직장/법인의외	29.2	32.5	6.7	31.7	100.0( 120)	

\*\*\* p< .001.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영유아 발달 이해'가 33.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30.4%),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안전교육'(19.6%),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연령별 보육프로그램'(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4>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내용-보육교사(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영유아 발달 이해	표준보육 과정의 이해	영유아 안전사고 대응,교육	영유아 식생활 지도와 위생	계	$\chi^2(df)$
전체	30.4	33.2	15.2	19.6	1.6	100.0(1,048)	
국공립/법인	35.3	32.8	14.3	15.8	1.7	100.0( 405)	
민간	29.1	33.1	14.4	21.8	1.7	100.0( 354)	17.55
가정	23.3	34.9	15.1	24.4	2.3	100.0( 172)	(12)
직장/법인의외	28.2	32.5	20.5	18.8	0.0	100.0( 117)	

#### 다.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개선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32.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육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 보육 업무'(21.1%), '권리 존중 교육활동 매뉴얼 제공'(18.6%), '교사에 대한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12.7%), '교육과정에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 포함'(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5〉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한 개선점-어린이집(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보육시간 오전오후 나누어 보육업무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교구 보완	교사의 영유아 권리교육 강화	보육과정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포함	권리존중 교육활동 매뉴얼 제공	계	$\chi^2(df)$
전체	32.8	21.1	3.9	12.7	10.9	18.6	100.0(2,081)	
국공립/법인	40.9	16.6	3.0	12.2	9.9	17.5	100.0( 779)	
민간	21.5	27.1	4.0	13.6	10.9	22.9	100.0( 706)	91.42
가정	35.9	17.0	5.8	12.3	14.2	14.8	100.0( 359)	(15)***
직장/법인의외	35.0	24.5	3.8	12.7	8.9	15.2	100.0( 237)	

\*\*\* p< .001

〈표 V-3-6〉 유아 권리 존중 교육을 위한 개선점-유치원(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소	유아 권리교육을 위한 교재교구보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유아 권리교육강화	교육과정에 유아 권리존중 실천 포함	권리존중 교육활동 매뉴얼 제공	계	$\chi^2(df)$
전체	35.8	7.9	21.4	18.5	16.4	100.0(2,073)	
공립	40.1	7.2	19.1	17.5	16.1	100.0(1,034)	18.42
사립	31.5	8.7	23.6	19.5	16.7	100.0(1,039)	(4)**

\*\* p< .01.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소' 35.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에 대한 유아 권리교육 강화'(21.4%), '교육과정에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 포함'( 18.5%), '권리존중 교육활동 매뉴얼 제공'(16.4%), '교재교구 보완'(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소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문항에서 사립유치원의 해당 응답율이 공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V-3-6 참조).

따라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감소와 교사 대상 권리교육 강화 등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며, 이외에도 존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아동권리 존중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면담조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영유아 권리교육의 개선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어린이집 원장 3, 6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해 교사 대상 권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모든 행위가 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감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하는 모든 교육행위 자체가 권리 존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동을 자율적인 존재,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니깐, (선생님들이) 좀 더 감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이틀에 나눠서 했어요. 전체 모든 교사가 다 이틀에 나눠서 했고, 그런 다음 자기활동 사례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을 거치니까 좀 더 체화된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6)

제가 교사일 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교사교육을 했었는데, 그 때 3일 간 교육을 받았어요. 주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카테고리 분류하고 실생활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같이 토의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그 때 교사로서 처음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우리가 보통 유아교육 하면 아동중심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동권리협약을 접하니까 좀 더 민감하게 들여다 봐야하는구나, 그때 이후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3)

어린이집 원장 1은 육아지원기관 교직원 대상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긴 교육시간을 요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는 원장과 교사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현행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기준과 같이 실시 주기,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권리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장과 교사의 시간적인 차이보다는 원장과 교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한 사람만 참여하거나 교사 한 사람만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한 원에 동일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서 전체의 인식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주임교사라고 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제대로 실행이 않되요..... 누적된 (교육)시간이 매우 필요한데..... 교사 대상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재교육 방식으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1)

이외에도 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의 실천을 돕기 위해 멘토링시스템을 도입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유치원 교사 3에 의하면, 교사가 편한 시간에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메일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유치원 교사 5).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1대 1로 만나서 조언을 해주는 데..... 모든 유치원 교사들에게 1대 1로 대응하기는 힘들테니까 유사한 기관이 하나 있으면 메일이나 전화로도 관찰을 거 같아요.(유치원 교사5)

또한 부모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어린이집 원장 2와 보육교사 2는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반드시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원에서 이루어진 부모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선생님들이 동영상 찍어서 부모 참여수업 때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고 신선했다고, 아동권리 접근하는 어린이집 그다지 많지 않은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어요.(어린이집 원장2)

보육교사 2는 부모교육의 효과로서 교육 후 부모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심도가 높아졌고,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희가 작년에 원장님이 부모참여 수업을 할 때..... 프로그램 회의를 하면서 원장님이 부모님들한테 아동권리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해보면 어떨겠냐고..... 부모참여 수업 때 어머님들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했었어요. 어머님들 반응이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이런 개념을 알았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 자기가 너무 죄인 같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집에 가서 아이들 대할 때 다르게 대하게 되었고..... (보육교사2)

어린이집 원장 1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를 비롯해 모든 부모들에게 아동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부모대상 교육의 경우는 책이나 좋은 영상자료 같은 보완될 수 있는..... 영상자료의 경우 집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못 보니까 책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어린이집 원장1)

특히 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 1은 시기적으로 입학 초기에 이를 실시한다고 언급하였다.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지역하고 상관없이 다 가슴 설렘으로 보내요. 입학 초기에, 그 때는 100퍼센트 더라고요 참여율이, 열두번을 하는데 모두 다 참여하는 듯..... (유치원 원장1)

한편 교육 방법으로는 교직원 대상 권리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1은 사례 중심적 적용을 강조하였고, 참여식 연수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어린이집 원장 4).

제가 볼 때는 교사에게는 사례 중심으로 적용을 해 주시구요, 원장님들에게는 교사와 어떻게 권리 존중을 위한 상호작용해야 할지, 종사자들의 인권을 더 고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장님은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관점에서..... 종사자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과 학부모를 모두 고려한.....(어린이집 원장1)

교육 방법은 교사 교육이든 부모교육이든 워크샵 같은 참여 형태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4)

교육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논의하면 교사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유치원 원장2)

이외에도 양성과정 시에 영유아 권리 보장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현실적으로 아동권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므로 양성과정 중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교사들이 보육 업무를 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아동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받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예 졸업시키기 전에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게 되면, 현장에서 권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거죠. (어린이집 원장2)

또한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를 위해 담당 전문기구와 전문 강사진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유치원 교사2, 어린이집 원장 1).

선생님들이 좀더 전문화된 연수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아동권리 보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수를 받고 나서도 어떤 선생님은 교육만으로 끝나는 선생님이 있는가하면, 직접 실천하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유치원 교사2)

(부모)참여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강사풀이 안 되는 거죠. 강사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해요. (어린이집 원장1)

이외에도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국민 홍보 강화(유치원 원장 3), 인증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되었다(보육교사 6).

국민들이 미디어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30초 광고를 꾸준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부모교육 시간에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그게 어떤 광고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유치원 원장3)

(평가인증처럼) 인증을 주면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면..... 저희도 그런 걸 믿고 어머님들이 자녀를 보내는 것처럼 다른 기관들도 그런 걸 따서 딱 눈에 보여질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듯.....(보육교사6)

####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권리교육 경험, 그리고 영유아 존중 보육 교육 시 애로사항 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지 수준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30%에 달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호권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참여권의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참여권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어린이집의 보호권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시설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등 어린이집 안전보호 조치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보육에 비해 교육 기능이 강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적으로 참여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육활동 시 영유아들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권리 인식 수준과 실행 수준 전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평균 4.38점, 만점 5점)에 비해 실행 수준(4.03점, 만점 5점)이 낮게 나타나, 이들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 권리 인식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영유아 권리 인식과 실행 수준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실천 시 각종 애로사항들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프로그램 운영 시 개별 차이 고려'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운영 계획 시 영유아의 의견을 받는다'는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이 일과 운영 중 참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육·교육활동 전반 이를테면 보육·교육계획의 수립 시 등에도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는 각각 전체 평균 4.17점(만점 5점)과 4.37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므로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 권리교육의 관심도와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력이 가장 주된 변수로 나타나므로 교직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영유아 권리 보장과 직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기관별로는 가정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가 이외의 기관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이들 기관에서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응답자 대상별로는 교사에 비해 원장의 아동권리교육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유아 권리 증진에 고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 권리의 강화는 해당 기관 원장들의 의지와 실천 노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유아 권리교육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의 약 과반수가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어린이집은 44.6%, 유치원은 72.0%), 해당 기관에서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어린이집은 43.1%, 유치원은 27.9%에 불과하였다. 유치원의 권리교육 실시율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 역시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유치원의 아동권리교육 강화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유아 권리 교육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은 보수 및 승급교육이 6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치원은 교사양성기관과 대학이 39.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승급교육 등에서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권리 교육내용은 주로 학대(성폭력)예방교육 위주여서(어린이집 91.8%, 유치원 82.9%) 이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참여권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실천 위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를 구비한 경우는 어린이집은 37.8%, 유치원은 37.6%에 불과하며, 주로 도서와 그림, 영상자료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권리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프로그램 부족이 지적되므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모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감소'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시간 오전과 오후 나뉘 보육 업무를 진행하는 것',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유아 권리교육의 강화'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제고와 더불어 보조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권리 관련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영유아 권리교육의 전반적인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I.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리 영역별 실태 평가,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인식과 실행 수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시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 방향

#### 가. 영유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영유아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를 포괄한 권리의 주체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요구된다.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제58차 회기, 2011.9.19~10.7)의 권고사항에서는 “당사국의 법률상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특히 15세 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지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영유아는 아동의 개별 의사가 간과되는 대표적인 대상이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 보장 보다는 저출산 등 사회적 위협에 따른 것으로 기업과 부모들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현재의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야간 보육 등 취약 보육은 일차적으로 부모들의 노동시간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영유아의 권리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처럼 성인주도적인 관심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 중심성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및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영유아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육아지원기관 관련 제도 전반에서 영유아가 주체가 되며, 이들의 개별성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보호권 내실화와 참여권의 확장

아동권리 주요 원칙 중 생존·보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종 관련 규정들은 이들 권리의 보장에 주력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에 의하면, 생존·보호권조차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과 조치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규정의 내실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직원들은 법률에 근거한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미흡하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보호권에 대한 인식과 보장 수준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된다.

또한 육아지원기관 교직원들은 대부분 참여권의 실천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므로 영유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이 생존·발달·보호권을 기본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참여권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 다. 영유아 권리교육의 체계화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는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므로 영유아와 기관 내에서 영유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직원 은 물론 부모 대상 권리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가 높으나, 실제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권리 인식 수준에 비해 실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권리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 존중 보육·교육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즉 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부모 대상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 권리교육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직원 대상 적정 교육시간,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명시하고, 관련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모들의 경우는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영유아 권리 보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은 아동권리 전반의 제도화에 기반해야 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을 영유아 전반으로 확대하고, 권리 영역을 보호권 위주에서 참여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 보육·교육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에서 아동 권리 주요 원칙을 명확히 포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마련된 평가 지표 즉 유치원 평가지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가 영유아 권리를 온전히 포괄하는지, 현행 아동관련 정부 기구에서 영유아 권리 보장 차원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실천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정책 과제

앞서 제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해보면 크게 1)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과 2)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지원 방안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평가인증 등 평가체도의 내실화,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 영유아 권리 관련 정부 기구의 내실화와 평가체계의 마련 등이며, 후자의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인력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 가. 보육·교육과정과 평가지표의 내실화

우선 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현행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은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해설서, 그리고 자료집만으로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실제 적용 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침에 권리 존중 실천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보육·교육계획 수립 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영국 사례에 의하면, 국가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개별적인 아동 주제를 별도로 구성하고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참여권 보장,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의 실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에 영유아 권리 보장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평가지표에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보육·교육활동 전반과 아동 자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생존·보호권 실태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옥외놀이터 바닥 안전, 창문보호대 미설치 등 시설 안전의 미비 사항과, 발달권의 경우는 실외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실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인증 등 기관 평가 시에 이들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는 육아지원기관 교직원뿐 아니라, 영유아, 부모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 권리교육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 강사진의 확충 노력 등이 요구된다.

### 1)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교직원 양성과정과 직무교육 등에서 영유아 권리교육은 시간과 내용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은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내용과 시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 교육시간의 경우는 현행 표준보수교육과정에 의하면, 협소한 의미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은 보육교사 승급과정에서는 안전교육 등을 제외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의 교육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며,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

과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권리의 이해 및 적용은 일회성 교육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승급교육 이외에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은 표준보수교육과정에 의하면, 보육교사 1, 2급 승급교육과정으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 예방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참여권 등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을 영유아 권리 전반으로 확장하여 영유아 권리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 전반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경우 인지 수준에 비해 실행 수준이 낮고,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교육의 내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아동학대 예방 위주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호권 부문 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해당 교육의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 방법으로는 실천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권 보장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참여 방식의 수업을 통해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찰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자율장학은 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면담조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권리 존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딜레마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교사 개인이 교육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동료간 자율장학이 유용할 수 있다. 관련 최근 연구(윤매자, 2011)에 의하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에 대한 자율장학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교사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교직원 대상 교육의 경우는 교육시간의 확대는 물론 교육내용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고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이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동복지법」(제26조 제2항 신설(2011.8.4), 시행 2012.8.5)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게 됨에 따라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성과정의 내실화 및 강화가 요구된다. 즉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양성과정 시에 영유아 권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영유아 대상 교육 강화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권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 대상 아동권리교육이 안전교육과 같이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으로 안전교육에 한정된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교육의 경우는 연간 총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 기준과 마찬가지로 참여권을 포괄하는 아동권리교육을 별도로 명시하고, 총 교육 시간(및 빈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교육과 같이 권리교육의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나아가 이 때 연령 범위는 단지 영유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8세까지 포괄하여 초등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부모 대상 교육 강화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실천 시 애로사항으로 '부모의 이해 및 협조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중복 응답)은 37.6%, 유치원의

경우 31.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비전형화된 노동시간 등으로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부모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교육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면담 분석결과에 의하면, 육아지원기관 입학 시기에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이 시기에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전문 강사진 확충

아동권리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전문 강사진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교육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강사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체계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육아지원기관 아동권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을 실천 시에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다. 관련 기구의 법제화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영유아 권리 보장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정책 전반에서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수행되는 아동정책들간의 긴밀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2011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복구하여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력,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 기구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므로 2010년 6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 점검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아동권리옴부즈맨제도의 법제화를 모색할만하다. 현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아동 전문가 10인과 아동 10인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을 책정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동권리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와 음부즈맨제도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독립된 인력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라. 평가체계의 마련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 관련 법과 정책이 영유아의 권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법은 최소기준을 명시하기 때문에 육아관련 정책이 영유아 권리의 측면에서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상 보육의 확대 등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과 정책 내용이 영유아의 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규모 및 관련 효과, 개별 법과 정책의 내용, 교과과정의 적절성, 필요 인력의 자격요건 충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2011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정의 성과 지표의 목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 같은 구성 체계는 평가결과를 중시하는 보육·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을 낳게 되어 결국 영유아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영유아 보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영유아 권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영유아 권리 수준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개발 및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자원의 범주와 지역내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실태 등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 수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수준을 파악함은 물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 비교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마. 교재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보육·교육 일과 중에 영유아 권리 침해 사례를 인식하고, 보육·교육활동 시에 영유아의 적극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면담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영유아 권리 침해 행위임을 인식조차 못하거나, 참여권과 관련하여 영유아와의 충돌 시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등 영유아 권리의 이해와 실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례 중심의 매뉴얼이나 연령별 수준별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적용한 후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개인적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영유아 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재교구의 구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시 주된 애로사항은 '교재교구의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치원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권리교육 교재교구의 구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조사결과에서도 교직원들은 영유아 대상 권리교육 시에 각자의 원에서 개별적으로 교재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영유아 권리의 개념 정의 등 이론적 이해는 물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권리 내용을 해석하고 역할놀이 등 보육·교육활동 시에 영유아들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고, 교사들이 실천하는 다양한 기법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바. 보조인력 지원 강화

영유아 권리 존중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장 높은 응답율(69.0%)을 보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적으로는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지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개별성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육·교육 대상 영유아 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참여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아동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 사. 홍보 강화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유아의 이용율이 높은 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한 인쇄 홍보물의 제작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증진은 영유아 권리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반하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 김숙자·김현정(2008).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과 권리*, 12(2). 118-134.
- 김진숙(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준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서영숙·서혜정(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6). 35-60.
- 나정(2010).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

- 육의 위치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14(3). 101-122.
- 문용린·문미희·강운정(2002). 인권 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박윤창(2003).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서 본 영유아보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2003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9-43.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육교사용.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 보건복지부(2011a).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_\_\_\_\_ (2011b).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_\_\_\_\_ (2011c). 2011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보건복지부.
- \_\_\_\_\_ (2011d).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2011.4.22)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서정은(2000).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서혜정·김진숙(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215-232.
- 서영숙·김명순·황옥경(2010). 보육선진화 정책방안 연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신지현·김경화(2005). 어린이집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5(1). 128-140.
- 양옥승·신은미(2011).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국제비교. 유아교육연구, 31(1). 309-323.
- 윤매자(2011).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철경·박선영(2008). 2000년대 이후 영국의 아동,청소년 정책동향과 시사점.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9-67.

- 이영환(2003). 아동의 발달권에서 본 영유아 보육 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2003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7-64.
- 이완정(2005). 보육시설 영유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789-816.
- 이용교(2003). 아동의 참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2003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1-101.
- \_\_\_\_\_(2004).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방안. 아동권리연구, 8(2). 169-188.
- 이용교·이명묵·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2). 5-24.
- 이혜연·김영지·김신영(2009). 아동·청소년 권리지수개발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53-165.
- 임양미·송정·황옥경(2011). 경기도 영아 안심보육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임재택(2003). 아동의 생존권에서 본 영유아 보육 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2003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7-90.
- 장명립(2011).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 조셉조네이도(2011). 만들어진 아동. 구은혜 역. 서울: 마고북스.
- 지성애(2011). 영유아 권익 우선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정 20년 영유아권익 신장을 위한 보육의 질적 성장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황옥경(2009). 사회속의 아동: 영국의 아동 관련법과 정책에 나타난 변화와 도전. 서울: 창지사.
- \_\_\_\_\_(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아동과 권리, 14(4). 677-706.
- \_\_\_\_\_(201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유엔의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

반론평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선진화포럼 발표자료집.

황옥경·이승기(2011). 아동을 위한 법적 발전방향 연구. 아동과 권리, 15(1). 45-66.

HM Treasury, DfES, DWP, DTI.(2004). Choices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 Norwich: HMSO.

Ofsted(2008). Child care and Early Years Provision Survey: Overview Report. HM.: London.

Unicef(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Innocenti Report.

참고 웹사이트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savethechildren.org.uk/about-us/history>

영국아동가족학교부(DCFC) <http://www.education.gov.uk/>



## 부 록

---

부록 1.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어린이집 원장용)

부록 2.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보육교사용)

부록 3.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유치원 원장용)

부록 4.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유치원 교사용)

부록 5.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면담 질문지(원장용)

부록 6.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면담 질문지(교사용)

부록 7. 어린이집 급식관리 체크리스트

부록 8. 참여권 보장 사례

# 부록 1.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 어린이집 원장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보육 발전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1년 연구과제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및 증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보육 활동시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고 아동의 개별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일환으로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미 부연구위원	02)398-7708	nowyoo@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김재원 연구원	02)398-7760	mileona@kicce.re.kr

어린이집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 )구 ( )동
	핸드폰			



### I. 귀하 및 귀 어린이집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 어린이집의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지역	__① 서울 __② 부산 __③ 대구 __④ 인천 __⑤ 광주 __⑥ 대전 __⑦ 울산 __⑧ 경기 __⑨ 강원 __⑩ 충북 __⑪ 충남 __⑫ 전북 __⑬ 전남 __⑭ 경북 __⑮ 경남 __⑯ 제주
설립 유형	__① 국공립 __② 법인 __③ 법인외 __④ 민간개인 __⑤ 가정 __⑥ 직장
시설 규모	정원 _____명 / 현원 _____명
평가인증 여부	__① 평가인증 1회 통과 __② 평가인증 2회 통과 __③ 평가인증 받지않음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성별	__① 남 __② 여
학력	__① 고등학교 졸업 __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__③ 4년제 대학 졸업 __④ 대학원 졸업
(최종) 전공 분야	__① 보육교사양성과정 __② 아동학 __③ 유아교육 __④ 보육학 __⑤ 사회복지학 __⑥ 아동복지학 __⑦ 기타(_____)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어린이집 원장 총 경력)

**II. 귀하의 영유아 권리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 아동권리의 주요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③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① 전혀 모른다
1	생명권				
2	발달권				
3	보호권				
4	참여권				
5	무차별의 원칙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_\_① 들어본 적 없다(3에 답해주세요)  
 \_\_② 들어본 적 있다(2-1, 2-2에 답해주세요)

<아동권리의 주요원칙>

- 1) 생명권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
- 2) 발달권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
- 3) 보호권 - 유해한 행위(학대 등)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 4) 참여권 -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아동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5)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존중함
-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모든 활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2-1.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보육활동 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 \_\_① 매우 노력한다                      \_\_③ 약간 노력한다  
 \_\_② 노력한다                              \_\_④ 노력하지 않는다

2-2.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다음 아동권리 중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생명권  
 \_\_② 발달권  
 \_\_③ 보호권  
 \_\_④ 참여권(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_\_⑤ 무차별의 원칙  
 \_\_⑥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_\_⑦ 없다

3. 영유아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인식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4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 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5	영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영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7	영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영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8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9	영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4.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권리 실행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2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보육과정에 영유아 권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4	나는 영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5	나는 영유아의 성별·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					
6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등을 계획할 경우(예: 보육계획 수립시),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7	보육 활동 시에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영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Ⅲ.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어린이집 설치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각 실의 손잡이의 형태나 위치는 영유아들의 신체에 맞게 되어 있다					
2	영유아의 신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3	각 실은 비상재해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	현관의 위치는 원장실이나 사무실 혹은 교					

	사실에서 한 눈에 보여 영유아의 보호관찰과 외부인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5	각 실은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6	교구와 놀잇감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장의 높이는 영유아의 신체치수에 적합하다					
7	화장실 바닥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항상 물기가 없도록 하고 있다					
8	조리실과 영유아들의 활동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9	각 실은 채광과 통풍, 온도, 습도조절이 잘 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10	영유아들의 활동목적에 맞게 조명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보육 공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실의 면적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2	유희실(또는 보육실)의 바닥은 영유아들이 활동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재질이 부드럽고 완충적인 소재이다					
3	유희실(또는 보육실)의 환경은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게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4	보육실내 흥미영역은 계절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	보육실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6	보육실내에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IV.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의 건강 및 영양관리  
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어린이집의 건강 및 영양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  
십시오

구분			실시 여부
영아 있는 경우	실내 공간 청결	기저귀 가는 공간이 있 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급식	모든 식자재는 소비기한, 식품구입 날짜를 표기하고 있다		___ ①실시함 ___ ②실시안함
	간식은 오전·오후 나누어 2회 제공 하고 있다		___ ①실시함 ___ ②실시안함
건강	모든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검진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___ ①실시함 ___ ②실시안함
	건강검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보관 하고 있다		___ ①실시함 ___ ②실시안함
	영유아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안내를 하고 있다		___ ①실시함 ___ ②실시안함

**V.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시설안전과 학대예방에 관한 질문입  
니다.**

8.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의 안전관리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  
십시오

	구분	실시 여부
1	창문보호대나 난간(추락방지)이 설치되어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2	전기콘센트에 안전 덮개가 덮여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3	책상, 의자 등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 끄럽게 처리된 것이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4	모든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5	무거운 물건은 수납장 아래쪽에 보관한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6	어린이집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7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8	놀잇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9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___ ①있음 ___ ②없음



9. 영유아의 안전 보호현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구성하였다					
2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을 문서화하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3	모든 영유아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았다					
4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0.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유아 등원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					
2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3	영유아의 신체에 멍자국 등이 있을 때 영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4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11.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지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2	보육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신고전화번호, 신고방식 등)					
4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자격 취소 등)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 증취소 등)					
---	--	--	--	--	--	--

12. 향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등이 영유아의 신체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한다
  - ② 부모에게 물어보아 학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믿는다
  - ③ 몇 회 더 감지될 때까지 좀 더 두고 본다
  - ④ 모른척한다

**VI.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모두 (읽어) 보았다	③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②대충 훑어 보았다	①전혀 읽지 않았다
1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2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14. 다음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이해와 적용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 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령집단별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6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 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7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15. 귀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시) 영어, 체육, 한자, 수영, 과학. 등

\_\_ ① 3개 이상

\_\_ ② 2개

\_\_ ③ 1개

\_\_ ④ 실시하지 않음

**Ⅶ.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과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① 매우 관심있다                    \_\_④ 거의 관심없다  
 \_\_② 관심있다                        \_\_⑤ 전혀 관심없다  
 \_\_③ 보통이다

17. 귀하는 영유아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매우 필요하다                    \_\_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② 필요하다                         \_\_⑤ 필요 없다  
 \_\_③ 보통이다

18. 귀하는 영유아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① 있다(18-1, 18-2에 답해주세요)  
 \_\_② 없다(19에 답해주세요)

18-1.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_\_① 교사양성기관 및 대학  
 \_\_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_\_③ 민간 차원(연합회 등)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18-2.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_\_① 학대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  
 \_\_② 유엔아동권리협약  
 \_\_③ 보육활동시 영유아 권리 존중 방법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9.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20에 답해주세요)  
 ② 없다(19-1에 답해주세요)

19-1.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②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③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④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0. 귀하의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권리교육에 관한 교구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20-1에 답해 주세요)  
 ② 없다(21에 답해주세요)

20-1. 영유아 권리 관련 교구교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영유아용 도서  
 ② 그림 및 사진자료  
 ③ 교구  
 ④ 동영상 자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1.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사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③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인한 실천력 부족  
 ④ 관련 교재교구의 부족  
 ⑤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⑥ 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⑦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⑧ 하루 종일 보육해야 하는 교사업무의 과중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다음 중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1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2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3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급식관리 등)				
4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23. 바람직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해당 질문
1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
2	보육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보육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영유아 권리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권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5	표준보육과정에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2.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 보육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보육 발전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1년 연구과제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및 증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보육활동시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고 아동의 개별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일환으로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미 부연구위원	02)398-7708	nowyoo@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김재원 연구원	02)398-7760	mileona@kicce.re.kr

<b>어린이집명</b>			<b>응답자 성명</b>	
<b>전화번호</b>	기관		<b>주소</b>	(        )구 (        )동
	핸드폰			

**I. 귀하 및 귀 어린이집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 어린이집의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지역	__① 서울 __② 부산 __③ 대구 __④ 인천 __⑤ 광주 __⑥ 대전 __⑦ 울산 __⑧ 경기 __⑨ 강원 __⑩ 충북 __⑪ 충남 __⑫ 전북 __⑬ 전남 __⑭ 경북 __⑮ 경남 __⑯ 제주
설립 유형	__① 국공립 __② 법인 __③ 법인외 __④ 민간개인 __⑤ 가정 __⑥ 직장
시설 규모	정원 _____명 / 현원 _____명
평가인증 여부	__① 평가인증 1회 통과 __② 평가인증 2회 통과 __③ 평가인증 받지않음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성별	__① 남 __② 여
학력	__① 고등학교 졸업 __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__③ 4년제 대학 졸업 __④ 대학원 졸업
(최종) 전공 분야	__① 보육교사양성과정 __② 아동학 __③ 유아교육 __④ 보육학 __⑤ 사회복지학 __⑥ 아동복지학 __⑦ 기타(_____)
총경력	_____년 _____개월
담당 학급 아동 연령	__① 만 0세 __② 만 1세 __③ 만 2세 __④ 만 3세 __⑤ 만 4세 __⑥ 만 5세 __⑦ 혼합반( - )세
소지 자격 (최종)	__① 보육교사1급 __② 보육교사 2급 __③ 보육교사 3급 __④ 어린이집 원장



## II. 귀하의 영유아 권리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아동권리의 주요 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③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① 전혀 모른다
1	생명권				
2	발달권				
3	보호권				
4	참여권				
5	무차별의 원칙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_\_ ① 들어본 적 없다(3에 답해주세요)  
 \_\_ ② 들어본 적 있다(2-1, 2-2에 답해주세요)

### <아동권리의 주요원칙>

- 1) 생명권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
- 2) 발달권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
- 3) 보호권 - 유해한 행위(학대 등)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 4) 참여권 -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아동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5)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존중함
-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모든 활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2-1.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보육활동 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 \_\_ ① 매우 노력한다                      \_\_ ③ 약간 노력한다  
 \_\_ ② 노력한다                              \_\_ ④ 노력하지 않는다

2-2.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다음 아동권리 중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명권
- ② 발달권
- ③ 보호권
- ④ 참여권(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 ⑤ 무차별의 원칙
- ⑥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⑦ 없다

3. 영유아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인식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4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5	영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영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7	영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영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8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9	영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4.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권리 실행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2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보육과정에 영유아권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4	나는 영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5	나는 영유아의 성별·장애여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					
6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등을 계획할 경우(예: 보육계획 수립시), 영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7	보육활동 시에 영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영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III.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어린이집 설치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각 실의 손잡이의 형태나 위치는 영유아들의 신체에 맞게 되어 있다					
2	영유아의 신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3	각 실은 비상재해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	현관의 위치는 원장실이나 사무실 혹은 교사실에서 한 눈에 보여 영유아의 보호 관찰과 외부인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5	각 실은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6	교구와 놀잇감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장의 높이는 영유아의 신체치수에 적합하다					
7	화장실 바닥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항상 물기가 없도록 하고 있다					
8	조리실과 영유아들의 활동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9	각 실은 채광과 통풍, 온도, 습도조절이 잘 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10	영유아들의 활동목적에 맞게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6. 보육 공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실의 면적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2	유희실(또는 보육실)의 바닥은 영유아들이 활동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재질이 부드럽고 완충적인 소재이다					
3	유희실(또는 보육실)의 환경은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게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4	보육실내 흥미영역은 계절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	보육실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6	보육실내에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IV.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어린이집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현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활동계획시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다					
2	일과 중 실내/실외, 대근육·소근육, 개별/소집단/대집단, 정적/동적 활동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있다					
3	일과 중 실외활동을 1시간 이상 하고 있다(영아 경우 30분 정도)					
4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 및 영역이 영유아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일일 2시간 30분 이상)					
5	영유아자신과 가족, 또래,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기회를 월2회 이상 제공한다(영아는 월 1회 정도)					
6	정기적으로 보육활동을 평가하고, 개별 영유아관찰이 이루어진다(월1회 이상)					

8. 귀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과목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시) 영어, 체육, 한자, 수영, 과학 등

- \_\_ ① 3개 이상  
 \_\_ ② 2개  
 \_\_ ③ 1개  
 \_\_ ④ 실시하지 않음

9. 다음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모두 (읽어) 보았다	③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②대충 훑어 보았다	①전혀 읽지 않았다
1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2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10. 다음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이해와 적용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령집단별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6	연간, 월간, 주간 교육활동 계획에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7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별 보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V.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건강과 영양관리 그리고 학대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어린이집의 건강 및 영양 현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실, 공유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2	모든 실내 공간을 자주 소독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 (2개월에 1회 이상)					
3	매일 청소상태, 소독과 대청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있다					
4	플라스틱 블록, 인형, 소꿉놀이 도구 등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5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	조리실바닥, 벽, 천장 등 청결관리및 환기를 매일 잘 유지하고 있다					
7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있다					
8	개별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있다(주1회 이상)					
9	배식된 음식은 당일 소모 하고 있다					
10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					

12.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 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유아 등원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					
2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3	영유아의 신체에 멍자국등이 있을 때 영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4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13.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지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2	보육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임을 인식하고 있다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신고전화번호, 신고방식 등)					
4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내용을 잘 알고 있다(자격 취소 등)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					

14. 향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등이 영유아의 신체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한다
- \_\_ ② 부모에게 물어보아 학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믿는다
- \_\_ ③ 몇 회 더 감지될 때까지 좀 더 두고 본다
- \_\_ ④ 모른척한다



**VI.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보육활동 중 영유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다음은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표현과 선택의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기본생활습관 활동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2 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 활동 시 (영)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3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 다양한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루어진다					
5 급간식시 (영)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6 (영)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7 (영)유아가 의문이 생길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8 교사는 (영)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9 (영)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일과 중 (영)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VII.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① 매우 관심있다                      \_\_④ 거의 관심없다  
 \_\_② 관심 있다                            \_\_⑤ 전혀 관심없다  
 \_\_③ 보통이다

17. 귀하는 영유아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매우 필요하다                      \_\_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② 필요하다                              \_\_⑤ 필요 없다  
 \_\_③ 보통이다

18. 귀하는 영유아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① 있다(18-1, 18-2에 답해주세요)  
 \_\_② 없다(19에 답해주세요)

18-1.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_\_① 교사양성기관 및 대학  
 \_\_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_\_③ 민간 차원(연합회 등)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18-2. (영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_\_① 학대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  
 \_\_② 유엔아동권리협약  
 \_\_③ 보육활동시 영유아 권리 존중 방법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9.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20에 답해주세요)  
 ② 없다(19-1에 답해주세요)

19-1.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②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③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④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0. 귀하의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권리교육 관련 교구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20-1에 답해 주세요)  
 ② 없다(21에 답해주세요)

20-1. 영유아 권리 관련 교구교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영유아용 도서  
 ② 그림 및 사진자료  
 ③ 교구  
 ④ 동영상 자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1.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사의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③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인한 실천력 부족  
 ④ 관련 교재교구의 부족  
 ⑤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⑥ 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⑦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⑧ 하루 종일 보육해야 하는 교사업무의 과중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다음 중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4 순 위	5 순 위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이해					
2	영유아 발달 이해					
3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4	영유아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5	영유아 식생활지도와 위생					

23. 바람직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해당 질문
1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
2	보육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보육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영유아 권리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권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5	표준보육과정에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3. 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 유치원 원장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유치원 원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정책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유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1년 연구과제로 「유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및 증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유치원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교육 활동시에 유아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고 아동의 개별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유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미 부연구위원	02)398-7708	nowyoo@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김재원 연구원	02)398-7760	mileona@kicce.re.kr

유치원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 )구 ( )동
	핸드폰			



**I. 귀하 및 귀 유치원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 유치원의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지역	__① 서울 __② 부산 __③ 대구 __④ 인천 __⑤ 광주 __⑥ 대전 __⑦ 울산 __⑧ 경기 __⑨ 강원 __⑩ 충북 __⑪ 충남 __⑫ 전북 __⑬ 전남 __⑭ 경북 __⑮ 경남 __⑯ 제주
설립유형	__① 국공립 단설 __② 국공립 병설 __③ 사립법인 __④ 사립 개인
유치원내 직위	__① 원장 __② 원감
유치원 규모	정원 _____명 / 현원 _____명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성별	__① 남 __② 여
학력	__① 고등학교 졸업 __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__③ 4년제 대학 졸업 __④ 대학원 졸업
(최종) 전공 분야	__① 유아교육 __② 초등교육 __③ 중등교육 __④ 교육학 __⑤ 아동관련 __⑥ 복지관련 __⑦ 기타(_____)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유치원 원장 총경력)

## II. 귀하의 유아 권리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아동권리의 주요 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③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① 전혀 모른다
1	생명권				
2	발달권				
3	보호권				
4	참여권				
5	무차별의 원칙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_\_① 들어본 적 없다(3에 답해주세요)  
 \_\_② 들어본 적 있다(2-1, 2-2에 답해주세요)

### <아동권리의 주요원칙>

- 1) 생명권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
- 2) 발달권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
- 3) 보호권 - 유해한 행위(학대 등)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 4) 참여권 -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아동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5)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존중함
-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모든 활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2-1. (들어본 적 있는 경우) 교육활동 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 \_\_① 매우 노력한다      \_\_③ 약간 노력한다  
 \_\_② 노력한다      \_\_④ 노력하지 않는다

2-2.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다음 아동권리 중 유치원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 ① 생명권
- \_\_ ② 발달권
- \_\_ ③ 보호권
- \_\_ ④ 참여권(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 \_\_ ⑤ 무차별의 원칙
- \_\_ ⑥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_\_ ⑦ 없다

3. 다음의 유아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인식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 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4	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5	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7	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8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9	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4. 귀 기관 또는 귀하의 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실행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육활동시 같은 연령대의 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2	부모들이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교육과정에 유아권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4	나는 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5	나는 유아의 성별·장애여부에 따라 참여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					
6	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등을 계획할 경우(예: 교육계획 수립시), 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7	교육활동 시에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III.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기관의 실내외 교육 공간의 구성과 교재·교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실의 흥미영역의 수와 배치는 유아들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실내공간의 전시 및 게시가 생활주제와 연관성이 있다					
3	게시판의 높이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4	실외 놀이터에 정적활동 및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다					

5	실외놀이터에는 다양한 활동영역(자연체 험공간 포함)과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 기구를 제공한다					
6	다양한 교재·교구를 충분하게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7	교재·교구가 유아 발달수준 및 연령에 적합하다					
8	교재·교구를 영역별, 주제별로 활용하기 쉬운 공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6. 귀 기관의 실내외 시설·설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각 실의 손잡이의 형태나 위치는 유아들 의 신체에 맞게 되어 있다					
2	교구와 놀잇감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장 의 높이는 유아의 신체치수에 적합하다					
3	계단의 높이와 크기는 유아의 신체 치수 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4	실외 놀이기구가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 합하다					
5	각 실은 비상재해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6	현관의 위치는 원장실이나 사무실 혹 은 교사실에서 한 눈에 보여 유아의 보 호관찰과 외부인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7	각 실은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8	유치원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가 되어 있다					
9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 공잔디, 고무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10	놀잇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있다					
11	창문보호대나 난간(추락방지)이 설치되어 있다					
12	조리실에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 시설을 갖추었다(또는 세척·소독할 수 있 는 세정대를 설치했다)					

**IV.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유치원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 기관의 건강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 및 위생지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예: 전염병·질병관리정보 가정에 알리고, 개별유아의 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3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방역을 실시한다					
4	바깥놀이 시설·설비를 청결히 관리하며 모래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5	조리실, 식기, 조리도구는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8. 영양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양 균형을 유지한 급식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2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튀긴 음식, 과자·사탕류의 제공을 피한다					
3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4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검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5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다					

**V.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시설 안전보호와 종일반, 학대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9. 귀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예: 교통안전, 놀이시설 안전, 아동학대 및 유괴 등)					
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수시로(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예: 안전관리 지도법, 응급처치법, 아동학대 및 유괴 등)					
3	유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가정에 공지하고 있다(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4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부모 비상연락처, 각종 응급처치 약품 구비, 구급요법에 관한 안내책자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5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점검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0. 귀 기관의 종일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예:취침실, 조리실, 화장실 냉온수겸용 샤워시설 등)를 구비하고 있다					
3	종일반 프로그램은 오전 교육활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외에 다양한 놀이 시설을 제공한다					
5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가 있다					

11.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					
2	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3	유아의 신체에 멍자국 등이 있을 때 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4	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2.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지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2	유치원 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신고전화번호, 신고 방식 등)					
4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자격 취소 등)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					

13. 향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 등이 영유아의 신체 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한다
- \_\_ ② 부모에게 물어보아 학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믿는다
- \_\_ ③ 몇 회 더 감지될 때까지 좀 더 두고 본다
- \_\_ ④ 모른척한다

**VI.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다음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귀하의 관심도에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모두 (읽어 보았다	③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②대충 훑어 보았다	①전혀 읽지 않았다
1	고시된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3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지도자료집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5. 다음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이해 정도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5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Ⅶ.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 권리교육 경험과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 권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_\_① 매우 관심있다  
 \_\_② 관심있다  
 \_\_③ 보통이다  
 \_\_④ 거의 관심없다  
 \_\_⑤ 전혀 관심없다
17. 귀하는 유아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매우 필요하다  
 \_\_② 필요하다  
 \_\_③ 보통이다  
 \_\_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⑤ 필요 없다
18. 귀하는 유아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① 있다(18-1,18-2에 답해주세요)  
 \_\_② 없다(19에 답해주세요)
- 18-1. (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_\_① 교사양성기관 및 대학  
 \_\_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_\_③ 민간 차원(연합회 등)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 18-2. (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_\_① 학대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  
 \_\_② 유엔아동권리협약  
 \_\_③ 교육활동 시 유아 권리 존중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9.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20에 답해주세요)  
 ② 없다(19-1에 답해주세요)

19-1.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② 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③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④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0. 귀하의 유치원에는 유아 권리교육에 관한 교구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20-1에 답해 주세요)  
 ② 없다(21에 답해주세요)

20-1. 유아 권리 관련 교구교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유아용 도서  
 ② 그림 및 사진자료  
 ③ 교구  
 ④ 동영상 자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1. 유치원에서 유아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사의 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③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인한 실천력 부족  
 ④ 관련 교재교구 부족  
 ⑤ 관련 프로그램 부족  
 ⑥ 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바람직한 유아 권리 존중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해당 질문
1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
2	유아 권리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3	유치원 교사에 대한 유아 권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유치원 교육과정에 유아 권리 존중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5	유아 권리 존중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23.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신 유치원 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얼마나 관여하십니까?

- \_\_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_\_②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_\_③ 보통이다  
 \_\_④ 약간 관여한다  
 \_\_⑤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4. 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조사: 유치원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유치원 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정책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유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1년 연구과제로 「유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및 증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유치원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교육 활동시에 유아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고 아동의 개별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유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미 부연구위원	02)398-7708	nowyoo@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김재원 연구원	02)398-7760	mileona@kicce.re.kr

<b>유치원명</b>			<b>응답자 성명</b>		
<b>전화번호</b>	기관		<b>주소</b>	(        )구 (        )동	
	핸드폰				

### I. 귀하 및 기관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 유치원의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지역	__① 서울 __② 부산 __③ 대구 __④ 인천 __⑤ 광주 __⑥ 대전 __⑦ 울산 __⑧ 경기 __⑨ 강원 __⑩ 충북 __⑪ 충남 __⑫ 전북 __⑬ 전남 __⑭ 경북 __⑮ 경남 __⑯ 제주
설립유형	__① 국공립 단설 __② 국공립 병설 __③ 사립법인 __④ 사립 개인
유치원 규모	정원 _____명 / 현원 _____명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성별	__① 남 __② 여
학력	__① 고등학교 졸업 __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__③ 4년제 대학 졸업 __④ 대학원 졸업
(최종) 전공 분야	__① 유아교육 __② 초등교육 __③ 중등교육 __④ 교육학 __⑤ 아동관련 __⑥ 복지관련 __⑦ 기타(_____)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유치원 원장 총경력)
담당 학급 아동 연령	__① 만 3세 __② 만 4세 __③ 만 5세 __④ 만 3~4세 __⑤ 만 4~5세 __⑥ 만 3~5세
소지 자격 (최종)	__① 원장 __② 원감 __③ 1급 정교사 __④ 2급 정교사

## II. 귀하의 유아권리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 아동권리의 주요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있다	③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① 전혀 모른다
1	생명권				
2	발달권				
3	보호권				
4	참여권				
5	무차별의 원칙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3에 답해주세요)  
 ② 들어본 적 있다(2-1, 2-2에 답해주세요)

### <아동권리의 주요원칙>

- 1) 생명권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
- 2) 발달권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
- 3) 보호권 - 유해한 행위(학대 등)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 4) 참여권 -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아동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5)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존중함
-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모든 활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2-1. (들어본 적 있는 경우) 교육활동 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유아 권리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노력한다       ③ 약간 노력한다  
 ② 노력한다       ④ 노력하지 않는다

2-2. (들어본 적 있는 경우) 다음 아동 권리 중 유치원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명권
- ② 발달권
- ③ 보호권
- ④ 참여권(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 ⑤ 무차별의 원칙
- ⑥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⑦ 없다

3. 다음의 유아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인식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유아의 생존·발달권은 건강, 사회보장, 안전한 환경 등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3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4	유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권리실현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이므로 차별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5	유아의 감정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다					
6	인종, 신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은 유아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7	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8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9	유아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	------------------------	--	--	--	--	--

4. 귀 기관 또는 귀하의 유아 권리 실행 수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권리 실행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육활동 시 같은 연령대의 유아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2	부모들이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교육과정에 유아권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4	나는 유아 부모의 계층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5	나는 유아의 성별·장애여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달리 적용한 적이 있다					
6	유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설비등을 계획할 경우(예: 교육계획 수립시), 유아의 의견을 요청받아 참여시킨다					
7	교육활동 시에 유아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8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 자신의 편함보다 유아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Ⅲ.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기관의 실내외 교육 공간의 구성과 교재·교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실의 흥미영역의 수와 배치는 유아들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실내공간의 전시 및 게시가 생활주제와 연관성이 있다					
3	게시판의 높이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4	실외 놀이터에 정적활동 및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다					
5	실외놀이터에는 다양한 활동영역(자연체험공간 포함)과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제공한다					
6	다양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7	교재·교구가 유아 발달수준 및 연령에 적합하다					
8	교재·교구를 영역별, 주제별로 활용하기 쉬운 공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6. 귀 기관의 시설·설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각 실의 손잡이의 형태나 위치는 유아들의 신체에 맞게 되어 있다					
2	교구와 놀잇감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장의 높이는 유아의 신체치수에 적합하다					
3	계단의 높이와 크기는 유아의 신체 치수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4	실외 놀이기구가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5	각 실은 비상재해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6	현관의 위치는 원장실이나 사무실 혹은 교사실에서 한 눈에 보여 유아의 보호관찰과 외부인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7	각 실은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8	유치원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가 되어 있다					
9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등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10	놀이감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다					
11	창문보호대나 난간(추락방지)이 설치되어 있다					
12	조리실에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었다 (또는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를 설치했다)					

**IV.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 기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계획 수립과 일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2	교육목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뿐 아니라 유아·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간에 연계성이 있다					
4	교육내용 및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5	일일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또는 소단원 등) 시간대별 활동, 활동목표, 준비물 및 방법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교육과정 생활주제별, 유아 발달 영역별 통합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7	일과 중 자유활동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다(하루일과의 1/3~1/4시간 정도, 5시간 이상일 경우 1/5)					
8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이 1일 30~40분 이상, 주 3일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9	실내·외, 대·소근육, 개별/대·소집단, 정·동적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활동량이 유아에 적절하다					
10	교육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및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11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12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1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일과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14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15	개별 유아의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점검하고 활용한다(예: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부모 면담 등)					

8. 다음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귀하의 관심도에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④모두 (읽어) 보았다	③관심있는 내용위주로 (읽어)보았다	②대충 훑어 보았다	①전혀 읽지 않았다
1 고시된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3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지도자료집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9. 다음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이해 정도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구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5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V.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건강과 영양관리 및 종일반 그리고 학대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건강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 및 위생지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예:전염병·질병관리정보 가정에 알리고, 개별유아의 체질,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3	실내 시설·설비를 청결히 하며, 연 2회 이상 실내방역을 실시한다					
4	바깥놀이 시설·설비를 청결히 관리하며 모래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5	조리실, 식기, 조리도구는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1. 영양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영양 균형을 유지한 급식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2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튀긴음식, 과자·사탕류의 제공을 피한다					
3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4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검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5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다					

12.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음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유아 등원 시 심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핀다					
2	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3	유아의 신체에 멍자국 등이 있을 때 유아 또는 부모에게 물어본다					
4	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13.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지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의 유형별 개념(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2	유치원교직원이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3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신고전화번호, 신고 방식 등)					
4	유치원교직원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자격 취소 등)					
5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다(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정 취소 등)					

14. 향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상처나 멍등이 영유아의 신체일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즉시 신고한다
  - ② 부모에게 물어보아 학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믿는다
  - ③ 몇 회 더 감지될 때까지 좀 더 두고 본다
  - ④ 모른척한다

**VI.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교육활동 중 유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다음은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표현과 선택의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 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기본생활습관 활동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2	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한다					
3	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	다양한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루어진다					
5	급간식시 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6	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7	유아가 의문이 생길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8	교사는 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9	유아 사이에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일과 중 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Ⅶ.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권리교육 경험과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권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_\_① 매우 관심있다      \_\_④ 거의 관심없다  
 \_\_② 관심있다            \_\_⑤ 전혀 관심없다  
 \_\_③ 보통이다
17. 귀하는 유아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매우 필요하다      \_\_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② 필요하다            \_\_⑤ 필요 없다  
 \_\_③ 보통이다
18. 귀하는 유아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① 있다(18-1,18-2에 답해주세요)  
 \_\_② 없다(19에 답해주세요)
- 18-1. (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_\_① 교사양성기관 및 대학  
 \_\_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_\_③ 민간 차원(연합회 등)  
 \_\_④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18-2. (유아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학대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
-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 ③ 교육활동 시 유아 권리 존중
-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9.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 권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20에 답해주세요)
- ② 없다(19-1에 답해주세요)

19-1.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 ② 유아 권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 ③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 ④ 교육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 귀하의 유치원에는 유아 권리교육에 관한 교구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20-1에 답해 주세요)
- ② 없다(21에 답해주세요)

20-1. 유아 권리 관련 교구교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유아용 도서
- ② 그림 및 사진자료
- ③ 교구
- ④ 동영상 자료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1. 유치원에서 유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_\_① 교사의 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_\_② 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 부족  
 \_\_③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인한 실천력 부족  
 \_\_④ 관련 교재교구의 부족  
 \_\_⑤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_\_⑥ 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바람직한 유아 권리 존중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해당 질문
1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
2	유아 권리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3	유치원 교사에 대한 유아 권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유치원 교육과정에 유아 권리 존중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5	유아 권리 존중 교육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5.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 면담 질문지(원장용)

1. 아동권리교육 실시 동기	
1)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을 강화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이전에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을 경우) 교육 내용 및 시간은 어떠합니까? - (있을 경우)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2. 아동권리 교육 실시 내용	
1)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얼마입니까?	
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내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시 교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4)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에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내용이 이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효과	
1) 아동권리 보육(교육) 실시 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까?	
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 가정, 교사, 보육(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3)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 실시 이후 각 부문별 효과는 어떠합니까? - 물리적 환경, 안전, 건강·영양관리, 참여권 보장 등	



4.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 애로사항							
1) 아동권리 보육(교육) 실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아동권리 보육(교육) 시 아동과 교사들과의 충돌은 없습니까? (교사의 업무 과중 등)							
3) 아동권리와 부모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리 간의 상충은 없습니까? 예)	<table border="1"> <tr> <td>특별활동, 심야보육 등</td> </tr> <tr> <td>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영유아가 거부하는 경우</td> </tr> <tr> <td>영유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td> </tr> </table>	특별활동, 심야보육 등	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영유아가 거부하는 경우	영유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			
특별활동, 심야보육 등							
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영유아가 거부하는 경우							
영유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							
(있을 경우)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4)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 적용 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5)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 적용 시 현행 보육(교육)지침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6)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table border="1"> <tr> <td>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td> </tr> <tr> <td>건강·영양관리</td> </tr> <tr> <td>안전보호</td> </tr> <tr> <td>보육·교육과정(교육권)</td> </tr> <tr> <td>영유아의 참여(참여권)</td> </tr> <tr> <td>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td> </tr> </table>	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	건강·영양관리	안전보호	보육·교육과정(교육권)	영유아의 참여(참여권)	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
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							
건강·영양관리							
안전보호							
보육·교육과정(교육권)							
영유아의 참여(참여권)							
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							

5. 아동권리교육 현황
1) 아동 대상 - 영유아 대상 아동권리 교육 현황은 어떠합니까? (실시 여부, 대상 연령, 시간, 교육내용 등) - 교육 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2) 교사 대상 - 영유아 대상 아동권리 교육 현황은 어떠합니까? (실시 여부, 대상 연령, 시간, 교육내용 등) - 교육 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3) 부모 대상 -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어떠합니까? - 부모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실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있을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은 무엇입니까? (있을 경우) 부모들의 참여 및 관심도는 어떠합니까? - 부모대상 아동권리 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6. 개선 및 요구사항(추가사항)
1) 현행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교육/프로그램 실천 시)(예: 매뉴얼, 교사들 간 토론 등)
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 부록 6.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 면담 질문지(교사용)

<b>1.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및 교육 경험</b>
1)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근무 이전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경험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무엇입니까?(유엔아동권리협약 등) - (없는 경우) 필요성은 어떠합니까?
2) 현재 근무기관 이전 아동권리 교육 경험은 어떠합니까?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 교육 경험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불만족한 경우)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아동/교사 대상 아동권리 교육 현황 및 개선 - 아동권리 교육 현황은 어떠합니까? (실시 여부, 대상 연령, 시간, 교육내용) - 교육 시 주요 효과/만족도는 어떠합니까?
4)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 현황 및 개선 -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실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있을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은 어떠합니까? (있을 경우) 부모들의 참여 및 관심도는 어떠합니까? -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b>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실행내용 및 애로사항</b>							
1) 아동권리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얼마입니까?							
2)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존 프로그램과의 주된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 교구교재 구비 여부/구비 내용 등							
3) 아동권리 보육(교육) 실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4) 아동권리 보육(교육) 시에 교사들과의 충돌은 없습니까? (교사의 업무 과중 등)							
5) 아동권리와 부모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리 간의 상충은 없습니까? 예)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종일반(유치원), 특별활동, 심야보육 등(어린이집)</td> </tr> <tr> <td>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원아들이 거부하는 경우</td> </tr> <tr> <td>원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td> </tr> </table>  (있을 경우)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종일반(유치원), 특별활동, 심야보육 등(어린이집)	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원아들이 거부하는 경우	원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				
종일반(유치원), 특별활동, 심야보육 등(어린이집)							
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원아들이 거부하는 경우							
원아들간에 충돌이 날 경우							
6)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7)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현행 보육(교육)지침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8)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td> </tr> <tr> <td>건강·영양관리</td> </tr> <tr> <td>안전보호</td> </tr> <tr> <td>보육·교육과정(교육권)</td> </tr> <tr> <td>영유아의 참여(참여권)</td> </tr> <tr> <td>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td> </tr> </table>	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	건강·영양관리	안전보호	보육·교육과정(교육권)	영유아의 참여(참여권)	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	
물리적 환경(설비 및 설치, 교구 교재)							
건강·영양관리							
안전보호							
보육·교육과정(교육권)							
영유아의 참여(참여권)							
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							

<b>3.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의 효과</b>
1) 아동권리 보육(교육) 실시 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까?
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영유아, 가정, 교사, 보육(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3)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후 각 부문별 효과는 어떠합니까? (물리적 환경, 안전, 건강·영양관리, 참여권 보장 등)

<b>4. 개선 및 요구사항</b>
1) 현행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교육/프로그램 실천 시)(예: 매뉴얼, 교사들 간 토론 등)
2) 아동권리 존중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 부록 7. 어린이집 급식관리 체크리스트

### 1. 위생관리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
1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2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한다.	
3	배식 시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 하고 있다.	
4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5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6	가열 식품의 중심온도(74℃이상)를 측정·확인하고 있다.	
7	조리 후 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8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 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9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10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11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 처리하고 있다.	
12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 하여 오염 또는 혼입을 방지하고 있다.	
13	방충, 구서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을 보관 하고 있다.	

### 2. 식재료 관리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
1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2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3	식재료의 재고관리(기록유지)를 실시하고 있다.	

### 3. 작업관리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
1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하고 있다.	

2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3	표준 레시피를 작성하고 있다.	
4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을 하고 있다.	

## 4. 시설·설비 관리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
1	조리장을 오염작업 구역과 비오염 작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조리장 바닥과 배수로에는 물고임 및 냄새역류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4	방충, 방서를 위한 적정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5. 급식경영 관리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
1	조리실내에 단체급식 신고필증,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다.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고 있다.	
3	급식운영계획서가 비치되어 있다.	
4	급식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5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6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7	급식내용을 공개(실물전시, 홈페이지게시 등)하고 있다.	

## 부록 8. 참여권 보장 사례(어린이집)<sup>10)</sup>

1. 기본생활습관 활동 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p><b>사례1&gt; 손을 씻어요(만3세)</b></p> <p>간식 먹기 전 유아들과 손을 씻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유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교사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손을 씻으러 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유아들 스스로 손을 씻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 날에도 교사가 손을 씻으러 가자고 이야기하자 줄을 서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었더니 자발적인 기본생활습관의 상황이 관찰되었다. 기본생활습관을 위한 일상의 규칙과 활동에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였다.</p>
2. 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 시 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p><b>사례2&gt;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1세)</b></p> <p>음률활동 시 부를 노래에 대해 영유아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여 그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영유아가 노래 제목을 정하는 짧은 시간조차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고, 나 또는 친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게 되니 보다 적극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음률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영유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모두들 즐거워하는 노래 시간이었다.</p>
3. 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p><b>사례3&gt; 병원놀이(만4세)</b></p> <p>역할놀이를 싫어하는 유아를 위해 역할놀이 하는 날을 정하고, 주제는 유아들과 함께 ‘병원놀이’를 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준비하여 역할놀이를 진행하자, 교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규모가 크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내며 재미있게 진행되었다.</p>

10) 이하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천 중인 참여권 보장 사례로서, 사례의 타당성을 견지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세이브더칠드런 관련 업무 담당자의 사례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하였음.



4. 다양한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루어진다

**사례4> 자유선택활동 방법 정하기(만5세)**

활동계획표를 쓰고 놀이하는 것을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유아들에게 활동계획표는 글씨연습의 의미 밖에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일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과 의논하여 활동계획표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흥미영역을 선택하여 놀이하였다. 며칠 후 활동계획표 없이 놀이해 본 소감을 나누고, 활동계획표의 실행여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놀이 시 활동계획표를 함께 만들어보고 실행에 옮겼다. 활동계획표를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방법으로 새로 작성하여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흥미영역의 선택과 놀이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5. 급간식시 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사례5-1> 나 혼자서 먹어 볼래요(만0세)**

영아가 월령이 높아질수록 이유식 시간에 수저를 혼자 잡아보려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이 무렵 영아가 수저를 입속에 넣기까지의 연습이 필요하여 놀잇감으로 수저를 제공하거나 일상 중간 중간에 수저를 쥐어주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 시, 처음에는 교사가 손을 잡아 도와주어 먹다가 양이 적게 남았을 때만 영아 혼자 떠먹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처음부터 수저를 쥐고 영아 스스로 먹어보도록 하였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먹는 과정을 통해 영아는 성취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냈다.

**사례5-2> 점심시간이 즐거워요(만4,5세 혼합연령반)**

유아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배식을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자율배식을 해보기로 하였다. 자율배식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정해보고, 유아 스스로 식판위에 먹고 싶은 만큼 밥과 반찬·국을 덜어 식사를 하고 마친 후 자신이 먹고 난 자리와 식판을 정리하였다. 자율배식을 하고 난 후의 유아들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 스스로 반찬을 담도록 하였더니 싫어하는 반찬을 아주 조금 담더라도 골고루 담아 먹었으며,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이전보다 식사시간을 단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성인주도의 배식보다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훨씬 효과적).

#### 6. 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 사례6> 탐버린 탐색하기(만1세)

탐버린을 쳐보는 활동을 위해 영아들에게 탐버린을 소개시켜주고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소리를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몇몇의 영아가 귀를 막고 “시끄러워요” 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영아들은 처음 본 탐버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집중을 하였다. 그래서 두 명의 담임교사 중 한명은 소리를 싫어하는 영아들과 다른 대체활동을 구상하여 실시하고, 다른 교사는 탐버린에 관심을 가지는 영아들과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해보며 두 활동 모두 마무리 하였다. 영유아가 개별적인 요구를 표현했을 때 교사가 이를 수용하고 반응함으로써 이 활동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영아들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 7. 유아가 의문이 생길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사례7> 텃밭 활동을 우리가 정해요 (만4세)

이전 경험을 통해 텃밭에서 가장 하고 싶었거나 텃밭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T: 오늘은 우리 모두 텃밭활동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C: 어떻게 할 건데요?

T: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해보고, 또 누가하면 좋을지 정해 본 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텃밭활동을 해 볼 거예요.

C: 그럼 오늘은 텃밭의 날이예요? 텃밭활동만 할 거예요?

T: 텃밭활동과 함께하고 싶은 다른 산책활동을 여러분들이 정해보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C: 선생님, 나 그런데 다른 반 딸기가 따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T: 글썄, 어떨까? 다른 반 딸기를 따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반 딸기도 따볼 수 있을까요?

C: 그럼 말한 친구가 정해 볼래요!

유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텃밭에서 놀이도 하고 벌레 및 잡초를 관찰하여 자발적으로 생태학습을 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8. 교사는 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사례8> 우리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요 (만3세)**

(학기 초에는 유아들의 자리를 정해주었는데) 유아들과 자리를 어떻게 앉고 싶은지 의견을 모은 후 함께 앉고 싶은 친구와 원하는 곳에 앉도록 하였다. 자신이 정하는 자리인 만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리약속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다수결로 정하는 가운데, 의견을 내었으나 소수의 주장이어서 채택되지 않은 유아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약속인 만큼 잘 지키려고 하였다.

9. 유아 사이에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례9> 어떻게 할까요? (만4, 5세)**

갈등이 유발된 두 유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을 하여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해결방법을 아이들이 직접 말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일어났던 문제상황이나 친구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반 유아들 모두와 함께 토론하여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0. 일과 중 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사례10> 우리의 권리를 찾아요 (만5세)**

하루의 일과를 유아들이 자유롭게 정하고 원하는 것을 교사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일주일을 보내 보기로 하였다.

<일과 중 유아들 스스로 정하는 주요 활동>

내 신발장 자리 정하기, 간식을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양만큼 먹기, 자유선택놀이시간을 정하기, 점심 식단 짜기, 점심식사의 양과 자리 스스로 정하기

일주일 동안 일과를 스스로 정해봄으로써 유아들이 ‘우리 반의 주인은 우리’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으며 가정에 돌아가서도 유아들이 자유의 날, 우리의 날’ 이라며 행복해했다고 하였다.

연구보고 2011-10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 2272-1767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76-9 93330